

## 제 13 차

# 2009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09년 1월 16일(금) 오후6시

장소 : 장충동 분도빌딩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보 관







## 제 13 차

# 2009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09년 1월 16일(금) 오후6시

장소 : 잠충동 분도빌딩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목 차

|                                            |     |
|--------------------------------------------|-----|
| ■ 정기총회 순서                                  | 1   |
| ■ 제12차 총회 회의록                              | 3   |
| ■ 2008 감사 회계보고                             | 9   |
| ■ 2008 사업보고 및 평가                           |     |
| 1. 사업총평                                    | 15  |
| 2. 사업보고                                    | 19  |
| 1) 한반도평화센터                                 | 19  |
| 2) 갈등해결센터                                  | 31  |
| 3) 일상평화센터                                  | 55  |
| 4) 화환참여센터                                  | 56  |
| 5) 부설 한국여성성평화연구원                           | 60  |
| 6) 특별사업                                    | 63  |
| 7) 협력사업                                    | 67  |
| 8) 연대사업                                    | 69  |
| ■ 2009 사업계획안                               |     |
| 1. 사업방향                                    | 79  |
| 2. 사업계획                                    | 82  |
| 1) 한반도평화센터                                 | 82  |
| 2) 갈등해결센터                                  | 84  |
| 3) 일상평화센터                                  | 89  |
| 4) 위원회(회원확대위원회,<br>국제협력위원회, 정책위원회)         | 92  |
| 5) 부설 한국여성성평화연구원                           | 94  |
| 3. 특별사업계획표                                 | 95  |
| ■ 부록                                       |     |
| 2008년 결산 및 2009년 예산안                       | 99  |
| 정관개정안                                      | 102 |
| 임원 및 기구장 임명안                               | 116 |
| 2009년 이사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및 사무처<br>평화여성회 조직도 | 117 |
| 여성성평화뉴스레터 목차                               | 118 |
| 성명서 모음 및 언론보도리포트                           | 119 |
|                                            | 123 |



# 정기총회 순서

1 부 : 소박한 밤상 (오후 5:30 ~ 6:00)

2 부 : 본회의 (오후 6:00 ~ 8:00)

- (1) 개회선언
- (2) 대표인사
- (3) 격려사
- (4) 서기임명
- (5) 성수보고
- (6) 화순채택
- (7) 전차회의록 승인
- (8) 2008년 감사보고
- (9) 2008년 사업보고와 승인
- (10) 2008년 결산보고와 승인
- (11) 정관개정
- (12) 임원선출
- (13) 신·구임원 교체식
- (14) 2009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 (15) 2009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16) 기타도의
- (17) 모범회원상 수여
- (18) 회의록 받음
- (19) 폐회





## 제12차 정기총회 회의록

□ 서기 : 여혜숙, 김선헌

1. 일시 : 2008년 1월 18일(금) 오후 5시 - 7시 53분

2. 장소 : 강릉동 분도빌딩 5층

3. 주요 내용

1) 조영희 의장이 오후 5시 3분 개회 선언을 하고 제 12차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조영희 대표가 인사말을 하다.

3) 김숙임 지도위원이 격려사를 하다.

4) 조영희 의장이 여혜숙 회원과 김선헌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5) 김현희 사무국장이 성수보고하다. 정관 19조에 의거 현재 23명 회원이 참여하였음을 보고하다.

5) 회순 채택 : 조영희 의장이 자료집 7쪽 회순에 2008년도 예산안보고와 승인 앞에 회계제정항목 변경관련 논의의 건을 수정 제안하고 박수선 동의하고 홍승희 제정하다.

6) 사업감사 : 이정의 사업 감사가 사정상 불참하여 김현희 사무국장이 자료집 15쪽 2007년도 사업감사 보고를 대독하여 보고하다.

7) 2007년도 사업보고 : 사업 총평을 김현희 사무국장이 자료집 21~25쪽과 같이 낭독하다. 경정란 한반도평화센터소장이 한반도센터 사업을 26~43쪽과 같이, 국제연대활동을 97~99쪽과 같이 보고하다. 박수선 갈등해결센터소장이 갈등해결센터 사업을 44~68쪽과 같이 보고하다. 김현희 사무국장이 일상평화센터 사업을 69쪽과 같이, 회원참여센터 사업을 70~72쪽과 같이 보고하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을 김열리 공동대표가 73~82쪽과 같이 보고하다. 정보사업을 홍승희 팀장이 83~89쪽과 같이 보고하다. 연대사업은 김현희 사무국장이 90~99쪽과 같이 보고하다. 홍승희 회원이 자료집 45쪽에 있는 '평화지킴이'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여혜숙 청소년교육팀장이 설명하고, 이재영회원이 동의하고 박홍나미 제정하여 원안대로 사업보고를 승인하다.

8) 회계감사 : 한국영 감사가 총회자료집 17쪽과 같이 보고하다.

9) 2007년도 결산보고 : 김현희 사무국장이 자료대로 보고하고, 홍승희 회원이 감사지적 사항대로 이사이전비를 예비비항목으로 넣을 것을 동의하다. 윤수경 회원이 일반회계에 부채가 남아있는데 이월금이 가능하냐고 질문하고, 이월금은 프로젝트 사업비로 집행예정인 미지급금, 총회준비 가지급금으로 답변하다. 한국영 감사가 부설기구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하고 조영희 의장이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윤수경회원이 회계감사의 지적을 받아 사무국이 예산안을 수정하여 보완할 것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김현진 회원이 제청하고 모두 동의하여 결산보고를 승인하다.

10) 임원선출 : 조영희 의장이 정관 11,12,13조에 의거하여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박수선 공동해결센터소장이 임시회장으로 선출되다.

박수선 임시회장의 진행으로 여혜숙 공천위원장이 선임 공동대표 선출안은 2008 총회준비위원회를 거쳐,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안하였고, 1월 7일 2008년 제1차 정기이사회 의 인준을 거쳐움을 경과보고하고, 조영희 공동대표를 상임대표로, 현 김엘리 공동대표와 발기회원이며 본회 평화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수경 회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선출안을 상안하였음을 보고하다. 박수선 임시회장이 공천위원의 공동대표 인선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묻고 전원이 동의하고 모두 박수로 만장일치로 임원선출안을 승인하다.

11) 2008년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 2008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김현희 사무국장이 자료집 105-107쪽의 사업방향을 보고하고,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이 한반도평화센터 사업계획안은 통일부 패지 논란 제기 이전에 성안한 계획임을 밝히며 자료집 108-109쪽과 같이 보고하고, 박수선 공동해결센터 소장이 자료집 110-115쪽과 같이 보고하다. 일상평화센터 사업계획안은 자료대로, 회원참여센터 사업계획안은 김현희 사무국장이 보고하고, 김엘리 공동대표 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이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계획안을 자료집 119쪽과 같이 보고하고, 10주년 기념사업사업은 조영희 의장이 120쪽과 같이 보고하다. 홍승희 회원이 한반도평화센터가 국면이 변화된 상태에서 정책 모니터링이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고 그를 위한 팀을 구성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공동해결센터는 청소년 평화치킴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대학생 대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정경란 소장와 여혜숙 청소년교육팀장이 홍승희 회원의 제안을 참조하겠다고 답하고, 홍승희 회원이 동의하고 김영진 회원이 제청하다. 월별사업계획표에 공동해결센터의 일정과 10주년 기념사업 일정이 표기되지 않아, 이를 정리하기로 하고 모두 동의하여 사업계획안을 승인하다.

12) 회계 제정항목 변경 : 김현희 사무국장이 별지 자료대로 회계 제정항목을 설명하고, 박수선 회원이 2008년 수입예산서에 참가비 비고란에 공동해결센터가 격하있는 것은 오히려 지적하고, 회계제정항목은 총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개의안을 제시하여 김지선 회원이 동의하고 김현진 회원이 제청하고 모두 동의하여 승인하다.

13) 2008년도 예산안 보고와 승인 : 김현희 사무국장이 별지 자료대로 2008년 예산계획안을 설명하고, 박수선 회원이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예산안은 연구원 이사회를 거쳐

평화여성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을 위임하는 개의안을 제시하자, 정경란 회원이 평화여성회 운영위원회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이사회가 결정한 예산안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김숙임 지도위원이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이 병설에서 무설로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구원의 자율적 결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고 연구원 이사들이 그러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답하고, 조영희 의장이 연구원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하고, 현재 정관상 운영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향후 조직발전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 정경란 회원이 예산을 분리하는 처음 사례인 만큼 활발한 논의 진행을 전제로 해야 함을 지적하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지선 회원이 동의하고, 김숙임 회원이 제청하였으나, 여혜숙 회원이 저출 예산안에서 이사이전비에서 예산항목이 없는데 증액이 되어있음을 지적하고, 홍승희 회원이 사무국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을 위임하는 개의안을 제시하여 김영진 회원이 동의한 후 모두 동의하여 승인하다.

14) 회의록 발음 : 여혜숙 서기가 회의록을 보고하고, 박수선 회원이 예산의 정리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는데 빠져있음을 지적하여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김지선 회원이 동의하고 홍승희 회원이 제청하고 모두 동의하여 받기로 하다.

15) 폐회 : 오후 7시 53분 조영희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 2008년 감사보고





## 2008년 사업 감사 보고서

1. 2008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 역량강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자”를 사업방향으로 하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어려운 재정과 많지 않은 인원으로, 경색된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 온 사무처와 각 센터, 연구원의 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 2008년 평화여성회는 두 가지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하나는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이며 들쭉는 ‘2008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쉽지 않은 과제들을 큰 무리 없이 해낸 데 대해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그동안 평화여성회가 추구해 온 평화통일운동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제13회 남북물일상’을 수상한 것은 그동안 평화여성회의 헌신적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서 큰 힘이 되었으리라 보여져 함께 기뻐합니다.

3. 평화여성회는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또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사무국으로서 여성평화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처음 개최된 ‘2008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초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는 재정과 실무 역량을 확보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형성 과정에 명실공히 여성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동북아 여성평화회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4. 한반도평화센터는 운영위원회와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관심과 애정을 가진 참여자의 확대가 여전히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5. 김동혜센터는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캐나다 연수, 청소년 교육의 확대, 심화 등 많은 활동으로 위상과 역할을 키워왔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평화운동의 한 축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센터의 존재에 대해 외부인식이 너무 저조함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됩니다.

6. 회원참여센터는 웹진발행 이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회원참여센터의 활동목표라면 일상평화센터와 결합하여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7.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평화여성회의 활동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권합니다.

8. 정관을 정비하고, 정책 기획과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9. 감사를 마감하면서 회원들께 요청합니다. 시대적 위기에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역할과 과제가 더욱 요청되는 때라고 판단됩니다. 위기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 회원들의 격려와 지지, 참여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결집하여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3일 (화)

감사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서명)



## 감 사 보 고 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귀하

2008년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계감사를 한 결과 회계장부(액셀문서), 수입,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잘 구비되었고, 통장과도 일치함으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합니다.

1. 2008년 12월 31일 기준 부채와 미지급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 경상비 회계 항목 계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는 여성회 전체의 일반 회계를 뜻하는 말인데 항목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점, 수입항목으로 잡혀있는 교육비는 지출항목인데 수입항목으로 잡혀 있는 점 등.
3. 회계 계정에 센터별로 일괄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분화해서 계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4. 부설 여성평화연구원 재정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회와의 재정 구분문제를 효율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설 기관 재정이 내용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독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 CMS 부분은 본회 회계에 들어 온 것을 연구원에 그 항목으로 지불시켜 연구원 수입에 잡으시고 연구원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독자 회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3일 (화)

감사 한 국 염

(서명)





# 2008년 사업보고 및 평가

☐ I. 2008년 사업 총평

☐ II. 2008년 사업 보고



# 2008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보고 및 평가

## I 2008년 사업 총평

2008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총회에서 전체 사업방향을 “여성평화운동 역량 강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지”로 정하였다. 새로운 정부는 그간 시민사회운동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통해 시민사회진영의 입지를 축소시켜 나가고 있고 평화세상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 역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올해,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선에서 선 ‘평화여성회’는 그간의 여성평화운동의 내실을 다지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여성평화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였다.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악화되어가는 남북관계 속에서 ‘평화여성회’는 여성을 평화의 힘으로 모아내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평화형성을 위한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여성·평화활동가들과 여성의원들이 모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갈등과 분쟁들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서로 머리를 맞대며 평화의 비전을 모아내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이는 올해 평화여성회의의 전체 사업방향에 맞게 여성평화운동의 역량강화를 통해 한반도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여성회’는 올해 전체 사업방향을 이루기 위해 주요 사업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넓혀서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을 드러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여성들 개개인의 능력과 지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여성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평화여성회’가 펼칠 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하며, ‘평화여성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등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들의 참여를 넓혀서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을 드러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의 폐지논의를 제기하자 평화여성회는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부의 존치와 역할의 확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통일부의 유지 및 역할의 증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10.4선언 1주년을 맞이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성들의 열망을 성명서로 보여주었고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에서는 꾸준히 세미나모임을 통해 여성의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2008 동북아여성 평화회의를 함께 준비하며 만들어갈 수 있었다.

갈등해결센터의 경우 갈등해결 평화운동 활동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조직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 2003년에 시작한 갈등해결 강사훈련의 경우 올해로 6기로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을 위한 조정훈련을 계기로 조정활동가도 늘어나 실제 현장에서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조정을 통한 여성들의 참여를 넓혀갔다.

회원참여센터의 경우 올해 10주년 기념행사인 "다시 평화를\_\_\_\_" 개최하면서 행사준비와 기획, 진행단계에서 10주년 기념 자료 발간, 문화행사, 영상제작, 바자회 등 다양한 영역별로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여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열망을 드러낼 수 있었다. 아울러 회원들간의 친목과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평화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지관을 이용하여 동구미짜기를 통해 10주년 기념장식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2007년 작년에 이어 '영어로 말하는 평화이야기' 등을 2008년 올해 상반기까지 소모임 활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꾸준히 모임이 진행되지 못하여 향후 회원들 간의 소모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 외 경우병위협 대 최고기 반대활동에 여성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 접근을 모색하여 다양한 문화적 방식의 시위에 결합, 참여하였고 회원들의 참여를 끌어내었다. 하지만 평화주의적인 시위의 확산에서 '평화여성회'가 여성평화전문단체로서 비폭력적인 평화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평화 행동의 모색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2. 여성들 개개인의 능력과 지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다.

한반도평화센터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공부를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팀원들의 여성평화운동가로서의 전문성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한반도평화센터가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준비하면서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주최단체들과 함께 내부워크숍을 준비하여 한반도평화와 동북아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정책의제를 마련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갈등해결센터의 경우 국내에 회합전문조정가가 전무한 현실을 감안할 때 회합전문조정이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폭력문제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대화를 모색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등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소년사법대응모델로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여성평화연구원에서는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방향과 아젠다를 생산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개세미나인 활력제단 “여성과 평화를 다시 묻다”를 개최하여 여성평화단원을 개발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참여자들에게는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시각을 기르도록 하는 등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지도력 형성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 갔다. 하지만, 참여자의 인원면에서는 조정훈련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한정적이고 여성평화역량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미련과 이를 꾸준히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 3. 여성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통하여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 참가국 여성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고 동시에 동북아 평화가 세계 평화와 직결된다는 데 공감하고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를 청산하는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모인 여성들이 남북 양측 정부가 상호최대정책을 중단하고, 화해협력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여 국제여성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평화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도록 한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향후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

로'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평화구축을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망 강화와 각국의 세부과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위하여 국내 진보/보수를 아울러 추진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여성들이 참여하여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서로 모색하며 소통하며 어느 일방의 여성의 입장이 아닌 국내의 범여성계의 입장을 마련하며 국제여성들과 함께 목소리를 공동의 목소리를 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회를 비롯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가 꾸준히 모여 행사기획 및 진행을 함께하며 한국여성평화운동에 있어서 국내여성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북한여성교류는 2006년도에 이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이하 여성본부)에서 제2회 남북여성대표자회의를 5월15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실천과 10.4선언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여성본부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평화여성회는 남북여성교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4. '평화여성회'가 펼칠 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하며, '평화여성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상하고, 실현해가다.

평화여성회는 그간 10년 동안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제 13회 늦봄 통일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상의 의미는 '평화여성회'가 과거의 성과를 이어 여성평화운동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상하고 여러 여성들과 연대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였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1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면서 10주년 기념과담회 등을 통해 지난 10년의 평화여성회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평화여성회의 재정적 안정과 조직적 발전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평화여성회가 나아갈 운동의 방향과 성격을 찾아가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토론의 성과를 이어 받아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으로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과제가 제기된다.

## II. 2008년 사업보고

### 2-1. 한반도평화센터

#### I. 한반도평화센터

#####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정경란(1월~7월) 홍승희(8월~현재)
- (2) 운영위원회 : 정경란, 김현희, 유복남, 윤수경, 조영희, 홍승희
- (3) 자문위원 : 구갑우, 김귀옥, 김지연, 박건영, 박순성, 백준기, 신효숙, 윤덕희, 이금순, 이명자, 이승환, 이우영, 정미애, 최지영, 이정남
- (4) 세미나모임 : 최안진경(탈장), 김정아, 김현희, 유복남, 조영희, 홍승희

#### 1. 사업방향

2008년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이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6자회담 2.13합의와 10.3합의로 북한 핵 불능화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 논의로 핵문제해결의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신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신정부의 관련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을 준비한다.

여성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형성 및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입장을 모색하고 동북아 여성단체들 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증진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논의를 강화한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여성의 활동에 참여한다. 넷째,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활동한다.

## 2. 사업목표

- 1)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동북아시아 여성 사이에 화해협력을 추진한다.
- 2)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의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활성화한다.
- 3) 남북여성고류사업을 지속하여 남북화해와 협력 및 대북지원 등 남북협력사업에 기여한다.
- 4) 한반도평화센터의 논의 및 조직력을 강화한다.

## 3. 사업계획

- 1)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여성6자회담” 진행
  - (1)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조직 구성
  - (2) 1차 워크샵(안) “여성6자회담과 동북아시아 평화 I”
  - (3) 2차 워크샵(안) “여성6자회담과 동북아시아 평화 II”
  - (4)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여성6자회담” 금강산 개최
  - (5) 평가워크샵
  - (6) 자료집 발간 등
- 2)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 입장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3) 남북여성과 화해 및 협력 활동
  - (1) 6.15 여성본부 활동 지속 및 정책논의 활성화
- 4)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
- 5) 한반도평화센터 모임 정례화 추진
  - (1) 운영위원회
  - (2) 자문위원회
  - (3) 세미나

## 4. 사업내용

- 1) 회의 및 모임
  - (1) 운영위원회

- ① 1차: 1월24일(목) 오후2시, 운영위원/세미나 모임과 관련한 논의(목표/방향 등)
- ② 2차: 3월12일(수) 오후1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관련 의견공유 및 내용생산 방법 논의 등
- ③ 3차: 4월10일(목) 오후1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조직구성 보완, 운영위원 추가논의
- ④ 4차: 7월10일(목) 오후3시, 한반도평화센터 상반기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등
- ⑤ 5차: 8월13일(수) 오후3시, 북한여성지원 방안논의 등
- ⑥ 6차: 9월17일(수) 오후2시,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 반대를 위한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 연대, MID반대관련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참여관련,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논의 등
- ⑦ 7차: 10월9일(목) 오후1시30분, 여성연합 여성평화·통일운동 20년사 관련 정리 방안, 향후 전망 논의 등

## (2) 자문위원회

- ① 1차: 4월23일(수) 오후 7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관련
- ② 2차: 7월25일(금) 낮 12시, 상반기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등

## (3) 세미나 모임

- 모임 : 2/1(금),2/15(금),3/7(금),3/18(화),4/1(화),4/22(화),7/24(목),8/13(수), 9/24(수), 11/24(월)
- 내용 : 북미관계, 남북관계, 국제관계 등 현안 스터디, 정부정책모니터링 등

## 2)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진행

- 주최 :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
- 주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1)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

#### ○ 고문

김상근(전 민주평통위원장), 김윤옥(평화를만드는여성회 지도위원), 김인숙(불교여성개발원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효재(여성학자), 정세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조화순(여성목회자), 지은희(덕성여대 총장),한세웅(카톨릭 신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추진위원

이선종(공동추진위원장, 원불교 서울교구장), 정현택(공동추진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박원철(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인택(한국여성외교화연합 상임대표), 백승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신연숙(21세기여성포럼대표, 여기자협회장), 신혜수(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영희(한양대교수, 평화여성회 이사), 오세향(천주교 장상수녀회 회장),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대표), 이강실(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이김현숙(전 적십자 부총재), 이명신(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상임대표), 이문숙(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희(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순(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이정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단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장자(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진화(전고조 위원장), 조순태(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감사), 조영숙(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천준호(KYC대표), 최상협(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영선(세계평화여성연합 이사), 최영애(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최일숙(변호사), 한국열(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정숙(서울대 교수)

○ 추진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서울교구장), 정현택(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 운영위원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문숙(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집행위원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정정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정현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 집행위원

김은경(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김현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국장), 이현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홍보팀 부장)

○ 사무국장

유복남(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국장)

○ 자문위원

구갑우(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지연(에너지연구원, 연구원), 박건영(카톨릭대 교수), 백준기(한신대 교수), 신효숙(북한대학원 겸임교수), 윤

덕희(명지대 교수), 이경숙(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명자(동국대 대중문화연구소 연구원), 이미경(민주당 사무총장), 이승환(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남(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정미애(국민대 일본연구소 교수), 최지영(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황금명환(희망나눔센터 사무국장)

## (2) 발족식 및 회의

### ① 발족식

○ 일시: 2008년 4월 29일(화) 오후 2시~3시 ○ 장소: 장충동 분도교육장

### ② 추진위원회

○ 제1차 - 4월 29일(화) 오후 1시~2시, 분도교육장

○ 제2차 - 6월 26일(목) 오후 2시, 평화여성회

○ 제3차 - 8월 19일(화) 오후 3시, 평화여성회 교육장

### ③ 운영위원회

○ 제1차 - 2월 15일(금) 오전 11시, 평화여성회

○ 제2차 - 3월 4일(화) 오후 6시, 여연

○ 제3차 - 4월 1일(화) 오후 1시, 기념사업회

○ 제4차 - 5월 26일(월) 오후 4시, 은덕문화원

○ 제5차 - 6월 20일(금) 오후 9시, 평화여성회

○ 제6차 - 8월 5일(화) 오전 9시, 여연

○ 제7차 - 8월 27일(수) 오전 7시 30분, 은덕문화원

### ④ 집행위원회

○ 제1차 - 3월 4일(화) 오후 4시, 여연

○ 제2차 - 6월 30일(월) 오후 3시, 평화여성회

○ 제3차 - 6월 30일(월) 오후 3시, 평화여성회

○ 제4차 - 7월 4일(금) 낮 12시, 평화여성회

○ 제5차 - 7월 16일(수) 오후 4시, 평화여성회

○ 제6차 - 8월 1일(금) 오후 6시, 오후 6시, 평화여성회

### ⑤ 자문위원회

○ 제1차 - 3월 20일(목) 오후 6시, 평화여성회

○ 제2차 - 3월 24일(월) 오후 6시, 평화여성회-지도위원 모임

### ⑥ 준비위원회

- 제1차 - 1월 30일(수) 오전 11시, 평화여성회
- 제2차 - 3월 11일(화) 낮 12시, 평화여성회 외 여러 차례

### (3) 워크숍

#### ① 제1차 워크숍

- 일시: 2008년 4월 29일(화) 오후 3시-5시    ○ 장소: 장충동 분도교육장
- 발제자: 정현백, 정경란, 조성철

#### ② 제2차 워크숍

- 일시: 2008년 8월 5일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여연 회의장
- 발제자: 김연철

#### ③ 제3차 워크숍 - 평가워크숍

- 일시: 9월 26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장충동 분도교육장
- 프로그램:

발제: 김귀옥 한성대 교수

토론: 권지희(여성신문기자), 남윤인순(여성연합 상임대표), 이승환(민화협 정책  
위원장), 최원형(한겨레신문기자), 한정숙 (서울대 교수)

전체토론

### (4) 기자회견담회

- 일시: 8월 25일(월) 낮 12시    ○ 장소: 파이낸스빌딩 용수산
- 참석: 연합뉴스, 한겨레, 여성신문, 미국의 소리 외 8명

### (5)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일시: 2008년 9월 1일(월) - 3일(수)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개성
- 참석자: 연인원 320여명
- 프로그램

| 일정(date)              | 프로그램(program)          | 장소(place) |
|-----------------------|------------------------|-----------|
| 9월 1일(월) 6:00-8:00 pm | 환영만찬(Welcoming Dinner) |           |
|                       | 사회: 이경옥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 |           |
|                       | 환영사: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           |
|                       | 참가자 소개: 사회자            |           |
|                       | 축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



떡낙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컨페사: 각국대표

9월 2일(화) 8:00-9:00 am 등록

여성플라자

9:30-10:15 am 개막행사

사회: 조영희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운영위원장

개회사: 이선중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장

축사 1: 변도은 여성부장관

축사 2: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축사 3: Kerstin Greback WILPF 대표

축하메시지

10:15-12:00 am 주제 I : "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하다"

사회: 최영애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

중국 Zheng Hong

일본 Shimizu Sumiko

러시아 Lebedeva Nina Borisovna

미국 Karin Lee

한국 남윤인순

질의응답

12:00-1:30 pm 점심식사

1:30-5:00 pm 주제 II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대의 방향"

사회: 이문숙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운영위원장

1:30-3:20 pm

Key-note Speech I : Kerstin Greback WILPF 대표

key-note Speech II: 정현택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장

토론요약

질의응답

3:20-3:40 pm break

3:40-5:00 pm Two Track Discussion

1. NGO group

사회: 이문숙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운영위원장

2. 여성의원 간담회 국회

- 한국 측: 이미경 민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최영희 민

|                                                            |      |    |
|------------------------------------------------------------|------|----|
| 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      |    |
| - 일본 측: 마사코 의원, 미쓰의 전 의원                                   |      |    |
| - 폐석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일본측 보좌관 및 통역 |      |    |
| 6:00-8:00 pm 저녁식사 및 Cultural Exchange                      |      |    |
| 사회: 조영숙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                                     |      |    |
| 저녁식사 : Garden Party                                        |      |    |
| 문화행사                                                       |      |    |
| 9월 3일(수) 5:30AM                                            | 서울출발 | 개성 |
| 분단상황체험/개성관광(마연폭포,선죽교,고려박물관 등)                              |      |    |
| 6:30PM 폐회행사(Closing Ceremony) 남측출입국사무소                     |      |    |
| 사회: 김금옥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집행위원장                                    |      |    |
| 감사인사 : 조영희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운영위원장                                 |      |    |
| 성명서 채택                                                     |      |    |
| 동북아평화 평화를 위한 연대의 끈 잇기 퍼포먼스                                 |      |    |

- 참석 : 9월1일 약 70여명, 9월2일 약 130여명/은덕문화원 70여명  
9월3일 40여명
- 언론보도 및 인터뷰
  - 보도: 연합뉴스,통일뉴스,여성신문,한겨레신문,세계일보,오마이뉴스,미디어  
다음, 온맘뉴스, 민중의소리, 경향신문(칼럼), ZanZan News(Japan)
  - 인터뷰: 한겨레신문,국민일보, 여성신문, 통일뉴스, 통일 TV, KBS 라디오,  
민중의소리
  - 방송취재: KBS TV, KBS 라디오, CBS, 통일TV

#### (6) 평가

##### ① 성과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향후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성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한반도평화 및 동북아평화에 대하여 국내·국제 각계각층의 여성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② 과제

- 북한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고 명실상부한 여성6자회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적극적인 언론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외신보도를 통해 국내외의 광범위한 언론보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등 섬세한 기획이 필요하다.
- 행사의 진행과 성과가 조직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회원들의 참여 공간과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대중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여성의원들과 보수성향 여성단체의 참여 등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 입장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약 10여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며, 북미관계, 남북관계, 대북정책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나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의 과제마련으로까지는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4) 남북여성과 화해 및 협력활동

(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① 2008년 1차 운영위원회의(총회)

- 일시 : 2월28일(목) 오후2시      ○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 프로그램

1부 : 선정부에서의 남북관계 전망 (김연철 발표)

2부 : 정기총회 - 2007년 사업, 회계승인, 운영규정개정, 임원인준 2008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등

②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회의

- 대회명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여성대표자 회의
- 일 정 : 2008년 5월14일(수)~16일(금)
- 장 소 : 금강산                      ○ 규 모 : 남측 20여명, 북측 20여명
- 참 석 : 조명희, 정경란, 김현희, 양현아, 유복남, 최안전경 등
- 주 관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 회의 프로그램

주제 : '615공동선언실천과 10.4선언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역할'  
 가. 일시 및 장소 : 5월15일(목) 저녁 7시, 금강산호텔 2층 세미나  
 나. 프로그램

사회 : 이장실 공동대표

-대표단 소개

-대표연설 : 남북 각 1인 (남측:이명신 상임대표, 북측 : 김정옥 부위원장)

-토론 각 2인

남측 : 조영희 공동대표, 이은미 울산여성회 공동대표

북측 : 림미화 6.15북측위 여성분과위원, 리산옥 조선카톨릭교여성회 회장

-남북여성공동보도문 발표

남측 : 김덕훈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북측 : 김은희 평양시 여명위원장

③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성인사 6.150인 공동선  
 언발표

○ 발표일 : 2008년 6월13일(금)

④ 10.4선언 1주년 기념 여성들의 목소리 성명서 발표

○ 발표일 : 10월2일(목)

## (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① 6.15민족통일대회 참여

○ 일정 : 2008년 6월 15일~16일(1박 2일)      ○ 장소 : 금강산

○ 대회명 : 6.15공동선언발표 8월 기념 민족통일대회(약칭 : 6.15민족통일대회)

(\*가분대회명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대회)

○ 주제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열어나가자

○ 참석 : 안경애(평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 등 남측대표단 300  
 명, 북측대표단 100명, 해외측대표단 70~80명

②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 참가단 참여

○ 행사기간 : 8월 9일(토)~14일(목)

○ 주최 :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 추진위원회

- 주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참석: 안정애 (평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

### ㉓ 8.15인종통일행사 참여

- 일시 : 2008년 8월15일(금)      ○장소 : 백범기념관

### ㉔ 10.4선언 1주년 기념 토론회 & 평화와 통일을 위한 "1004열차"와 10.4선언 1주년 기념식 참여

- 가. 10.4선언 1주년 기념 토론회 -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를 위하여"
- 일시와 장소 : 2008년 9월 30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1004열차"와 10.4선언 1주년 기념식
- 일시와 장소 : 2008년 10월 4일(토) / 임진각

## 5. 사업평가

1)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개최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영역의 여성대표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관심을 확대하였다. 재정적 어려움과 북한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아쉬움도 있었으나 6자회담의 당사국 여성평화활동가, 여성의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동북아 5개국 여성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들의 행동계획을 모색할 수 있었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참여한 여성들은 평화구축 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한 유엔 결의안 1325의 이행을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하여 여성들은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성들이 평화의 세력으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형성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과제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세미나 모임을 통해 정부정책을 모니터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여성평화이론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주한미군 관련 심층적 이해를 공부하였고 애초 목표로 한 정부정책의 모니터의 경우 향후 현안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주의적인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정책논의를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6.15 여성본부의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남북여성의 화해 및 협력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를 위한 평화여성회의 독자적인 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운영위원회, 세미나 모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센터의 논의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회원들과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제기된다.

## 2-2. 갈등해결센터

###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박수선
- (2) 운영위원회 : 김선훈, 김학목, 김현희, 박수선,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경순, 이덕경, 이재영, 조영희
- (3) 청소년교육팀 : 여혜숙(팀장), 이덕경(서기), 김영진, 김지선, 김지현, 남미영, 문경아, 박정옥, 박무열, 박상희, 박인혜, 박홍나미, 박남희, 안향숙, 이미숙, 이현숙 (16명)
- (4) 사회갈등분석팀 : 김선훈(팀장), 이현주(서기), 김지훈, 명세진, 박수선, 박재근, 이경순, 이항진, 정진화 (9명)
- (5)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조정팀 : 박홍나미(팀장), 김선훈,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이재영, (이항진), 조영희, 남미영, 박상희, 박재진, 안향숙, 이경순, 이덕경, 이미숙, 정태효, (조혜은, 김정아) 등 총 18명
- (6) 연구원 : 김학목, 이재영, 서정기

### ○ 회의

- (1) 운영위원회 : 격월 1회
- (2) 청소년교육팀 회의 : 매월 1회
- (3) 사회갈등분석팀 회의 : 격주 1회
- (4)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조정팀 : 월 1회
- (5) 연구원 : 수시

### 1. 사업방향

- 1)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한다.
- 2) 그간의 활동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2. 사업목표

- 1)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 2) 그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힘쓴다.
- 3)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4)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5)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6)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7) 평화적 갈등해결 영역에서 일하는 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형성에 노력한다.

### \*조직운영의 기본 방향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평화적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탈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는 관심영역에 따라 청소년교육, 사회갈등분석 등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재기되는 시안에 따라 별도의 과제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의 각 팀장은 팀의 성원을 관리하고 운영과 사업을 총괄한다.
- 갈등해결센터는 정기적인(적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전반을 논의, 결정한다.
-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각 팀장, 본부 사무책임자 등의 당연직 운영위원과 각 팀별 1인을 포함하는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갈등해결센터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재교육 등을 수행한다.
-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1년 3회 이상 월례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사업계획

#### ○ 대상별 주요 교육 사업

##### 1)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 다양한 틀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을 기획, 진행한다.

#####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 지역갈등, 사회갈등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활동가 및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 교육의 특성화, 전문화를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 (1) 학교폭력 예방교육
- (2) 학교부적응아 대상 교육
- (3) 청소년캠프
- (4) 공부방 교육
- (5)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4) '갈등해결과 평화' 입문 과정

- (1) 일시: 분기별로 연중 2회 예정(6월 28-29일, 12월 6-7일, 1박 2일 워크숍)
- (2) 장소: 미정
- (3) 내용: 갈등해결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 의사소통

5) '갈등해결과 평화' 기본과정(2박3일 워크숍 + 강좌 3시간 10강좌)

- (1) 일시 : 2월 15(금)~17(일), 2/25-3/26 매주 월, 수 저녁6시30분~9시30분 총 50시간
- (2) 장소 : 미정
- (3) 내용 : 전체 교육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본다.(평화, 갈등해결교육의 의미 및 현재와 미래,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조정, 창조적 문제풀기, 대화, 의사소통 등)

6) 갈등해결과 평화 중급 과정

△ 제6기 강사 트레이닝

- (1) 일시: 4월 7일~23일(월, 수 6시30분~9시30분), 5월 3~17일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42시간
- (3)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4) 내용: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

△ 조정자(mediator) 훈련과정

- (1) 일시: 8월 29~31일(2박3일 워크숍), 9월 6, 20, 27일 토 1-7시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42시간
- (3)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4) 내용: 개인간 갈등, 공공갈등 조정 실습

#### △ 진행자(Facilitator) 훈련과정

- (1) 일시: 10월 17~19일(2박3일 워크숍), 25~10월 15일 토 1-7시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42시간
- (2) 참여 자격: 기본과정 수료자
- (3) 내용: 회의진행, 의사결정, 문제해결워크숍 진행 기술과 방법 훈련

#### △ 회복적 사법 ‘회합’ 조정자 훈련 과정

- (1) 일정: 2월 22(금)~24일(일)(2박3일), 3월 8, 15, 22, 29일 1시~7시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46시간
- (3) 대상: 조정전문가과정 수료자 대상
- (4) 내용: 회복적 사법이란? ‘회합’ 이해,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무, 실습

#### 7)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신록사와 공동주최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다른 교육과는 별도로 팀을 구성하여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 진행한다.
- 신록사 측과 프로그램 진행과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적극화한다.
- 팀원: 김선훈, 이항진, 여혜숙

#### ○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사업 및 내용들을 자료화하여 소책자를 발간한다. 내용적인 홍보, 선전의 역할과 함께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예) -기초 입문서 단행본 기획, 집필
  - 회복적 사법 활동 보고서
  - 사회갈등사례 연구보고서 및 사례집
  - 청소년교육 책자

- 2) 영상자료 개발: 효과적 교육을 위해 영상을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3) 교육과정 및 활동을 정리한 센터 소개 브로셔 제작.
- 4) 홈페이지 개편
- 5) 갈등해결과 평화 관련 주제 토론회, 세미나 개최
- 6) 논평(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갈등해결과 평화' 입장에서 논평 등 글을 써서 꾸준히 발표한다.)

#### ○ 프로그램 연구, 개발

#####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 초/중/고 대상별 세분화된 교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교안집을 정식출간
- 교구개발 : 워크북, 동영상, 교재도구
- 프로그램 개발
- 평가척도 연구
- 내부교재 : 교육방법론, 시나리오, 워크시트 등

##### 2) 사회갈등사례 연구:

- 갈등사례 발굴, 심층 분석(과제로 진행)
- 갈등해결센터 교육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사회갈등사례 시나리오 작업
- 웹진, 홈페이지 등에 사회갈등사례 분석내용 소개 및 갈등 관련 서적 서평 실기

3) 통일교육 및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과제에 갈등해결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조직 강화 및 확대

##### 1) 그간 교육참가자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 2) 회원 재교육/알려주기

원래회의의 질적 강화, 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진행자들의 재교육과 훈련 확대 지원

##### 3) 전문강사를 형성, 강화

청소년교육뿐 아니라 일반 주부 대상, 공무원 대상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들을 형성하고, 각 대상별 교육 내용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

4)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강화

국내외 프로그램 참여

교안연구모임, 연구수업대회 등

○ 갈등해결을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

- 3자역할로서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 3자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과 모델을 연구, 시범적으로 적용한다.(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조정, 사회갈등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접근 모색)

1) 회복적 사법 '회합'

2) 사회갈등에서 3자 역할 모색

3) 조직내 갈등해결을 위한 진행자 역할 모색

○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r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등 갈등예방, 해결 관련 국제단체와의 연대

4. 사업 내용

○ 회의 및 모임

1) 회원의 날

(1) 일시: 8월 27일(수) 오후 7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교육장

(2) 참석: 김선훈, 김영진, 김현희, 남미영, 명세진, 박우열, 박상희, 박수선, 박남희, 박홍남, 박인혜, 박재신, 안향숙, 여혜숙, 이덕경, 이미숙, 이지영, 이항진, 이현숙, 이현주, 조영희

(3) 주제: 캐나다 연수 보고회 및 친교

2) 운영위원회

(1) 1차: 2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10시 30분 '갈등해결과 평화' 기본과정 세부내용 논의, 브로셔 논의

(2) 2차: 4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10시 30분, 갈등해결과 평화 전문가과정 등 논의

(3) 3차: 7월 10일(목) 오후 7시30분-10시 30분, 상반기 사업 평가 등 논의

- (4) 4차: 8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10시 30분, 등
- (5) 5차: 10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11시, 사업평가 및 평가계획 등 논의
- (6) 6차: 11월 15일(토) 12시-오후 9시 사업평가, 2009 사업계획 논의
- (7) 7차: 12월 11일(목) 오후 7시 2009 사업계획 확정

### 3) 청소년교육팀

(팀장: 여혜숙, 이덕경(서기), 김영진, 김지선, 김지현, 남미영, 문경아, 박경옥, 박무열, 박상희, 박인혜, 박홍나미, 박남희, 안향숙, 이미숙, 이현숙 (16명))

- (1) 1차: 3/26(수) 오후 7:30 고덕중 고안검토, 각 분과 위상과 역할 정리, 청소년리더십캠프 준비
- (2) 2차: 5/9(금) 오후 7:30 고덕중, 용동초 교육평가, 청소년리더십캠프 장사모집, 6기 강사드레이닝 논의
- (3) 3차: 6/27(금) 오후 8:00 교육참관시 진행자 주의사항, 참관자 준비사항, 공동진행자의 역할 분담
- (4) 8/13(수) 오후 8:00 6기 회원환영회, 청소년교육팀 역사와 현재 공유, 공부모임의 향후발할 논의
- (5) 5차: 9/17(수) 오후 7:30 10월 청소년교육팀교육에 관하여, 수업 참관자 모집, 대화초 교안검토, 감동해결센터 조직이야기 나누기
- (6) 6차: 10/14(화) 오후 7:30 평가지 활용 방안, PPT교육에 관하여/ 교육: 청소년에 대한 이해(강사: 박상희)
- (7) 7차: 11/19(수) 오후 8:00 2008년 청소년교육팀 평가

### 3-1) 청소년 고재,교구 분과 회의 (분과장: 박경옥, 구성원: 김영진, 문경아)

- (1) 3/20(수) 오후2:00
- (2) 4/15(화) 오후1:30
- (3) 4/29(화) 오후2:00

### 3-2) 청소년 학교부적응 분과 회의 (분과장: 박인혜, 구성원: 여혜숙, 박홍나미, 박상희, 안향숙, 박경옥)

- (1) 2/4(월) 오후4:00, 주제: 학교부적응이란?
- (2) 2/26(화) 오후3:00, 주제: 학교부적응 교육안을 잡기
- (3) 3/12(수) 오후7:30, 주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4) 4/2(수) 오후7:30, 주제: 의사소통 프로그램

### 4) 사회갈등분석팀

(참원: 김선혜, 김지선, 김지훈, 명세진, 박재근, 이경순, 이항진, 이현주, 박수선)

- (1) 1차 : 1월 10일(목) 오후 2시, 학습계획 및 일정 확정, 경부운하 논의, EPLC 보고  
서 작성 논의
- (2) 2차 : 1월 17(목) 오후 3시, 경부운하 관련 중립적 사실조사 연구, EPLC 보고대회  
참석 및 발표 준비 전
- (3) 3차 : 1월 23(수) 오후 7시, 중립적 사실조사 관련 학습, 영종도 지역주민 면접조사  
논의, 기타 EPLC 보고대회 참석 및 발표 준비
- (4) 4차 : 1월 26일(토) 오후 7시, 영종도 지역주민 면접조사 경과 보고 및 논의
- (5) 5차 : 2월 4일 오후 7시, 영종도 지역주민 면접조사 논의
- (6) 6차 : 2월 12일 오후 5시, 영종도 지역주민 면접조사 논의
- (7) 7차 : 2월 14일 오후 4시, 영종도 지역주민 면접조사 보고서 작성 논의
- (8) 8차 : 3월 14일 오후 7시, 공동조사 사례연구 조사의 목적과 조사 정리 틀 논의
- (9) 9차 : 4월 4일 오후 7시, 공동조사 사례 발표, 공동조사 논의사항 선정
- (10) 10차 : 4월 14일(목) 오전 11시, 공동조사 사례 조사 발표와 논의 항목 추가
- (11) 11차 : 5월 2일 오후 6시, 공동조사 사례연구 목적 확인, 조사보고서 역할 분담,  
운영위원 추가 선출
- (12) 12차 : 5월 19일 오후 1시 30분, 공동조사 운영지침 비교 토의, 공동조사 비교와  
연구 시사점 논의
- (13) 13차 : 07월 07일 오후 2시 공동조사 사례 발표 보고서 제작전, 하반기 활동제  
획전
- (14) 14차 : 7월 25일 오후 2시, 쇠고기 협상 관련 갈등 사례 논의
- (15) 15차 : 8월 04일 오후 7시, 쇠고기 협상 관련 갈등 사례 분석, CONFLICT중 학습  
목표 명확히하기
- (16) 16차 : 8월 26일 오후 7시, 쇠고기 협상 관련 갈등 사례 분석
- (17) 17차 : 9월 11일 오후 7시, 쇠고기 협상 관련 갈등 사례 분석
- (18) 18차 : 10월 30일 오후 3시, 쇠고기 협상관련 갈등 사례 정리, 외부 연구 사업 공  
모 논의

##### 5)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조정팀

(팀장: 박홍나미, 김선혜, 박수선, 박민희, 여혜숙, 이재영, (이항진), 조영희, 남미영, 박  
상희, 박재신, 안향숙, 이경순, 이덕경, 이미숙, 정태효, (조혜은, 김정아) 등 총 18명)

- (1) 1차 : 1월 18일(금) 오후 1시30분, 회합 조정 체제 논의

- (2) 2차 : 3월 8일(금) 오후 7시30분, 2008년 대화모임 진행 체계 및 훈련 후 팀 구성 논의
- (3) 3차 : 4월 24일 (목) 오후 7시30분, 대화모임 진행 체계 및 훈련 후 팀 구성 논의
- (4) 4차 : 5월 28일(수) 오후 7시, 대화모임 오리엔테이션(대화 모임 진행을 위한 준비)
- (5) 5차 : 6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화모임 진행 상황보고 및 캐나다 연수 보고
- (6) 6차 : 7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화모임 진행 상황보고
- (7) 7차 : 9월 24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화모임 진행 상황보고 및 대화모임에 대한 종합평가 및 결정 논의
- (8) 8차 : 10월 30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화모임 진행 상황보고 및 조정팀 향후 계획 논의
- (9) 9차 : 11월 27(목요일) 오후 7시 30분, 2008 대화모임 사례 평가
- (10) 7월 24일 오후 2시 형사정책연구원 주관 워크샵 참가
- (11) 8월 21일 오후 12시 갈등해결센터 조정팀과 가정법원 조사관 미팅

○ 대상별 주요 교육 사업

1)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 (1) 충남교육연수원 주최, 교장대상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교육(6시간)  
일시: 3월 20, 21일 진행참가: 박수선
- (2) 강원도교육연수원 주최, 교장 대상 갈등관리협상과정(6시간)  
일시: 5월 20일 진행참가: 박수선
- (3) 청량중학교 교사 대상 갈등해결과 의사소통(2시간)  
일시: 7월 22일 진행참가: 박수선
- (4) 서울시 교육청 주최 생활지도부장, 상담부장 교사 대상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조정자훈련' 연수(30시간)  
일시: 7월 28일~8월 1일  
진행 참가: 이재영, 박수선, 김선혜, 여혜숙
- (5) 무주 푸른꿈학교 교사, 학부모대상 '협동력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12시간)  
일시: 8월 24-25일 진행참가: 박수선, 여혜숙
- (6) 신구로초등학교 교사 연수,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4시간)  
일시: 11월 5,12일 진행참가: 여혜숙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지역갈등, 사회갈등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활동가 및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1) 부천 고려문화의집 주최, 부천청소년지도자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24시간)

일시: 4월 28-30일

진행참가: 김선훈, 박수선,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 (2) 성매매없는 세상 이룸 주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위한 갈등해결 워크숍

일시: 2월 25일-4월 28일 진행참가: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 (3) 충북여성민우회 주최, 갈등해결조정자훈련과정(32시간)

일시: 4월 19, 20일, 26, 27일

진행참가: 박수선(보조 김선훈)

- (4) 고양 꿈틀이어린이집 주최, 어린이집교사 대상 갈등해결교육(12시간)

일시: 4월 24일-5월 29일 진행참가: 박수선, 박인혜, 김선훈, 여혜숙

- (5) 대전평화여성회 공동주최, 갈등해결과 평화 입문과정(1박2일)

일시: 6월 28, 29일 진행참가: 김선훈, 박수선, 여혜숙, 이재영

- (6) 대전평화여성회 공동주최, 갈등해결과 평화 심화과정(1박2일)

일시: 11월 7, 8일 진행참가: 박수선, 여혜숙

- (7) 한살림 주최, '핵심 리더십 교육, 평화적 갈등해결과 협동적 리더십' (2박3일)

일시: 7월 3-5일, 11월 3-5일(2회) 진행참가: 박수선, 김선훈, 여혜숙

- (8) 제주여성인권연대 주최,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기초(23시간)

일시: 7월 11-13일 진행참가: 김선훈, 박수선, 박인혜

- (9) 제주여성인권연대 주최,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심화(23시간)

일시: 9월 5-7일 진행참가: 박수선, 여혜숙

- (10) 도봉시민회 여성희망학교 후속모임 '갈등해결과 대화법' (30시간)

일시: 9월 4일-11월 6일 진행참가: 박수선, 박인혜, 김선훈, 여혜숙

- (11) 의정부참교육학부모회 주최, 갈등해결과 의사소통(15시간)

일시: 10월 21일-11월 18일 진행참가: 박수선, 여혜숙

- (12)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주최, 갈등해결 전문가양성 워크숍(20시간)

일시: 11월 21일-23일 진행참가: 김선훈, 박수선, 박인혜

- (13) 여주 환경운동연합 등 주최,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갈등해결과 평화 워크숍(1박 2일, 2회)

일시: 10월 25-26일(1차) 11월 29-30일(2차) 진행참가: 김선훈, 박수선, 여혜숙

- (14) 울산여성회 주최, '폭력 예방강사 양성 심화과정' (12시간)



일시: 9월 18일-19일 진행참가: 여혜숙

###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 교육의 특성화, 전문화를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 (1) 학교폭력 예방교육
- (2) 학교부적응아 대상 교육
- (3) 청소년캠프
- (4) 공부방 교육
- (5)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 청소년 교육현황

| 교육영역               | 교육기관          | 회수       | 담당강사                           |
|--------------------|---------------|----------|--------------------------------|
| 학교폭력예방교육<br>(총35회) | 대조초           | 2교시/총1회  | 박인혜, 여혜숙                       |
|                    | 물동초           | 2교시/총1회  | 김선혜, 박홍나미                      |
|                    | 구산중           | 2교시/총4회  | 박인혜, 이미숙                       |
|                    | 용동초           | 2교시/총5회  | 김선혜, 김지선, 박경옥,<br>박홍나미,박인혜,이미숙 |
|                    | 중원중           | 1교시/총8회  | 박인혜, 여혜숙                       |
| 갈등해결과 평화<br>(총79회) | 대화초           | 2교시/총16회 | 김영진외 9명                        |
|                    | 고덕중           | 2교시/총16회 | 김지선외 9명                        |
|                    | 아침나평화학교       | 2시간/총10회 | 박인혜, 여혜숙                       |
|                    | 상봉초양과후교실      | 1시간/총15회 | 김영진                            |
|                    | 신상계초 방과후교실    | 1시간/총15회 | 이덕경                            |
|                    | 군포장정동 청소년문화의집 | 90분/총15회 | 박인혜                            |
|                    | 북부 방과후교실      | 2교시/총4회  | 박인혜                            |
|                    | 도동원경센터 공부방    | 2시간/총4회  | 김영진, 박인혜                       |
| 학교부적응교육(총4회)       | 문성중           | 2교시/총4회  | 김영진, 문경아                       |
| 움직이는 배움터<br>(총19회) | 상봉중           | 2시간/총4회  | 여혜숙, 문경아                       |
|                    | 여주중           | 2교시/총3회  | 박인혜, 여혜숙, 이항진                  |
|                    | 인진혜유공부방       | 2시간/총6회  | 박경옥, 남미영                       |
|                    | 연지초 방과후교실     | 2교시/총6회  | 박인혜, 이미숙                       |
| 임원리다함동행<br>(총4회)   | 신명중           | 2교시/총2회  | 여혜숙, 이미숙                       |
|                    | 문성중           | 2교시/총2회  | 김영진, 박인혜                       |
| 통일평화야당<br>CA수업     | 신목중           | 2시간/총1회  | 여혜숙                            |
| 회복적교육<br>(사랑의 교실)  | 연지초           | 1교시/총16회 | 김영진, 이현숙                       |
|                    | 금원청소년수련관      | 4시간/총6회  | 박인혜, 김지선, 남미영                  |

청소년평화리더십 캠프

|              |                                    |                      |
|--------------|------------------------------------|----------------------|
| 프로그램<br>개요   | ○ 일자 : 2008년 8월 4일(월) - 6일(수) 2박3일 |                      |
|              | ○ 장소 : 여주 신록사                      |                      |
|              | ○ 대상: 여주중학교 1,2,3학년 19명            |                      |
|              | 구분                                 | 시 간 장 의 명            |
| 8 / 4<br>(월) | 11:00 - 12:00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              | 12:00 - 13:00                      | 점 심 식 사              |
|              | 13:00 - 15:00                      | 1강 여는 마당             |
|              | 15:00 - 15:30                      | 휴 식                  |
|              | 15:30 - 17:30                      | 2강 다양성 인정 및 공존의 관점이해 |
|              | 17:30 - 18:30                      | 저 녁 식 사              |
|              | 18:30 - 19:00                      | 협동적 평화놀이             |
|              | 19:00 - 21:00                      | 3강 의 사 소 통           |
|              | 21:00 - 22:00                      | 기상 및 몸풀기             |
| 8 / 5<br>(화) | 08:00 - 09:00                      | 아 침 식 사              |
|              | 09:00 - 11:00                      | 4강 조정 이해 I           |
|              | 11:00 - 12:00                      | 협동적 평화놀이             |
|              | 12:00 - 13:00                      | 점 심 식 사              |
|              | 13:00 - 15:00                      | 5강 자연과 함께            |
|              | 15:00 - 15:30                      | 휴 식                  |
|              | 15:30 - 17:30                      | 6강 협동적 문제해결          |
|              | 17:30 - 18:30                      | 저 녁 식 사              |
|              | 18:30 - 20:30                      | 7강 영상물을 통한 갈등이해      |
|              | 20:30 - 21:30                      | 즐거움 평화파티             |
| 8 / 6<br>(수) | 07:30 - 08:00                      | 기상 및 몸풀기             |
|              | 08:00 - 09:00                      | 아 침 식 사              |
|              | 09:00 - 11:00                      | 8강 조정실습              |
|              | 11:00 - 12:00                      | 닫는 마당                |
|              | 12:00 - 13:00                      | 점 심 식 사              |

4) '갈등해결과 평화' 입문 과정

(1) 일시: 6월 28-29일 대전평화여성회와 공동주최

(12월 6-7일 계획본은 진행하지 못함)

(2) 장소: 유성유스호스텔

(3) 내용: 갈등해결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 의사소통

5) '갈등해결과 평화' 기본과정(2박3일 워크숍 + 강좌 3시간 10강좌)

(1) 일시: 4월 11(금)-13(일), 4/21-5/28 매주 월 수 저녁 6시 30분~9시30분 총 50시간

(2) 장소: 봉도원불교수련원, 평화여성회 교육장

(3) 참가: 김지현 등 12명 수료 (워크숍은 16명 참가)

(4) 내용:

○ 기본과정 기초단계: 기초-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

| 기초 프로그램 개요    |             | ○ 일자: 2008년 4월 11(금) - 13(일) 2박3일 워크숍 |
|---------------|-------------|---------------------------------------|
|               |             | ○ 장소: 봉도원불교수련원(서울 우이동 소재)             |
| 구분            | 시간          | 강의명                                   |
| 4월11일<br>(금)  | 13:30-14:00 | 등록                                    |
|               | 14:00-15:30 | 1강 갈등해결과 평화 입문 -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
|               | 15:40-18:00 |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
|               | 18:00-19:00 | 저녁식사                                  |
|               | 19:00-21:30 | 3강 갈등분석 - 분석을 왜 하는가? 분석방법 이해, 갈등분석 실습 |
| 4월12일<br>(토)  | 09:00-09:30 | 어제 프로그램 평가                            |
|               | 09:30-12:00 | 4강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기초                |
|               | 12:00-13:30 | 점심식사                                  |
|               | 13:30-16:00 | 5강 창의적 아이디어모으기 실습, 의사결정의 여러 방법        |
|               | 16:20-18:00 | 6강 조정(mediation) 이해 1 - 조정이란? 조정의 원칙  |
|               | 18:00-19:00 | 저녁식사                                  |
|               | 19:00-21:00 | 7강 조정 이해 2 - 조정자의 역할, 기술              |
| 4월 13일<br>(일) | 09:00-10:20 | 8강 조정 이해 3 - 조정 기술                    |
|               | 10:40-12:00 | 9강 조정 이해 4 - 조정의 과정 및 단계              |
|               | 12:00-13:00 | 점심식사                                  |
|               | 13:00-15:00 | 10강 조정실습                              |
|               | 15:00-16:00 |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 평가              |

- 기본과정 심화단계: 심화-기초에서 전반적인 틀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

| 심화 프로그램 개요 |         | ○ 일자-횟수: 2008년 4월21(월) - 5월28일(수) 오후6시30분- 9시30분, 매회3시간씩 주 2회 10회 |                                                                                               |
|------------|---------|-------------------------------------------------------------------|-----------------------------------------------------------------------------------------------|
| 구분         |         | 주제                                                                | 내용                                                                                            |
| 1차         | 4/21(월) | 평화와 갈등 해결                                                         | 평화의 개념, 평화를 이루는 과정, 평화문화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
| 2차         | 4/23(수) | 갈등해결의 법, 제도 이해                                                    | 갈등해결 관련 법과 제도의 외국 사례와 우리 사회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 모색을 살펴본다.                                    |
| 3차         | 4/28(월) | 갈등원인 분석의 여러 방법                                                    | 갈등해결의 첫 과정인 분석에 대해 심화한다. 사례를 가지고 분석과 전략세우기에 대해 실습한다.                                          |
| 4차         | 4/30(수) | 갈등해결의 방법-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 다양한 의사결정방법, 상황과 내용에 맞는 효과적인 의사결정방법을 익힌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창의적 대안능력을 키운다. |
| 5차         | 5/7(수)  | 편견 다루기                                                            | 서로 다른 차이가 고정관념, 편견 등을 통해 차별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과 강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훈련한다.                            |
| 6차         | 5/14(수) | 의사소통기법/문제 해결하는 말하기 실습                                             |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말하는 법'을 훈련한다.                                                       |
| 7차         | 5/19(월) | 분노조절                                                              |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났을 때의 행동 등을 재관화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배우고, 모색해본다.                           |
| 8차         | 5/21(수) | 갈등해결의 방법-협상                                                       | 협상의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자신의 목표, 타인의 목표를 이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동적 협상을 배운다.                        |
| 9차         | 5/26(월) | 갈등해결의 방법-조정                                                       | 조정실습을 통해 조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
| 10차        | 5/28(수) | 관계의 회복/회해와 치유                                                     | 문제해결뿐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근본적 치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비폭력적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                                  |

6) 갈등해결과 평화 중급 과정

△ 회복적 사법 '회합' 조정자 훈련 과정

- (1) 일정: 2월 22(금)~24일(일)(2박3일), 3월 15, 22, 29, 4월 5일 1시~7시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46시간
- (3) 참가: 김선휘 외 18명(16명 수료)
- (4) 내용:

○ 회복적 사법 조정자훈련 기초 워크숍

| 기초 프로그램 개요                                                  |               |                                   |
|-------------------------------------------------------------|---------------|-----------------------------------|
| ○ 일자 : 2008년 2월 22(금) - 24(일) 2박3일 워크숍<br>○ 장소 : 여주 신록사 교육관 |               |                                   |
| 구분                                                          | 시간            | 강의명                               |
| 2월 22일<br>(금)                                               | 13:30 - 15:00 | 등록                                |
|                                                             | 14:00 - 15:00 | 1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
|                                                             | 15:10 - 17:00 | 2강 회복적 사법 이해 1 - 회복적 사법이란? 개념과 원리 |
|                                                             | 17:00 - 18:30 | 저녁식사, 예불(권하는 사람 한)                |
|                                                             | 18:30 - 20:30 | 3강 회복적 사법 이해 2 - 외국 사례            |
|                                                             | 20:40 - 21:30 | 체력단련/절수련                          |
| 2월 23일<br>(토)                                               | 06:00 - 08:00 | 아침식사, 산책, 율령 등                    |
|                                                             | 08:00 - 08:30 | 어제 프로그램 평가, 질문, 나누기               |
|                                                             | 08:30 - 09:30 | 4강 회복적 사법 이해 3 - 한국사회 적용 사례, 절차   |
|                                                             | 09:40 - 12:00 | 5강 회합 과정과 절차 이해 / 모델 소개           |
|                                                             | 12:00 - 14:00 | 점심식사, 신록사문화재답방                    |
|                                                             | 14:00 - 15:50 | 6강 실습 1 - 예비조정                    |
|                                                             | 16:00 - 17:00 | 7강 실습 2 - 도입                      |
|                                                             | 17:00 - 18:30 | 저녁식사, 예불(권하는 사람 한)                |
|                                                             | 18:30 - 19:50 | 8강 실습 3 - 입장나누기                   |
|                                                             | 20:00 - 21:30 | 9강 실습 4 - 경쟁규명, 합의, 추후관리          |
| 2월 24일<br>(일)                                               | 07:00 - 09:00 | 아침식사, 산책                          |
|                                                             | 09:00 - 12:00 | 10강 실습 5 - 종합실습 1                 |
|                                                             | 12:00 - 13:00 | 점심식사                              |
|                                                             | 13:00 - 15:00 | 11강 실습 6 - 종합실습 2                 |
|                                                             | 15:10 - 16:00 |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 평가          |

## 심화과정

| 구분              |               | 주제 및 내용                             |
|-----------------|---------------|-------------------------------------|
| 1차<br>3월 15일(토) | 13:00 - 19:00 | 회합 실무 1/면담기술 - 의뢰처 담당자<br>당사자       |
| 2차<br>3월 22일(토) | 13:00 - 19:00 | 회합 실무 2/조정과정 실습                     |
| 3차<br>3월 29일(토) | 13:00 - 19:00 | 회합 실무 3/조정과정 실습                     |
| 4차<br>4월 5일(토)  | 13:00 - 19:00 | 회합 실무 4/양식, 서류 작성 요령<br>평가와 전망, 수료식 |

### △ 제6기 강사 트레이닝

- (1) 일시: 2008년 6월 4일(수) - 7월 19일(토)
- (2) 강좌 내용 및 방식:
  - 수업 참관 5회(초등학교 1회 이상 참관)
  - 강좌 3시간 2회(6시간)
  - 교안작성, 시연 실습 2회(12시간)
- (3) 참가: 김지현, 남미영, 박남희, 정진화, 이경순

### △ 조정자(mediator) 훈련과정

- (1) 일시: 8월 29-31일(2박3일 워크숍), 9월 6, 20, 27일 토 1-7시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36시간
- (3) 참가: 김영지 외 16명(10명 수료)
- (4) 내용: 개인간 갈등, 공공갈등 조정 실습

| 구분            | 시간            | 강의명                                     |
|---------------|---------------|-----------------------------------------|
| 8월 29일<br>(금) | 13:30 - 14:00 | 접수, 인사                                  |
|               | 14:00 - 15:00 | 1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
|               | 15:00 - 15:40 | 2강 조정 이해 - 한국사회의 평화적 갈등해결, 조정의 필요성 (복습) |
|               | 16:00 - 18:00 | 3강 조정 실습 1                              |
|               | 18:00 - 19:30 | 저녁식사                                    |
|               | 19:30 - 21:30 | 4강 조정 기술/의사소통 실습                        |

|               |               |                  |
|---------------|---------------|------------------|
| 8월 30일<br>(토) | - 08:00       | 아침식사, 산책, 명상     |
|               | 08:00 - 10:00 | 5강 조정 단계별 실습 1   |
|               | 10:20 - 12:00 | 6강 조정 단계별 실습 2   |
|               | 12:00 - 14:30 | 점심식사, 신록사 문화재 탐방 |
|               | 14:30 - 16:30 | 6강 조정실습 2        |
|               | 16:50 - 18:00 | 7강 Q & A         |
|               | 18:00 - 19:30 | 저녁식사             |
|               | 19:30 - 21:00 | 질수련 등            |
| 8월 31일<br>(일) | - 08:50       | 아침식사, 산책, 명상     |
|               | 09:00 - 12:00 | 9강 조정실습 3        |
|               | 12:00 - 13:00 | 점심식사             |
|               | 13:00 - 14:00 | 조정자의 윤리          |
|               | 14:10 - 15:00 | 전체 평가 및 제회       |

| 구분                  |               | 주제 및 내용                    |
|---------------------|---------------|----------------------------|
| 1차<br>9월 6일<br>(토)  | 13:00- 15:00  | 조정기술 연습/사람을 다루는 기술, 문제해결기술 |
|                     | 15:00 - 17:00 | 개인간 조정실습 1                 |
|                     | 17:00 - 19:00 | 개인간 조정실습 2                 |
| 2차<br>9월 20일<br>(토) | 13:00- 15:00  | 공공(집단)갈등의 역학, 특성           |
|                     | 15:00 - 17:00 | 공공(집단)갈등 조정 단계 이해          |
|                     | 17:00 - 19:00 | 공공(집단)갈등 조정 실습             |
| 3차<br>9월 27일<br>(토) | 13:00- 15:00  | 조정 실습 / 일상에서 접근하기          |
|                     | 15:00 - 17:00 | 한국사회 적용 모색, 참여자 모둠별 토론, 발표 |
|                     | 17:00 - 19:00 | 평가와 전망, 수료식                |

△ 진행자(Facilitator) 훈련과정 참가자 모집이 안되어 진행 못함.

#### 가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신록사와 공동주최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다른 교육과는 별도로 팀을 구성하여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 진행한다.
- 신록사 측과 프로그램 진행과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적극화한다.

- 팀원: 김선혜, 이항진, 여혜숙

- 1회 진행

- 8/11-13 (2박3일) 장소: 여주 신록사

- 참석: 8명(청소년)

- 진행: 박인혜, 여혜숙

8) 기타: 경찰종합학교 정보관 대상 '사회갈등조정능력향상과정' 운영

- 경찰종합학교 주최, 년 4회 진행 (5인과정)

- 1차: 6월 9일~13일 (정보관 30명)

- 2차: 7월 14일~18일 (정보관 30명)

- 3차: 10월 6일~10일 (정보관 30명)

- 4차: 12월 15일~19일 (정보관 30명)

- 진행참가: 이재영, 박수선, 김선혜, 여혜숙

○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의뢰

1) 광명 하안문화의 집 주최, 통하는 가족 평화로운 가정 (24시간)

일시: 5월27일~7월15일 진행참가: 여혜숙, 박인혜, 박경옥

2) 우리노인복지센터 주최, 바우처사업 담당자 교육 (2시간)

일시: 10월24일 진행참가: 여혜숙

3) 원동사회복지관 주최, 갈등해결과 의사소통(9시간)

일시: 9월17일~10월1일 진행참가: 박수선, 여혜숙

○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1)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

(1) 캐나다 연구 자료집 \*회복의 여정, 평화적 갈등해결의 현장을 찾아(연구참가자)

(2) 사례보고서: 공동조사의 경험과 갈등해결-새만금, 영월댐, 천성산, 제룡산 공동조사  
사례비교(사회갈등분석팀)

2) 교육과정 및 활동을 정리한 센터 소개 브로셔 제작.

3) 홈페이지 개편 [www.peaceccr.org](http://www.peaceccr.org)

4) 갈등해결과 평화 관련 주제 토론회, 세미나 개최



(1) 6월 2일 오후4시 - 6시 사회갈등분석팀 주제토론회 : '공동조사 사례 경험' 비교 발표

- 사회: 박수선, 발제: 김선훈

- 참석: 김선훈, 김지선, 김지훈, 남미영, 명세진, 이경순, 여혜숙, 이현주, 조영희

○ 프로그램 연구, 개발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교재개발팀 활동, 자료집(내부) 발간

2) 사회갈등사례 연구:

(1) 「인권국제공항공사 문화복지관 기본계획수립 보완조사 중 주민의견조사」 용역 수행 (2008.2)

(2) 사례보고서 발간 - 공동조사의 경험과 갈등해결(새만금, 영월댐,원성산, 재룡산 공동조사 사례비교 / 2008. 11)

\* 2007년 연구과제로 수행한 Eco-Peace Leadership Center 지원 현장연구, 보고서 발표 및 우수상 수상(Resolving Conflict and Restoring Relationship among Local Residents /1월 31일 )

○ 조직 강화 및 확대

1)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강화

(1) 회복적 사법 워크숍 및 기관방문(캐나다 연수)

- 참가자 : 박수선, 김선훈,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경순, 이미숙, 이정순, 이재영, 이항진, 조영희, 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총 12명

- 일정: 6월 14일(토) ~6월 24일(화)

- 내용:

- 6월 16일(월) ~ 18일(수) : 워크숍 (장소는 Trinity Western Univ. 걸어서 이동)  
진행: Community Justice Initiatives Association([www.cjibc.org](http://www.cjibc.org))

- 6월 19일(목)-20일(금) : RJ 기관방문  
Abotsford에 있는 Restorative Justice Center  
Community Youth Justice

(2) 공부모임(격월 1회 진행 모임장: 이재영)

- ① 1차: 3월21일(금) 주제: 갈등분쟁전환 개요/연구 주제별 자료
- ② 2차: 5월23일(금) 주제: 회복적 사법정의
- ③ 3차: 7월18일(금) 주제: AI 배우기 (appreciative Inquiry)
- ④ 4차: 12월5일(금) 주제: 정신적 외상 치유

(3) 청소년교육팀 공부모임 (모임장: 박흥나미, 모임구성원: 청소년교육팀 모두)

- ① 1차: 2/20(수) 오후7:30, 주제: 갈등개념
- ② 2차: 3/4(화) 오후2:30, 주제:평화개념
- ③ 3차: 4/8(화) 오전10:00, 주제:폭력
- ④ 5/13(화) 오전10:00, 주제:의사소통
- ⑤ 7/8(화) 오전10:00, 주제:의사소통 6차시 교안검토

(4) 청소년교육팀 5,6기 공부모임 (진행: 김영진,박인혜, 강사트레이닝 5,6기 강사참여)

- ① 11/25(화) 오후7:30, 주제: 갈등개념
- ② 12/9(화) 오후 7:30, 주제: 갈등개념

(5)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트레이닝

- 대상: 1-3기 강사트레이닝 수료자 중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활동회원
- 일정: 2주 1회 첫모임 12월 8일(월) 오후 6시

#### ○ 갈등해결을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

- 3자역할로서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 3자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과 모델을 연구, 시범적으로 적용한다.(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조정, 사회갈등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접근 모색)

1)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 사건의뢰처<br>및 사건명            | 사건<br>유형 | 피해 가해자<br>수    | 대화모임과<br>지<br>소요기간 | 예비조정횟수 및 시간                     | 대화모임<br>횟수 및<br>시간                      | 합의<br>여부 |
|---------------------------|----------|----------------|--------------------|---------------------------------|-----------------------------------------|----------|
| 가정법원<br>압구정<br>△△학원<br>사건 | 상해       | 피해자 1<br>가해자 1 | 6.25~7.3           | 피해자 1회(100분)<br>가해자 1회(140분)    | 대화모임<br>이루어지지<br>않음                     | -        |
| 가정법원<br>육석동사건             | 상해       | 피해자 1<br>가해자 1 | 7.5~7.14           | 피해자 1회(90분)<br>가해자 1회(70분)      | 대화모임<br>이루어지지<br>않음                     | -        |
| 가정법원<br>관악구<br>신림동사건      | 폭행       | 피해자 1<br>가해자 3 | 7.8~7.25<br>(17일)  | 피해자 1회(90분)<br>가해자 1회(90분)      | 1차-7.22<br>(180분)<br>2차-7.25<br>(180분)  | 부분<br>합의 |
| 가정법원<br>은평구<br>갈현동사건      | 상해       | 피해자 1<br>가해자 1 | 7.9~7.25<br>(16일)  | 피해자 1회(105분)<br>가해자 1회(105분)    | 1차- 7.25<br>150분                        | 합의       |
| 가정법원<br>도봉구<br>속구사건       | 폭행       | 피해자 1<br>가해자 2 | 7.11~7.28<br>(17일) | 피해자 1회(120분)<br>가해자 1회(110분)    | 1차- 7.21<br>(150분)<br>2차-7.28<br>(160분) | 합의       |
| 가정법원<br>강남구<br>△△교교<br>사건 | 폭행<br>상해 | 피해자 1<br>가해자 2 | 7.11~7.21<br>(10일) | 피해자 1회(120분)<br>가해자 1회(150분)    | 1차- 7.21<br>(210분)                      | 합의       |
| 가정법원<br>노원구<br>△△공고<br>사건 | 공동<br>상해 | 피해자 1<br>가해자 2 | 7.14~7.22          | 가해자 2회(총 220분)<br>피해자2회(총 350분) | 대화모임<br>이루어지지<br>않음                     | -        |
| 가정법원<br>중랑구<br>달구장사건      | 상해       | 피해자 1<br>가해자 1 | 7.14~8.18<br>(35일) | 피해자 3회(180분)<br>가해자 1회(160분)    | 1차-8.18<br>(150분)                       | 합의       |

|                                  |          |                |                    |                              |                    |          |
|----------------------------------|----------|----------------|--------------------|------------------------------|--------------------|----------|
| 가정법원<br>강동구<br>천호동사건             | 상해       | 피해자 1<br>가해자 1 | 7.17~8.12<br>(26일) | 피해자 2회(360분)<br>가해자 1회(150분) | 1차- 8.12<br>(210분) | 합의       |
| 가정법원<br>양천구<br>신월동사건             | 공동상<br>해 | 피해자 1<br>가해자 1 | 7.30~9.27<br>(28일) | 피해자 1회(120분)<br>가해자 1회(100분) | 1차-9.27<br>(150분)  | 부분<br>합의 |
| 소년분류<br>심사원<br>신림동<br>노상상해<br>사건 | 상해       | 피해자 1<br>가해자 1 | 7.30~8.24<br>(25일) | 피해자 1회(210분)<br>가해자 2회(125분) | 1차-8.24<br>(90분)   | 합의       |
| 소년분류심사<br>원장진구<br>광장동카드사<br>건    | 절도       | 피해자 1<br>가해자 1 | 7.30~8.30<br>(31일) | 피해자 1회(120분)<br>가해자 1회(50분)  | 1차- 8.30<br>(160분) | 합의       |
| 소년분류<br>심사원<br>구로구<br>구로동사건      | 절도       | 피해자 1<br>가해자 1 | 7.30~9.21<br>(22일) | 피해자 1회(60분)<br>가해자 1회(60분)   | 1차- 9.21<br>(90분)  | 합의       |
| 소년분류<br>심사원<br>압구정동<br>사건        | 폭력       | 피해자 1<br>가해자 1 | 9.4~9.20<br>(16일)  | 피해자 1회(110분)<br>가해자 1회(75분)  | 1차- 9.20<br>(300분) | 합의       |

## 5. 사업평가

### 1) 성과

(1) 갈등해결과 평화 사업 영역의 확장 및 심화

- 회복적 사법 관련 사업을 3년째 진행해오면서 특히 올해는 법원 단계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진행하였고, 캐나다 연수 등을 통해 학교에서의 모래조형 훈련, 교육, 사례 개입 등 통합적 개념으로의 전환과 사업의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등 사업 영역의 확장과 심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청소년 교육의 영역에서도 2008년에는 폭력예방교육, 부적응학생 교육 등의 진행을 통해 청소년교육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전문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사회갈등해결 영역에서도 외부의 용역 연구 작업, 자체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자발적 모임의 차원을 넘어 활동 영역으로서 자기 자리를 모색해나갔다.

## (2) 조직역량 강화

- 활동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조직의 역량도 강화되었다. 2008년에는 청소년교육팀의 팀원도 6기 강사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2008년초 11명에서 16명으로 늘었고, '퍼해자가해자대화모임'을 위한 조정훈련을 계기로 18명의 활동가가 '대화모임'의 조정, 협력조정 역할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점이 성과이다.
- 양적 역량의 확대에 따라 청소년교육의 경우 대규모 교육(1회 다수 진행자 참여)이 가능해졌고, 또 한편 그러한 교육 의뢰를 요청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갈등해결과 평화 전문 교육 단체로서 자기 위상을 강화하였다고 생각된다.
- 특히 청소년교육팀의 경우 세분화된 교안 작성과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상반기에 학교부적응모임교재교구분과, 공부모임이 구성되어 단순히 초/중/고 대상별이 아닌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부적응교육의 세분화된 교안의 틀을 마련하는 등 조직 역량 강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 (3) 홍보활동 활성화

- 홍보활동으로 브로셔 제작과 홈페이지 개편을 하였다. 홈페이지는 갈등해결과 평화 주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교육 정보 및 활동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조직홍보에 도움이 되었다. 교육 신청란을 통해 장기 교육이 접수되는 등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및 활동의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했다.

## 과제

### (1)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서문화 노력 필요

- 2008년 갈등해결센터에서 계획한 교육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교육참가생이 현재까지 줄었다. 이는 정권교체로 인한 사회분위기의 변화 즉 현안 중심의 교육,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이나, 기금 미확보로 인해 교육참가비 부담이 높아진 점, 갈등해결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회성 교육을 접할 기회가 다양하게 확대된 점, 장기교육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에서 교육이 활성화되기도 한 측면이 있다.
-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중급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이 기초 교육을 이수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좁은 통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설계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등 관심 주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구성, 단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2)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록, 연구, 홍보작업의 미흡

- 2008년의 사업방향을 전문성과 성과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는 활동에 비해 그 성과나 내용을 알리고 홍보하는 사업이 여전히 부족했다. 청소년 교육 텍스트나 보고서, 연구작업 등을 통해 사업적 성과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외화할 수 있는 작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형성 노력

- 평화활동가들과 연대형성에 대해 중요하게 목표를 세웠지만, 2008년에는 그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고, 추진하지도 못했다. 목표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을 통해 평화활동가들의 연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4) 갈등해결과 평화 활동의 통합성 추구

- 각 분야별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나, 통합성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에의 개입을 통한 성공사례 축적 등 각 분야별로 진행되는 것들의 통합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현실적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조정활동 등은 여건과 역량의 일정 성숙을 가져왔으므로, 2009년에는 주력 사업화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 2-3 일상평화센터

###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2) 구성원 : 가인, 김지선, 나비, 레나, 장정화, 변숙진

### 1. 사업방향

- 1) 사회적 관계, 가치, 사유체계 등의 측면에서 비평화적인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고
- 2) 일상의 삶에서 평화를 만드는 다각적인 방법과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여
- 3) 사람의 삶과 경험에서 출발하는 여성평화운동의 내용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 2. 사업목표

- 1) 일상평화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1) 정기적인 모임 활발하게 갖기
  - (2) 회원 구성과 회원 간의 관계성 만들기
- 2) 센터 활동의 방향과 내용 만들기

### 3. 사업계획

- 1) 구성원들의 관심과 하고 싶은 운동의 성격을 서로 발견하고 모색하는 모임 갖기
- 2) 즐겁게 노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평화만들기를 위한 야유회 개발하기
- 3) 일상의 폭력성을 바꾸어가는 다양한 방법 발굴하기

### 4. 사업내용 및 평가

- 일상평화센터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무주체의 부재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일상평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집중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2-4 회원참여센터

### ○ 구성 및 운영

(1) 소장 :

(2) 회원사업팀 : 김현희, 최선희

(3) 웹진팀 : 홍승희(팀장), 김현희, 오영주, 이승현, 최선희

### ○ 회의

(1) 회원사업팀 : 수시

(2) 웹진팀 : 월1회

### 1.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 참여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개발한다.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킨다.

### 2. 사업목표

1)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키워간다.

2)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

3) 평화여성회의의 활동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의 소식을 담아낸다.

4)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회원확대를 이루어간다.

### 3. 사업계획

#### 1) 회원사업

(1) 회원현황 분석 및 관리

각 회원들의 욕구와 관심사 파악 등

(2) 회원만나기

(3) 회원배가운동

(4) 회원소모임 발굴 및 정착화

가. 회원들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회원 소모임을 만들어 낸다.

2) 웹진발행팀 (팀장 : 홍승희, 팀원 : 김현희, 이승현, 장정희, 오영주 등)

(1) 평화이슈, 일상에서의 평화만들기, 국제평화운동 소식 등을 담아 매월 여성평화



뉴스레터 발간 웹진을 발간하여 회원과 단체에 발송하도록 한다.

(2) 여성평화뉴스레터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포맷으로 제작하여 웹진을 받은 사람들의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한다.

(3) 온오프라인의 상호보완을 위해 웹진을 종합하여 연 1회 소식지를 발간한다.

(4) 자체 접속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증설하여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회원 커뮤니티, 회원간 쪽지 주고 받기, 회원간 채팅 기능, 회원 사진 올리기 등)

(5) 회원의 참여 확대와 평화여성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안의 공간을 증설하고 UCC(User Created Contents) 이벤트를 시도한다.

(6)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월 1회)을 실시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 4. 사업내용

##### 1) 회원사업

###### (1) 회원현황 분석 및 관리

○ 운영위회의 및 총회준비위원회를 통하여 평화여성회가 지난 10년간 회원 및 회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매년 회원의 증감현황, 연령별과 직업별에 따른 회원수, 회원가입 동기 등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회원참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원주소록과 연락처를 재정비하기로 하였고 회원을 성격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활동을 하는 일반회원과 비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 (2) 회원만나기

○ 전 회원과의 만남을 계획하였으나 여러 바쁜 일정상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넓히며 회원참여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였다.

###### (3) 회원배가운동

○ 회원배가운동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 (4) 회원소모임 발굴 및 정착화

○ 영어공부 및 지근공예 등 회원소모임을 2008년 상반기에 진행하였다.

2) 웹진발행팀 (팀장 : 홍승희, 팀원 : 김현희, 윤수경, 이승현, 오영주 등)

(1) 회의

- ① 1차: 1월15일(화) 오후3시~5시, 언론사의 글을 퍼올 경우 링크요청관련 협조공문 발송 등
- ② 2차: 2월12일(화) 오후3시~5시, 10주년 특집기사로 '나와 평화여성회' 코너마련 및 신입회원을 '함께 걷는 평화 길음'에 소개하기로 하다
- ③ 3차: 3월12일(화) 오후3시~5시, 10주년 특집 기획기사 관련 등
- ④ 4차: 4월10일(목) 오후3시~5시
- ⑤ 5차: 5월 8일(목) 오후3시~5시, 평화에 관한 시를 실기로 하다.
- ⑥ 6차: 6월12일(목) 오후3시~5시, 웹진 레이아웃 변경, 이시우 DMZ 사진기재 등
- ⑦ 7차: 7월12일(목) 오후3시~5시, 사진으로 보는 6.15와 8.15, 함께 읽고 싶은 책, 을 고 싶은 시' 등의 코너를 마련하기로 하다.
- ⑧ 8차: 9월 4일(목) 오후12시~2시, 평화글쓰기를 운영위원과 이사진 그리고 갈등해결 센터의 젊은 회원들이 번갈아 가며 릴레이로 쓰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 ⑨ 9차: 10월 9일(목) 오후12시~2시, 이정순 대권평화여성회 대표에게 '평화 글쓰기' 원고 청탁, 여성평화연구원의 이나영 교수에게 '한국의 성대배 체계'에 대한 원고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⑩ 10차: 11월13일(목) 오후5시~6시, '평화글쓰기'와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의 필진을 3개월 정도 미리 정해서 원고 청탁을 하기로 하다.

2) 주요사업

- (1) 특별 여성평화뉴스레터 발행 (월별 여성평화뉴스레터 목차는 부록에 포함)

5. 사업평가

1) 회원소모임을 시도하다

2007년 작년에 이어 영어로 진행하는 평화이야기를 2008년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진행하여 평화관련 주제를 자기고 영어로 토론하며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평화관련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여 회원간의 연대를 높일 수 있었다. 그 외 지면을 이용하여 회원들과 함께 동구미짜기를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평화여성회 10주년 기념행사 때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행사장내 및 프로그램의 훌륭한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원소모임이 꾸준히 정착되지 못하고 시도차원으로 머물러 향후 회

원들간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회원소모임의 적극적인 개발과 꾸준한 모임지원이 요구된다. 향후 회원 소모임과 관련하여 여성으로서 사는 평화글쓰기, 마을공부 함께 듣는 명상음악, 춤 모임 등이 제안되었다.

2) 회원관리 분석과 회원만남을 통하여 조직사업과 관련하여 전망의 기회를 마련하다.

회원들의 회비납부 현황에서부터 직업별, 연령별, 관심사별, 가입시기 등 일련의 분석에 따라 총괄적인 회원분석을 통해 회원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논의 자료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회원과의 만남을 통하여 향후 평화여성회 조직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전망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회원조직으로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

3) 뉴스레터가 매월 꾸준히 발행되다.

비록 웹진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지만 2007년 작년에 이어 2008년 올해도 웹진팀이 구성되어 기획회의를 진행하였고 뉴스레터를 매월 꾸준히 발행하였다. 필진의 부족과 원고가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아 여성평화내용을 풍부하게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필진의 확보와 내용의 참신한 구성 등이 요구된다.

## 2-5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 구성

\*명예이사장 : 김운옥

(1) 원장 : 김엘리

(2) 이사회 : 심영희(이사장), 권인숙, 김현미, 박현선, 안정애, 안진, 양현아, 이나영, 황영주, 김엘리(당연직, 원장)

(3) 연구위원 : 강인화, 윤덕화, 오미영, 이선미, 이화진, 조영주, 최윤정, 한정숙, 허성우

(4) 운영위원회 : 강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김현희, 레나

### 1. 사업방향

- 1) 여성들의 평화운동의 경험을 이론화하고,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식을 생산한다.
- 2) 여성주의 평화이론을 생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 2. 사업목표

- 1) 지식생산을 위한 연구 활동
  - (1)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 (2)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아젠다 개발
  - (3) 책 출판을 위한 준비
- 2)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1) 여성학 또는 평화관련 연구자들의 네트워킹 구성
  - (2) 여성평화활동가와 연구자를 재생산하는 환경 만들기

### 3. 사업내용

- 1) 회의
  - (1) 이사회
    - ① 1차 : 3월 7일, 200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등, 연구원회비의 50%, 외부프로젝트비의 10%를 평화여성회에 지원하기로 하다.

(2) 운영위원회

- ① 1차: 1월 10일(목), 2007년도 사업평가 및 2008년도 사업계획 검토, 2007년도 회계보고와 2008년도 예산안을 검토 등
- ② 2차: 3월 26일(수), 2008년 상반기 '여성과 평화, 다시 묻다' 활력재단 기획 등
- ③ 3차: 8월 25일(월) 한소리회 토론회 주최단위참석여부 논의, 하반기 토론회 주제, 발제자에 대한 논의 등
- ④ 4차: 11월 17일(월) 활력재단 후속 사업 책 발행 및 2009년 사업방향 논의 등

2) 공개세미나, 활력재단 "여성과 평화를 다시 묻다"

(1) 목적

- ① 근대국가 틀 속에서 제기되는 평화, 안보, 군사, 통일, 폭력 등을 여성주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읽고 재구성할 지점들을 문제화하고 정경화한다.
- ② 여성주의 평화정치학의 이론적 작업을 위한 시론의 기회를 만든다.
- ③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방향과 아젠다를 생산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2) 프로그램

- 일시: 4/28-6/2 매주 월, 오후 6시30분 ○장소: 여성플라자 2층 아카이브실
-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산 여성평화연구원, 여성사전기관
-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 내용 :

| 일시   | 제목                     | 발표자                          | 진행자            |
|------|------------------------|------------------------------|----------------|
| 4.28 | 근대국가의 폭력, 탈빈생명, 여성평화운동 | 조주현(제명대 여성학과 교수)             | 김엘리 원장         |
| 5.19 | 통일 이후 동독여성의 사회문화적 위기   | 도기숙<br>(장운대교양학부 젠더학 교수)      | 조영희 상임대표       |
| 5.26 | 평화로운 여성을 넘어서           | 김엘리<br>(연구원 원장, 성공회대외태교수)    | 여성사전기관<br>담당부장 |
| 6.2  | 여성안보 다시보다              | 황영주<br>(연구원 이사, 부산외대외교학과 교수) | 강인화 연구위원       |

4) 평화여성회 뉴스레터 연구위원 칼럼 집필

- (1) 2월 칼럼 : 김엘리,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멕시코 사람들-2008 멕시코 사회포럼 스케치
- (2) 3월 칼럼 : 강인화, 차별에 저항하는 새로운 시작
- (3) 5월 칼럼 : 테나, 2008 활력재단 여성과 평화 다시 묻다

## 5) 연대사업

### (1) 평화연대모임 참석

- 일 시 : 2008년 2월 11일 오후 4시      ○장 소: 평화박물관
- 참석자 : 조영주 연구위원

### (2) 심포지움 공동주관

- 행사명: 한소리화 22주년 기념 심포지움 "기지촌 : 국가, 군대, 그리고 여성"
- 일 시: 2008년 10월 16일(목) 13:30 - 17:00      ○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공동주관 :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화, 정신다문제해결을위한대책협의회,  
평화여성회 부설 여성평화연구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내용  
1부 : 총론발제 및 기지촌 다큐멘터리 등  
2부 : 발제 - 기지촌의 오늘/한국의 성매매 체제 : 위안부, 양공주 그리고 기생만  
들기, 기지촌 문제와 인권 등  
토론 - 김엘리 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참여

## 6) 조직 운영 활동

### (1) 소식지 발송

- 발송 횟수와 날짜 : 총 1회(9.29)
- 방법 : 이메일과 카폐를 통해서
- 대상 : 연구원 회원들과 평화여성회 운영위원들
- 주요내용 : 연구원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 나눔, 사업내용 나눔, 회원들 소식  
나눔, 회비 수신 분들

### (2) 카페 운영과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관리

- ① 연구원 카페 운영 : <http://cafe.daum.net/peacewomen>
  - 회원수 : 77명
  - 주요내용 : 연구원 소개, 연구위원 칼럼, 알럼과 자료, 회의자료, 운영위, 여평다  
시문다 세미나랑, 군가산점제(계시관지기: 강인화), 평화와젠더-남성성 (계시관지기:  
조중현)
- ②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 여성평화연구원 계사관, 자료실 등

## 2-6 특별사업

### 1.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 구성 : 이사, 공동대표, 운영위원, 영역별 전문가  
자료발간팀 홍승희(팀장), 김현희, 레나, 박수선  
홍보출판팀 김현희(팀장), 김선량, 오영주, 유복남  
영상제작팀 최안진경(팀장), 김정아, 이승현, 유복남  
재정기획팀 윤수경(팀장), 김선량, 김엘리, 여혜숙, 이낙호  
문화행사팀 홍승희(팀장), 김현진, 박인혜, 최선화, 황금명륜

#### ○ 목표

- 1) 여성평화운동의 방향, 비전,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2) 평화여성회를 사랑하는 이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열어 평화의 기운을 나누고 복돋운다.
- 3) 평화여성회 10주년 기념사업과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행사를 결합하여 평화상의 의미를 풍부히 하고, 고 이우정 선생의 유지를 새롭게 해석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4) 평화여성회 재정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한다.  
※ 평화여성회 홈커밍데이, 전회원 교제의 날 등

### 1) 사업내용

#### (1) 평화여성회 10주년 기념식 및 제 4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행사

- 일시 : 2008년 5월30일(금) 오후6시 ○장소: 상권관대 600주년 기념관 6층Faculty Club
- 프로그램

1부 평화여성회 10주년 기념식 : 6시~6시30분 (사회:여혜숙, 이자영)

평화여성회 10주년 기념영상 상영

인사말

축사

10년의 동반자들 : 공로패 및 감사패수여

2부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 6시30분~7시 (사회 : 윤수경)

고 이우정 선생 회고영상 상영

## 개회선언

인사말 : 김상근 (이우경평화상위원회 위원장)

선정경과 : 남윤인순 (이우경평화상위원회 심사위원장, 한국어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상 : 김상근

수상소감 : 오두희 (여성평화활동가)

축사 : 노순택 (사건작가)

축가 : 샘재(한신대 아카펠라 남성4중창단), “임마누엘(주님과 함께)”

3부 평화의 식탁 : 7시-7시30분

4부 평화공연 “다시, 평화를” : 7시30분-8시30분 (사회: 여혜숙, 이재영)

평화의 노래 : 인천 늘봄교실친구들, “평화를 위해” “희망은 있다”

평화대상 : 이종희, 축원 “평화를 만드는 불씨”

퍼스판타지 : 함정균

평화의 노래 : 김미란, “평화만들기” “거위의 꿈”

주변전사 : “여성의 힘, 평화의 길”

- 참석 : 평화여성회 전임대표 및 이사장 (이김현숙, 김숙임 등), 평화여성회 회원 및 활동가, 각 여성, 평화단체 활동가 등 150여명
- 언론보도 : 연합뉴스, 경향신문, 와이낸셜뉴스, 여성신문 등

(2) 10주년 기념자료집 발간

(3) 브로셔 제작

(4) 10년 활동 기념 영상물 제작

(5) 좌담회 : 평화여성회 10년 활동 돌아보기

## 2) 사업평가

(1) 10주년 문화행사 관련

### ① 성과

여타 행사에 비하여 회원들 간의 자매애가 돋보였으며 회원자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에게 감동을 준 행사였다.

### ② 과제



○ 장소관련

무대와 청중석의 거리가 멀어 음향전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행사 프로그램을 집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소와 공연이 잘 매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프로그램 관련

몇몇 공연은 예정보다 시간이 길었다. 뒤로 배치된 프로그램의 경우 청중이 별로 남지 않게 되어 공연자에게 실례가 될 수 있기에 공연자들에게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 및 내용, 시간배치 등을 공유하여 프로그램 진행과정이 보다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진행준비과정

문화행사팀장, 구성대본 작성 역할 등 준비와 진행과정에 있어서 책임범위가 분명해야 하고, 행사준비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를 갖추어서 준비해야하고, 현장에서 주변장식 관련해서 최종 결정 책임자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 팀별 예산이 사전에 짜여져야 하며 행사 내용에 대한 변경 및 보완관련해서는 사무국과 문화행사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 자원활동가 배치 관련

문화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자원활동가 역할분담 배치가 보다 섬세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책임관리가 있어야 한다.

○ 기타

전임 대표에게 감사패 수여와 관련하여 '상'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 수여할 필요가 있다.

(2) 평화여성회 브로셔와 10주년 기념자료집 발간 관련

① 성과

○ 브로셔 관련

평화여성회 브로셔 제작은 오랜기간 미완성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평화의 의미를 담아내어 평화여성회의 소개 및 내용 등을 담아낼 수 있었다.

○ 10주년 기념자료집 관련

평화여성회 10년의 활동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간의 활동가, 회원들의 명단을 정리하여 지금의 평화여성회로 일군 우리모두의 성과로 담아낼 수 있었다.

② 과제

○ 진행준비 관련

준비일정이 충분히 확보되어 체계적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10주년 자료집의 경우 원고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애초 기획했던 내용들을 담지 못한 한계가 있기에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일정을 배치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 브로셔 관련

평화여성회를 소개하는 내용의 글자가 보다 커야하며 평화여성회에 대한 소개내용이 평화여성회가 정의했던 개념이나 내용을 잘 배치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 기획논의시 사전에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디자인 관련

디자인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점검받고 진행하기에는 서로의 기호와 만족도가 다르기에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전체적인 디자인 상징과 컨셉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담당 실무 책임자가 진행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영상제작과 관련하여

① 성과

○ 두 번의 점검회의를 통해 영상물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었으며 평화여성회 영상물의 경우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개개인의 모습을 담아내어 평화여성회는 회원들이 만들어 가는 단체임을 충분히 살렸다.

○ 고 이우정선생에 대한 영상물은 고 이우정 선생님의 지인 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고 이우정 선생에 대한 활동과 정신을 잘 담아내었다.

○ 평화여성회 영상물의 경우 성미산 학교의 학생들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참신하게 담아내었다.

○ 평화여성회 활동회원이 영상물 제작에 주체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진행함으로써 평화여성회 및 고 이우정 선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구성이 잘 되었다.

② 과제

○ 평화여성회 소개 영상물의 경우 다양한 활동내용이 담기다 보니 포커스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평화여성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한다.

## 2-7 협력사업

### 1. 이우정평화상위원회

#### 1) 참여현황

(1) 집행위원장 : 윤수경 공동대표

(2) 실       무 : 유복님

#### 2) 회의

##### (1) 운영위원회

○ 구성 : 김상근(위원장, 목사)이문우(전 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유원규 (한빛교회 담임목사) 강성혜(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소장) 윤수경(평화여성회 공동대표) 김성재(OBS 경인방송 이사장) 이근기(이우정 선생님 유가족) 정헌벽(평화여성회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재정(성공회 신부, 전 통일부장관) 채수일 (한신대학교 교수) 김숙임(평화박물관 상임이사) 이병희(기장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한명숙(여성운동가, 전 국무총리)

○ 회의 : 2/1, 5/19, 6/18

##### (2) 집행위원회

○ 구성 : 윤수경(위원장), 김상근, 강성혜, 김숙임

○ 회의 : 3/13, 4/4

##### (3) 심사위원회

○ 구성 : 남윤인순(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상근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운옥(전 평화여성회 이사장), 심영희(한양대학교 교수), 조영희(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채수일(한신대학교 교수), 한홍구(평화박물관 상임이사, 성공회대학교 교수)

○ 회의 : 5/9, 5/19

#### 3) 내용

##### (1) 제4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 일시:2008년5월30일(금) 오후6시30분~7시
- 장소:성균관대600주년기념관6층 Faculty Club
- 프로그램 :
- 사회 : 윤수경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고 이우정 선생 회고영상 상영

개회선언

인 사 말 : 김상근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위원장)

선정경과 : 남윤인순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심사위원장, 한국어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 상 : 김상근

수상소감 : 오두희 (여성평화활동가)

축 사 : 노순택 (사진작가)

축 가 : 함재(한신대 아카펠라 남성4중창단), “임마누엘(주님과 함께)”

#### 4) 평가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우정 평화상 제4회 수상자로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당소’ 오두희 소장을 선정하였다. 이는 이 땅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군 주둔지역에서 고통 받는 주민과 삶으로서 연대하는 실천적 평화활동가로, 지역의 작은 공동체-풀뿌리조직과 함께 하는 풀뿌리 활동가로 평화문화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결 등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8 연대사업

### 1. 한국여성단체연합

#### 1) 참여현황

- (1) 이사회/임원회/정책기획위원회/총회준비위원회 - 조영희 상임대표
- (2) 사무국장 연석회의 - 김현희 사무국장
- (3) 통일평화위원회 - 조영희 상임대표(위원장), 김현희 사무국장(위원)
- (4) 총회준비위원회 - 조영희 상임대표

#### 2) 활동내용

- ① 평화여성회는 여성연합 회원단체로서 통일평화위원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사회, 임원회, 정책위원회, 여성미래센터 설립준비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 여성연합통일평화위원회는 2번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내년 사업은 상반기·하반기 워크숍 각 1회 정도씩 실시하고, 중장기 통평위 방향을 수립하고 통일평화 운동을 담당할 활동가의 역량을 묶어내는 시기로 방향을 잡기로 하였다.
- ② 군가산점 부활저지 활동
  - 의견서 및 성명서 발표
  - 활동가 및 전문가 워크숍 : 7/25(금) 오전10시, 여성연합회의실  
주제 : 의무복무제대자 지원 정책방안,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 등
  - 군가산점 부활저지를 위한 집담회 : 8/18(월) 오후6시, 여성연합회의실
- ③ 여성발전기본법 개정관련 활동 : 평화여성회는 내부회의를 거쳐 의견 전달함

#### 3) 활동일지

- 3/8(토) 14:00 세계여성の日 100주년 기념 3.8여성축제 (유관순기념관 및 서울시청 광장)
- 3/13(목) 11:00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20대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18층)
- 3/24(월) 14:00 여성연합 1차 통일평화위원회 (여성연합 회의실)
- 4/16(수) 14:00 여성연합 정책기획위 (성공회대학교)
- 4/16(수) 12:00 여성연합 임원회의 (성공회대학교)
- 4/17(목)~4/18(금) 전국사무국장 연석회의(여주 신록사)

- 5/ 1(목)-5/ 3(토) 여성연합 대표자 수련회 (금강산)
- 7/ 3(목) 11:00 전국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평화의 집 교육장)
- 7/15(화) 13:00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토론회 <변화된 정치, 사회 정세에 대한 건  
단 및 여성운동의 대응방안 마련 워크숍> (서울여성플라자 2층 연  
지오센터 열린마당)
- 8/18(월) 18:00 군가산점 달문구성을 위한 토론회 (여연 회의실)
- 10/17(금) 15:30 여성연합 2차 통일평화위원회 (선교교육원)
- 10/27(월) 15:00 여성사회복무제 관련 병무청과의 만남 (여성단체연합)
- 12/12(금) 11:00 전국사무국장 연석회의 (한여노회 교육장)

## 2.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 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1) 참여현황

- ① 공동대표 - 조영희 상임대표
- ② 집행위원회 -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2) 활동내용 : 한반도평화센터 사업보고 참조

### 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1) 참여현황

- ① 공동대표 - 조영희 상임대표
- ② 집행위원장 -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③ 집행위원 - 김현희 사무국장

#### (2) 활동내용 : 한반도평화센터 사업보고 참조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분과

#### (1) 참여현황

- ① 위원 :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 1) 참여현황 : 김엘리 공동대표

### 2) 활동내용 : 수요일이 1회 주권, 연대집회 참석 등

- 2/21(목) 16:00 '정대협' 2008년 정기총회 (정대협 교육관)

- 3/ 5(수) 12: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불! 세제 여성의 날 기념 세제 연대집회(일본대사관 앞)
- 4/16(수) 12:00 평화여성회 주관 809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일본대사관 앞)

③ 활동일지 :

- 10/21(화) 오후4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국제연대 간담회 1차(연대회의 회의실)
- 11/25(화) 오전10시, 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 네트워크 2차회의(국가인권위)

#### 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 참여현황

- (1) 여성위원회 - 조영희 상임대표

2) 활동일지

- 3/14(금) 14:00 민화협 여성위 1차회의 (민화협 회의실)
- 4/11(금) 14:00 민화협 여성위원회 2차회의 (민화협 회의실)

#### 5. 시민단체연대회의

1) 시민평화포럼

(1) 참여현황

- ① 참여 : 김현희, 윤수경, 조영희, 최안전경, 홍승희

② 활동일지

- 8/19(월) 18:00 시민평화포럼 워크숍
- 10/ 1(수) 16:00 창립총회 (여성인권지원센터 종이학)
- 11/ 6(목) 10:00 2008년 미 대선 결과와 한미동맹의 미래 및 한반도 정세 변화(인권위 배움터) :

2) 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 네트워크(가칭)

(1) 참여현황

- ① 참여 : 김현희 사무국장

② 활동내용 :

국제연대실무자 네트워크 필요성과 교류연대를 통해 환경, 인권, 반전평화, 신자유주의 경제대응, 빈곤문제 등 분야별 운동과 관련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국제연대 전문성과 장기적인 전망을 모색하고자 2008년 10월경에 결성이 되었다. 2008년에는 2차례 모임을 통해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논

의하였고 국제연대 담당자들간의 국제연대활동의 내용을 공유하고, 운동영역별 내용심화를 위해 공부를 병행하며 주요한 이슈에 대하여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③ 활동일지

- 10/21(화) 16:00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국제연대 1차 간담회 (연대회의 회의실)
- 11/25(화) 10:00 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 네트워크(가칭) 2차 회의

## 6. 통일교육협의회

### 1) 참여현황

이사회, 평가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총회준비위원회 - 조영희 상임대표  
여성분과위원회 - 김선량 부장

### 2) 활동내용

- (1) 총회 : 1/16(수)
- (2) 이사회 : 1/16(수), 2/18(월), 7/9(수), 12/22(월)
- (3) 평가위원회 : 3/25(화), 5/22(목), 5/25(일), 7/17(목), 10/21(화), 10/23(목)
- (4) 정책개발분과위원회 : 4/7(월), 5/2(금)
- (5) 총회준비위원회 : 11/13(목), 11/24(월), 12/15(월)
- (6) 여성분과위원회 :
  - 회의 (장소 : 통일협 회의실)
  - 1차 : 2/19(화) 11:00 / 3차 : 5/6(화) 11:00, 4차 : 8/20(수) 11:00 / 5차 : 12/9(화) 11:00
  - 여성분과 워크숍 : 9/4(목), 판문점 기행 (김선량, 김선휘, 김영진, 박인혜, 여혜숙, 정효민, 조영희)

## 7.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SAFE)

1) 참여자 : 김엘리 공동대표 (contact person), 유복님 국제협력국장

### 2) 활동내용

- (1) 회의참여 : 3/4, 12/8
- (2) 논의 : 워싱턴 ANTI-BASES CONFERENCE (2009. 2. 27-3. 2) 회의 및 2009년 광회의 관련, SAFE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건 등



## 8. 한국대인지피대책회의

### 1) 참여현황

공동대표 - 김엘리 공동대표

### 2) 활동내용 : 한국대인지피대책회의 공동대표로 참여

## 9. 광우병위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1) 참여자 : 조영희 상임대표, 김현희 사무국장

### 2) 활동일지

- 5/6 광우병 위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건강대책회의'(가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5/22 생협,여성단체 주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뚝난 엄마, 여성들의 함성"
- 6/4 폭력진압 어청수 경찰청장 규탄 기자회견
- 6/6~8 여성단체, 폭력진압규탄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촉구를 위한 55시간 릴레이 1인시위
- 6/10 6.10 여성촛불행진
- 6/21 여성연합, 거리수다카페 "2MB시대 여성으로 살아가기"
- 6/24 시민단체 한나라당사 앞 규탄 기자회견
- 6/25 여성계 인사 '고시 강행 중단 촉구' 선언 발표
- 6/26 시민단체비상시국회의 및 행진, 시민사회인사 고시강행 규탄 기자회견  
여성단체, 냉동참고 앞 미 쇠고기 유통저지를 위한 인간띠잇기
- 7/5 광우병 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 관련 여성 바들기 피켓 평화행진

## 10. 대전평화여성회 관련 활동

### (1) 활동일지 :

- 2/1 대전평화여성회 2차 총회,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12/4 대전평화여성회 후원의 밤,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11. 국제연대 활동

### 1) 아시아-태평양 MD 반대와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 (1) 참여자 : 김현희 사무국장

#### (2) 활동내용

2008년 4월 초, 한국에서 국제평화대회 개최를 준비 21세기 들어 격화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시민 참여 공간 마련과 국제 연대의 모력과 실천, 실천 방법은 강연회, 대중 토론회, 국제대회, 국제 공동 행동 등을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으며 평화여성회는 현재 연대에는 가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8년에는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참여를 통해 내용을 공유해 가기로 하였다.

## 2-9 기타

### 1. 제13회 늦봄통일 수상

○ 일시 : 6월11일(수) 오후5시      ○ 장소 :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 4층)

○ 수여기관 : 사)통일맞이 늦봄문학박목사사업

○ 시상내용 :

지난 10여 년간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귀 단체가 헌신적으로 벌여온 남북간의 화해협력·평화문화의 확산노력이 남과 북,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민족통일의 길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귀 단체를 《제13회 늦봄통일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이 상을 수여합니다.

### 2. 사업별 활동일지

#### 1) 조직사업

○ 이사회

2008년

|         |       |                 |                                               |
|---------|-------|-----------------|-----------------------------------------------|
| 3/26(수) | 18:00 | 임시 이사회          | 안건 : 10주년 기념사업, 윤덕희 이사 사업 등                   |
| 9/26(금) | 19:00 | 정기 이사회<br>(21차) | 안건 : 평화여성회 상반기 사업보고 및 평가, 하반기 사업점검, 이사보강 논의 등 |

2009년

|        |       |        |                                                         |
|--------|-------|--------|---------------------------------------------------------|
| 1/9(금) | 18:30 | 1차 이사회 | 안건 : 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계계정항목, 정관 개정안 등 |
|--------|-------|--------|---------------------------------------------------------|

○ 운영위원회

|          |       |            |
|----------|-------|------------|
| 2/12(화)  | 10:00 | 1차 운영위원회   |
| 3/10(월)  | 15:30 | 2차 운영위원회   |
| 4/14(월)  | 15:30 | 3차 운영위원회   |
| 5/19(월)  | 10:00 | 4차 운영위원회   |
| 6/09(월)  | 14:30 | 5차 운영위원회   |
| 7/06(일)  | 10:00 | 6차 운영위원회   |
| 8/20(수)  | 17:00 | 임시 운영위원회   |
| 9/08(월)  | 14:30 | 7차 운영위원회   |
| 9/29(일)  | 10:00 | 사무국 운영위 MT |
| 10/20(월) | 14:30 | 8차 운영위원회   |

○ 총회준비위원회

|             |       |            |
|-------------|-------|------------|
| 12/1(월)     | 14:00 | 1차 총회준비위원회 |
| 12/15(월)    | 14:30 | 2차 총회준비위원회 |
| 12/26(금)    | 14:00 | 3차 총회준비위원회 |
| 2009.1/5(월) | 14:00 | 4차 총회준비위원회 |

○ 정관소위원회

|          |       |           |
|----------|-------|-----------|
| 7/24(목)  | 16:00 | 1차 정관소위원회 |
| 10/22(수) | 18:30 | 2차 정관소위원회 |
| 11/10(일) | 12:00 | 3차 정관소위원회 |
| 11/27(목) | 15:00 | 4차 정관소위원회 |
| 12/16(화) | 15:00 | 5차 정관소위원회 |

○ 지도위원모임

|          |       |                |
|----------|-------|----------------|
| 3/24(월), | 18:00 | 10주년 기념사업 논의 등 |
| 12/22(월) | 14:00 | 사업공유, 전망논의 등   |

- 2) 토론회 및 교육포럼, 외부-연대행사 진행 및 참석
- 3/ 7(금) 14:00 Conference on Promoting Human Security :The Experiences of Canada and Korea (캐나다 대사관), 정경란 라운드테이블 토론
- 3/ 8(토) 14:00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 3.8여성축제 (유관순기념관 및 서울시청 광장)
- 4/ 4(금) 16:00 올리히 벽 : 세계화의 뒷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 4/19(토)~4/21(월) 동아시아시민사회 워크숍 (대화문화 아카데미)
- 6/26(목) 10:00 북한동포돕기관련 단식중인 범문스님 지지방문(평화재단)
- 7/15(화) 12:00 변화된 정치·사회 경제에 대한 진단 및 여성운동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워크숍(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센터 열린마당)
- 7/31(목) 07:00 북한여성의 삶을 조망하는 여성단체 대표자 조찬모임(평화재단)
- 8/18(월) 18:00 군가산점제 관련 담론구성위한 토론회(여성단체연합)
- 8/19(화) 18:00 시민평화포럼 워크숍 (참여연대)
- 8/20(수) 18:30 이길현숙 선생님과 함께하는 평화이야기 (평화여성회)
- 9/18(목)~9/20(토) 2008 전국시민환경운동가 대회 <2008년 시민운동은 □(이)다> (숲채원 강원도 횡성)
- 9/18(목)~9/19(금) 백령도 여성평화기행 (백령도)
- 9/30(화) 14:00 10.4선언 1주년 기념 토론회 “평화와 공명의 한반도를 위하여”(프레스센터 18층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10/1(목) 14:00 학교폭력예방재단 등 주최, 2008 한독 국제세미나, 아동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개입 대책 세미나 참여(교총회관)
- 10/30(목)~11/1(금) 평화활동가대회 (이대 교사리수련원)
- 10/12(일)~10/15(수) 아셈민간포럼 (북경)
- 10/22(수)~10/23(목) 2008 국제학술회의 ‘한반도평화와 통일미래’ 주최:민화협 등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1/6(목) 09:00 시민사회단체 ‘회계관리자 교육’ (만해NGO 교육센터)
- 11/25(수)~11/27(금)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창원 컨벤션센터)
- 12/2(화)~12/5(금) 2008년 시민운동가를 위한 미디어교육 3차과정(KBS수련센터 연수원)
- 12/18(목) 10:30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1차 시국선언(프레스센터 19층)

# 2009년도 사업계획안

- ☐ I. 2009년 사업방향
- ☐ II. 2009년 사업계획안
- ☐ III. 월별사업계획



# 2009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계획안

## I. 사업방향

###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자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창립 이후 오늘까지 여성주의 평화주의 관점으로 통일, 군축, 반전, 탈군사화, 평화적 갈등해결,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확산, 여성주의 평화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여왔다.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의 열정으로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변화한 정치지형과 경제위기의 심화로 우리의 삶과 한반도의 평화가 도전을 받고 있다. 다양성 존중에 기반한 평화적 소통과 합의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은 부정당하고, 상호 이해와 화해·협력에 전제로 발전해 온 남북관계는 대결적 정책으로 위축되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09년 평화여성회는 이럴 때일수록 평화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보다 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면서, 안으로는 여성평화활동가의 지면을 확대하고 역량을 길러 여성평화운동의 세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쓰면서 밖으로는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면서, 평화주의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자 한다.

#### 1. 여성평화운동의 세력 강화와 지면 확대

여성평화운동은 여성의 다양한 삶과 경험의 나눔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여성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대화의 과정을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치유의 과정을 통해 화합을 이끌어내는 여성주의 평화운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나아가 인종, 국가,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는 연대활동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이루고 강화하여 평화주의 공동행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1) 일상의 삶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위협하는 다층위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회원들의 평화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

2) 여성평화 활동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기별 평화·통일 워크숍을 전개한다.

3) 다양한 공개강좌를 개설하여 여성들의 평화운동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 2. 평화적 문제해결과 관계형성을 통한 평화문화의 확산

평화여성회는 2000년 이후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교육 훈련을 진행해 왔다. 개인 및 집단 간의 평화적 문제해결, 공동체 내의 평화적 의사소통과 관계형성, 회복적 관점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조직내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등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조직으로서 평화여성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1) 통합적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2) 그간의 활동성과를 정리하여 자료를 발간하고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 3. 평화여성회 중장기 조직 발전 전망 모색

평화여성회는 창립 이후 지난 10년 활동으로 일정한 성과를 이루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10년을 출발한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의 대중적 결합과 정책역량강화 등 안팎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또한 여성평화운동의 중장기 전망과 구체적 과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2009년 평화여성회는 조직과 운동의 발전을 위해 긴 호흡의 논의를 시작하고 여성평화운동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큰 걸음을 떼려고 한다.

1) 여성평화운동의 정책논의를 활성화하여 중장기 의제를 발굴하고, 조직운명을 활동가체제로 전가하며 활동가 개개인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2) 활동회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휴면회원은 다양한 경로로 활발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평화운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입회원을 발굴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여성미래센터 입주를 계기로 사무공간을 안정시키고, 여성평화운동에 기여이 참여하는 모든 이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한다.

4) 조직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정착시켜 공감을 높여나가고, 특히 필적 소통을 강화하여 활동가 상호간의 지지와 지원을 높여 여성주의, 평화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한다.



#### 4. 정부의 반여성·반평화 정책 대응

새로이 등장한 정부는 지난 시기 여성운동, 평화운동이 이루어낸 성과를 되돌리면서, 성평등이념을 위협하고 평화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 전반에 제기되는 정부의 반민주·반여성·반평화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진영과의 공동 대응을 전개한다.

- 1) 여성운동과 공동으로 여성평화운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2) 평화운동·시민사회운동과 공동으로 반평화적 위협과 도전에 저항한다.

#### 5. 역행하는 남북관계 정책 비판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 모색

정부는 평화주의에 입각한 남북의 상호이해와 화해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적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사업 위축 등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 정책을 촉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하고 추진한다.

- 1) 정부의 통일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2) 남북교류협력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 6.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 여성6자회담 개최

평화여성회는 2008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동북아 여성평화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 받아 올해는 미국 워싱턴에서 동북아 여성평화회의를 개최함으로써 6자 회담 참가국 여성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제미동포 여성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미국 내에 다양한 지지망 구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도록 한다.

- 1) 2009 동북아 여성평화회의를 통하여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한다.
- 2)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담론을 개발·확산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II. 사업계획안

### 2-1 한반도평화센터

####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홍승희
- (2) 운영위원 : 홍승희, 김현희, 윤수경, 조영희, 최지영, 최안진경
- (3) 자문위원 : 구갑우, 김귀옥, 김지연, 박건영, 박순성, 백준기, 신효숙, 윤덕희, 이금순, 이명자, 이승환, 이우영, 정미례, 최지영, 이정남
- (4) 세미나모임 : 최안진경, 김정아, 김현희, 유복남, 윤수경, 홍승희

#### 1. 사업방향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하여 대응해 나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여성들의 논의를 활성화 시켜 나간다.

#### 2. 사업목표

- 1)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한다.
- 2)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3) 남북 여성 교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대북협력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
- 4) 6자회담 참가국 여성들의 연대활동을 통해 국제연대여성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분쟁지역의 여성의 역할을 모색한다.

#### 3. 사업계획

- 1) 남북여성과 화해 및 협력 활동
  - (1)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 등 남북관계 개선요구활동
  - (2) 6.15 여성분부 활동 지속 및 정책논의 활성화
  - (3) 대북협력사업 모색

2) 정책대응 활동

3) 여성평화통일교육

- o 일정 : 분기별 1회      o 장소 : 평화여성회 교육장

4) 조직강화 활동

- (1) 운영위원회 : 매월 1회  
(2) 자문위원회 : 연 2회  
(3) 세미나 : 매월 2회

## 2-2 갈등해결센터

###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박수선
- (2) 운영위원회 : 김선훈, 김영진, 김현희, 김학목, 박수선, 박인혜, 박홍나미, 여혜숙, 이경순, 이덕경, 이재영, 조영희
- (3) 청소년교육팀 : 여혜숙(팀장), 김영진(서기), 김지선, 김지현, 남미영, 문경아, 박경옥, 박무열, 박상희, 박인혜, 박홍나미, 함남희, 안향숙, 이덕경, 이미숙, 이현숙
- (4) 사회갈등분석팀 : 김선훈(팀장), 이현주(서기), 김지훈, 명세진, 박수선, 박재근, 이경순, 이항진, 정진화
- (5)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조정팀 : 박홍나미(팀장), 김선훈,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이재영, 이항진, 조영희, 남미영, 박상희, 박재신, 안향숙, 이경순, 이덕경, 이미숙, 정태효, 조혜은, 김정아
- (6) 연구원 : 김학목, 이재영, 서정기

### ○ 회의

- (1) 운영위원회 : 격월 1회
- (2) 청소년교육팀 회의 : 매월 1회
- (3) 사회갈등분석팀 회의 : 매월 1회
- (4)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조정팀 : 월 1회
- (5) 연구원 : 수시

### 1. 사업방향

- 1) 통합적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2) 그간의 활동의 성과와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한다.

### 2. 사업목표

- 1)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2)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3)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 4) 그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힘쓴다.
- 5) 회원들의 유대 강화에 힘쓴다.
- 6)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7) 평화적 갈등해결 영역에서 일하는 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형성에 노력한다.

#### \*조직운영의 기본 방향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평화적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팀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는 관심영역에 따라 청소년교육, 사회갈등분석 등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기되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과제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의 각 팀장은 팀의 성원을 관리하고 운영과 사업을 총괄한다.
- 갈등해결센터는 정기적인(각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전반을 논의, 결정한다.
-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각 팀장, 본부 사무책임자 등의 당연직 운영위원과 각 팀별 1인을 포함하는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갈등해결센터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재교육 등을 수행한다.
-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1년 3회 이상 월례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사업계획

#### ○ 대상별 주요 교육 사업

##### 1) 교사, 학부모 대상 갈등해결 교육

- 다양한 물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을 기획, 진행한다.
- 또래조정, 대화모임,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성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2)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 교육의 특성화, 전문화를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2) 학교무적용아 대상 교육

(3) 청소년캠프

(4) 공부방 교육

(5)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6) 또래조정반 운영

3)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 지역갈등, 사회갈등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활동가 및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갈등해결교육, 또래조정, 대화모임을 지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기획, 운영

4) 공무원 대상 갈등해결, 조정훈련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경찰종합학교 등

5) 평화를 만드는 의사소통

(1) 일시 : 2월, 4월, 6월, 10월 12시간(3시간\*4회) 연 4회 진행

(2) 장소 : 평화여성회 교육장 등

(3) 내용 : 평화적 의사소통 관점, 기술

6) 평화를 만드는 조정자 훈련

(1) 일시: 3월, 5월, 9월, 11월 18시간(1박2일 숙박 또는 토요일 6시간 3회) 연 4회 진행

(2)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등

(3) 내용: 평화적 갈등해결 기초, 조정이론 및 기술 실습

7) 갈등해결과 평화 고급 과정

△ 제7기 강사 트레이닝

- (1) 일시: 4월 18일(토)~19일(일) 숙박워크숍, 4월 27일~6월 8일(매주 월 수 오후 6시 30분~9시 30분), 6월 20, 27일(토) 2시~7시(총 60시간)
- (2) 강좌 내용 및 방식: 강좌, 참관, 실습
- (3) 내용: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

#### △ 조정자(mediator) 훈련 고급 과정/MIT(mediator in training)

- (1) 일시: 4월 25일, 6월 13일, 10월 17일, 12월 19일(토) 2시~7시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
- (3) 내용: 개인간 갈등, 공공갈등 조정 실습

#### △ 진행자(Facilitator) 훈련과정

- (1) 일시: 연중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 (3) 내용: 회의진행, 의사결정, 문제해결워크숍 진행 기술과 방법 훈련
- \* 위탁교육 형태로 파견 교육 진행

#### △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조정자 훈련 과정

- (1) 일시: 2월 14~15일(1박2일 워크숍), 28일(토) 2시~7시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 (3) 대상: 조정전문가과정 수료자 대상
- (4) 내용: 회복적 사법이란? '회합' 이해,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무, 실습

#### 8)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선독사와 공동주최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다른 교육과는 별도로 팀을 구성하여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 진행한다.
- 선독사 측과 프로그램 진행과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적극화한다.
- 팀원: 김선휘, 이향진, 여혜숙

#### ○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사업 및 내용들을 자료화하여 소책자를 발간한다. 내용적인 홍보, 선전의 역할과 함께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예) -기초 입문서 단행본 기획, 집필

-회복적 사법 활동 보고서

-사회갈등사례 연구보고서 및 사례집

-청소년교육 책서

2) 영상자료 개발: 효과적 교육을 위해 영상을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3) 갈등해결과 평화 관련 주제 토론회, 세미나 개최

4) 논평(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갈등해결과 평화' 입장에서 논평 등 글을 써서 꾸준히 발표한다.)

#### ○ 프로그램 연구, 개발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 초/중/고 대상별 세분화된 교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교안집을 정식출간

- 교구개발 : 워크북, 동영상, 교재도구

- 프로그램 개발

- 평가적도 연구

- 내부교재 : 교육방법론, 시나리오, 워크쉬트 등

2) 사회갈등사례 연구:

- 갈등사례 발굴, 심층 분석(지방자치단체 갈등조정 기구 실태 조사 등 과제로 진행)

- 갈등해결센터 교육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사회갈등사례 시나리오 작업

- 웹진, 홈페이지 등에 사회갈등사례 분석내용 소개 및 갈등 관련 서적 서평 실기

3) 통일교육 및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과제에 갈등해결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조직 강화 및 확대

1) 그간 교육참가자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2) 회원 재교육/워크숍

워크숍의 질적 강화, 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진행자들의 재교육과 훈련 확대 지원



3) 전문강사를 형성, 강화

청소년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주부 대상, 공무원 대상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들을 형성하고, 각 대상별 교육 내용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

4)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강화

국내외 프로그램 참여

교안연구모임, 연구수업대회 등

○ 갈등해결을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

- 3자역할로서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 3자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과 모델을 연구, 시범적으로 적용한다.(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조정, 사회갈등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접근 노력)

1)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① 학교, 법원, 청소년수련관 등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취지 및 활동에 대한 소개, 홍보

② 조정팀 구성원 조정활동

2) 사회갈등에서 3자 역할 모색

3) 조직내 갈등해결을 위한 진행자 역할 모색

○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n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등 갈등예방, 해결 관련 국제단체와의 연대

## 2-3 일상평화센터

###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이권명희
- (2) 구성원 : 김선량, 김현희, 나비, 박인혜, 이낙호, 윤수경, 장정화
- (3) 웹진팀 : 홍승희(팀장), 이승현, 오영주, 윤수경

### ○ 회의

#### ○ 회의

- (1) 웹진팀 : 매월 1회
- (2) 소모임(구성중) : 매월 1회

예> 여성의 마음읽기, 여성의 지혜 여성의 몸 등

### 1. 사업방향

- 1) 일상평화센터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적 지원을 모아간다.
- 2) 일상의 삶에서 평화를 읽어내고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찾아나간다.

### 2. 사업목표

- 1) 우리 생활 속의 비평화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한다.
- 2) 일상의 삶에서 평화를 만드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여성평화운동의 내용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 3) 여성평화운동소식을 회원들과 온라인소통을 통하여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대외적으로 알려낸다.

### 3. 사업계획

#### 1) 웹진발행

- (1) 여성평화뉴스레터 : 월 1회
- (2) 평화문화 확산 온라인 활동
- (3)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개편 기획

#### 2) 기타

- (1) 사업명 : 이낙호와 함께하는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 일시 : 2009년 상반기 중

○ 장소 : 평화여성회 교육장 등

○ 프로그램 : 강좌, 토크 실습, 단식 등

(2) 그 외 다양한 소모임 및 강화를 개발하여 개설

예> 평화글쓰기, 여성주의 마음 읽기 등

## 2-4 위원회

### 1. 회원확대위원회

○ 구성 및 운영

(1) 위원장 : 윤수경

(2) 위 원 : 구성중

1. 사업목표

1) CMS회원확대를 통해 조직적 기반을 안정화하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한다.

2) 재정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2. 사업내용

1) 회원명단 보완 및 정리

○ 기간 : 연중 (집중기간 : 1월~3월)

2) 회원확대

○ 기간 : 연중

### 2. 국제협력위원회

○ 구성 및 운영

(1) 위원장 : 논의중

(2) 위원 : 김정수, 이권명화 등

1. 사업목표

1) 2009년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등 국제연대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2) 국제연대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전망을 논의한다.

## 2. 사업계획

### 1) 2009년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한반도평화센터와의 협력사업)

#### (1)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

○ 일시 : 2009년 9월 경      ○ 장소 : 미국 워싱턴

### 2) 연대활동

#### (1) '아시아-태평양 MD 반대와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가칭)

○ 일시 : 2009년 4월 16일(목)-18일(토)      ○ 장소 : 서울, 판문점 등

#### (2)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세계행진

○ 일시 : 2009년 10월 2일(세계비폭력의날)~2010년 1월 2일

○ 장소 : 서울, 판문점 등

① 범위: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칠레까지 160,000Km, 6대륙 90개국 이상 포함

② 내용: 루트를 따라 축제, 회의, 연주, 선언, 포럼 등 각 국가별 창조적으로 행사  
기획

③ 한국에서 세계행진 통과일정: 2009년 10월 13일 ~16일중 (2박3일간)

## 3. 정책위원회

(1) 위원장 : (논의중)

(2) 위원 : 논의중

## 2-5.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 구성

\*명예이사장 : 김윤옥

(1) 원장 : 논의중

(2) 이사회 : 심영희(이사장), 권인숙, 김현미, 박현선, 안경애, 안진, 양현아, 이나영, 황영주

(3) 연구위원 : 장인화, 윤덕희, 오미영, 이선미, 이화진, 조영주, 최윤정, 한정숙, 허성우

(4) 운영위원회 : 장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 1. 사업방향

- 1) 여성들의 평화운동의 경험을 이론화하고,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식생산을 한다.
- 2) 여성주의 평화이론을 생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 2. 사업목표

- 1) 지식생산을 위한 연구 활동
- 2)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아젠다 개발
- 3)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3. 사업계획

- 1) 활력제달 “여성, 평화를 다시룬다” 책 발행
- 2) 토론회 개최
- 3) 연구원 카레를 통한 정보 공유
- 4) 기타 활동



[illegible]



# 부 록

|       |                                  |
|-------|----------------------------------|
| ..... | ■ 2008년 결산보고                     |
| ..... | ■ 2009년 예산계획안                    |
| ..... | ■ 정관개정안                          |
| ..... | ■ 임원 및 기구장 인선안                   |
| ..... | ■ 2009년 이사,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및 사무처 |
| ..... | ■ 평화여성회 조직도                      |
| ..... | ■ 여성평화뉴스레터 목록                    |
| ..... | ■ 성명서 모음                         |
| ..... | ■ 언론보도 리스트                       |
| ..... | ■ 회원가입서                          |



【 2008년 결산보고 】

| 2008년 결산보고                            |          |             |             |       |          |             |             |
|---------------------------------------|----------|-------------|-------------|-------|----------|-------------|-------------|
| 1. 회계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             |             |       |          |             |             |
| 2. 총괄 결산보고                            |          |             |             |       |          |             |             |
| 수 입 부                                 |          |             |             | 지 출 부 |          |             |             |
| 관                                     | 항        | 예산          | 결산          | 관     | 항        | 예산          | 결산          |
| 일반회계                                  | 전년이월     | 5,230,982   | 5,230,982   | 일반회계  | 사업비      | 49,540,000  | 43,264,910  |
|                                       | 회비       | 61,300,000  | 49,812,730  |       | 경상비      | 87,500,982  | 63,928,849  |
|                                       | 후원회비     | 48,000,000  | 38,232,700  |       | 상환금      | 4,500,000   | 3,500,000   |
|                                       | 참가비      | 22,600,000  | 18,339,350  |       | 적립금      | 3,000,000   | 1,800,000   |
|                                       | 자료판매비    | 2,000,000   | 1,401,800   |       | 가치금공의동회합 | -           | 5,529,382   |
|                                       | 보조금      | 5,400,000   | 5,000,000   |       |          |             |             |
|                                       | 잠수입      | 10,000      | 5,579       |       |          |             |             |
|                                       | 소계1      | 144,540,982 | 118,023,141 |       | 소계1      | 144,540,982 | 118,023,141 |
| 특별회계                                  | 한반도센타사업  | 73,897,970  | 73,897,970  | 특별회계  | 한반도센타사업  | 73,897,970  | 73,897,970  |
|                                       | 강동해경센터사업 | 41,706,826  | 41,706,826  |       | 강동해경센터사업 | 41,706,826  | 41,706,826  |
|                                       | 부산기구사업   | 994,550     | 994,550     |       | 부산기구사업   | 994,550     | 994,550     |
|                                       | 소계2      | 116,599,346 | 116,599,346 |       | 소계2      | 116,599,346 | 116,599,346 |
|                                       | 계        | 261,140,328 | 234,622,487 |       | 계        | 261,140,328 | 234,622,487 |

【 2009년 예산계획(안) 】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br>2009년 예산계획(안)         |          |             |        |          |             |
|---------------------------------------|----------|-------------|--------|----------|-------------|
| 1. 회계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             |        |          |             |
| 2. 총괄 예산계획                            |          |             |        |          |             |
| 수입부                                   |          |             | 지출부    |          |             |
| 관                                     | 항        | 금액          | 관      | 항        | 금액          |
| 일반회계                                  | 전년이월     | 3,995,842   | 일반회계   | 사업비      | 59,790,000  |
|                                       | 회비       | 45,900,000  |        | 운영비      | 80,900,000  |
|                                       | 후원금      | 57,880,000  |        | 비지급금상환등  | 17,954,792  |
|                                       | 참가비      | 22,800,000  |        | 예비비      | 1,000,000   |
|                                       | 자료제공비    | 1,800,000   |        |          |             |
|                                       | 보조금      | 2,400,000   |        |          |             |
|                                       | 감수입      | 24,868,950  |        |          |             |
|                                       | 소계1      | 159,644,792 |        | 소계1      | 159,644,792 |
| 특별회계 1                                | 사업기금적립   | 5,000,000   | 특별회계 1 | 사업기금적립   | 5,000,000   |
|                                       | 장소마련기금   | 5,000,000   |        | 장소마련기금   | 5,000,000   |
|                                       | 소계2      | 10,000,000  |        | 소계2      | 10,000,000  |
| 특별회계 2                                | 일상평화센터사업 | 5,000,000   | 특별회계 2 | 일상평화센터사업 | 5,000,000   |
|                                       | 갈등해결센터사업 | 15,000,000  |        | 갈등해결센터사업 | 15,000,000  |
|                                       | 소계3      | 20,000,000  |        | 소계3      | 20,000,000  |
| 계                                     |          | 189,644,792 | 계      |          | 189,644,792 |

## (사)평화롭고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2009년 예산계획(안)

1. 회계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2. 총괄 예산계획

| 수입부   |        |           | 지출부 |          |           |
|-------|--------|-----------|-----|----------|-----------|
| 항     | 목      | 금액        | 관   | 항        | 금액        |
| 전년이월금 |        | 1,503,540 | 사업비 | 이사회      | 300,000   |
| 회비    | 이사회비   | 3,240,000 |     | 운영위원회    | 300,000   |
|       | 연구위원회비 | 860,000   |     | 출판사업     | 1,500,000 |
|       | 후원회비   | 300,000   |     | 토론회      | 2,000,000 |
| 기타수입  | 기타수입   | 100,000   |     | 본회 납부 회비 | 430,000   |
|       |        |           | 운영비 | 임시직 인건비  | 1,200,000 |
|       |        |           |     | 예비비      | 273,540   |
| 계     |        | 6,003,540 | 계   |          | 6,003,540 |

## 【정관개정(안)】

### 1. 안건 상정의 배경

#### 1) 정관개정의 필요성

- (1) 본회 정관과 운영 현실이 걸맞지 않는 부분이 누락되어 이를 정리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 (2) 시대 변화에 걸맞게 단어를 조정하고 발전한 개념을 사용하여 본회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자 함
- (3) 상충조항 조율, 용어의 조정 및 통일, 항과 호의 균형적 사용, 자구수정, 임법미비 사항 보완 등을 통해 정관의 정합성을 제고함

####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경과

- (1) 제정 : 1997년 3월 28일(본회 창립총회)
- (2) 개정 : 총 6회 개정
  - ※ 2007년 총회자료집에는 총7회로 적시되어 있으나, 정관개정안을 마련하며 정관 변경과정을 분석하던 중 2001.1.28. 4차 개정이 기재오류임을 발견함. 이에 통일부에 문의하여 '착오임을 적시'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함
  - ※ 최종개정 : 2004년 1월 9일 8차 총회

### 2. 개정안 상정의 경과

- 1) 2007년 제11차 총회준비 제3차 위원회(1. 5.) :  
정관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등 정관개정 계획안 의결
- 2) 2007년 임시이사회(9. 6.) :  
차기 총회에서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기 운영위원회의 의결 승인
- 3) 2008년 제5차 운영위원회(6. 9.) :  
2)항 이사회 의결에 의거 정관개정안 마련 소위원회 구성  
※ 정관개정안 마련 소위원회
  - (1) 구성(5인) : 윤수경(위원장, 공동대표), 김선혜(사회활동분석팀장), 김현희(사무국장), 여혜숙(청소년교육팀장), 조영희(상임대표)
  - (2) 회의 : 총 5회 (7/24, 10/22, 11/10, 11/27, 12/16)
- 4) 2009년 제13차 총회 제4차 준비위원회(1. 5.) : 개정초안 확정
- 5) 2009년 제1차 정기이사회(1. 9.) : 개정안 확정

### 3. 개정안의 요지

- 1) 법인관계법 개정에 따라 개정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부분
- 2) 부설기구 관련 조항 개정 및 본회의와의 관계규정 부분 신설
- 3) 공동대표 직무 등 조정을 요하는 부분
- 4) 자구수정, 용어조정, 입법미비 보완, 중복조항 삭제 등 윤문을 요하는 부분

### 4. 개정안의 구성

|     |             | 원 안( 총 8장 37조 ) |                                        | 개정안 ( 총 9장 45조 ) |                                                     |
|-----|-------------|-----------------|----------------------------------------|------------------|-----------------------------------------------------|
| 제1장 | 총회          | 제1조~제4조         | 명칭, 위치, 목적, 사업                         | 총회               | 제1조~제4조<br>명칭, 위치, 목적, 사업                           |
| 제2장 | 회원          | 제5조~제10조        | 자격, 가입, 권리, 의무, 탈퇴, 자격상실               | 회원               | 제5조~제10조<br>구분과 자격, 가입, 의무, 권리, 탈퇴, 제명·징계           |
| 제3장 | 임원          | 제11조~제14조       | 종류와 정수, 선출, 임기, 직무                     | 총회               | 제11조~제17조<br>구성, 소집, 개회 및 통지, 의결사항, 의결, 의결제척사유, 의사록 |
| 제4장 | 총회          | 제15조~제20조       | 구성, 소집, 개회 및 통지, 의결사항, 의결, 의결제척사유      | 임원               | 제18조~제22조<br>종류와 정수, 선출, 재한, 직무, 임기                 |
| 제5장 | 이사회         | 제21조~제23조       | 구성, 소집, 기능                             | 이사회              | 제22조~제29조<br>구성, 소집, 개회 및 통지, 의결, 의결제척사유, 의결사항, 감사  |
| 제6장 | 재정(재산 및 회계) | 제24조~제30조       | 구분, 관리, 수입,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회계감사, 임원의 보수 | 부설기구             | 제30조~제32조<br>부설기구, 장, 구성 및 운영                       |
| 제7장 | 사무부서        | 제31조~제32조       | 사무처, 구성 등                              | 재정(재산 및 회계)      | 제33조~제38조<br>구분, 관리, 수입,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회계감사, 임원의 보수 |
| 제8장 | 보칙          | 제33조~제37조       | 정관제정 및 개정, 법인재산, 결산, 운영규정, 기타          | 사무부서             | 제39조~제40조<br>사무처, 구성 등                              |
| 제9장 | -           |                 |                                        | 보칙               | 제41조~제45조<br>정관제정 및 개정, 법인재산, 결산, 기타                |
| 부칙  |             |                 |                                        |                  |                                                     |

## 5. 개정(안)

### ※ 명제

1. 원안 : 2004년 1월 9일, 제8차 총회(6차 개정)

2. 변경 전 : 밑줄 자체, 변경 후 : 굵은 자체

| 조항      | 원안                                                                                                                                                                                                                     | 개정사유                                                                                                                                                                        | 개정안                                                                                                                                                                    |
|---------|------------------------------------------------------------------------------------------------------------------------------------------------------------------------------------------------------------------------|-----------------------------------------------------------------------------------------------------------------------------------------------------------------------------|------------------------------------------------------------------------------------------------------------------------------------------------------------------------|
| 제1장 총칙  |                                                                                                                                                                                                                        |                                                                                                                                                                             |                                                                                                                                                                        |
| 제1조(명칭) | ①이 단체는 사단법인 <u>평화를 만드는 여성회</u>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u>평화를 위해 '평화여성회'</u> 라는 약칭을 사용한다.<br>②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u>WMP</u> 로 한다.                                                                           | 1.'이'를 '본'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수식어인 '다 한다'와 '평화를 위해'를 삭제한다.<br>2.고유명사 통상 명기 방식에 따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로 영문표기 약자 명기 방식에 따라 'WMP'를 'WMF'로 수정한다.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b>평화를 만드는여성회</b> (이하 본회)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br>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b>WMF</b> 로 한다.                                             |
| 제2조(위치)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1.대한평화여성회가 발족하고 협력단체로 활동하는 등 조직의 발전적 전망을 고려하도록 한다.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둘 수 있다.                                                                                                                                         |
| 제3조(목적) |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민족의 자주적'을 삭제한다.<br>2.'나아가'를 삭제한다.                                                                                                                                        |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과 평화적 관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br>1. 통일및평화사업: 평화채널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안활동<br>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br>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br>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 | 1.관문에서 불필요한 ( )를 정리하고, '활동'과 '사업'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말을 정리하고, '여성주의적'의 '적'을 삭제하고, '평화적'을 '평화주의'로 수정하여 정리한다.<br>2.사업 각호에 '통일·평화'를 평화여성회의 정체성에 걸맞게 '평화·통일'로 정리한다.<br>3.연대활동을 호 독립한다.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br>1. 평화통일사업<br>2. 평화교육<br>3. 통일교육<br>4. 평화·통일연구<br>5. 국내외 연대사업<br>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



| 조항                       | 원안                                                                                                                                                                  | 개정사유                                                                                                                                                               | 개정안                                                                                                                                                                                                                                                                 |
|--------------------------|---------------------------------------------------------------------------------------------------------------------------------------------------------------------|--------------------------------------------------------------------------------------------------------------------------------------------------------------------|---------------------------------------------------------------------------------------------------------------------------------------------------------------------------------------------------------------------------------------------------------------------|
|                          | 활동                                                                                                                                                                  |                                                                                                                                                                    |                                                                                                                                                                                                                                                                     |
| 제2장 회원                   |                                                                                                                                                                     |                                                                                                                                                                    |                                                                                                                                                                                                                                                                     |
| 제5조(회원의 자격)→(회원의 구분과 자격)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br>국내외의 개인으로서 소정의 <u>필<br/>요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br/>있다.</u>                                                                                            | 1.회원은 본인이 원하는<br>참여방식에 따라 정회원과<br>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br>나아가 회장정족수 등 운<br>영상의 현실화를 도모한다.<br>이에 따라 조의 명칭을<br>'회원의 구분과 자격'으로<br>변경한다.<br>2.'사람'을 뜻하는 '자'를<br>'사람'으로 자구수정한다.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br>원회원으로 구분한다.<br>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br>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br>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br>과 같다.<br>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br>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br>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br>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br>내는 사람으로 한다.<br>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br>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br>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br>으로 한다. |
| 제7조→제6<br>조(회원의<br>가입)   | 1. 본회의 <u>회원자격이 있는 자</u><br>로서 <u>가입을 희망하는 자</u> 는 가<br>입신청서를 본회에 <u>제출하여야<br/>한다.</u><br>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br>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br>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br>건을 제시할 수 없다. | 1. 회원의 가입절차를 정<br>하는 별도규정의 근거를<br>마련다.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br>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br>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br>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br>한다.<br>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br>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br>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br>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br>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br>정에 따른다.                                                                            |
| 제6조→제7<br>조(회원의<br>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br>는다.<br>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br>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br>적극적으로 참여한다.<br>3. 회비를 납부한다.                                                                     | 1.'회원의 의무' 조항과 '회<br>원의 권리' 조항의 순서를<br>변경하여 의무조항이 앞서<br>도록 수정한다.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br>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br>항을 준수한다.<br>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br>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br>③ 회비를 납부한다.                                                                                                                                                                   |
| 제8조(회원<br>의 권리)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br>는다.<br>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br>참여할 수 있다.<br>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br>행사할 수 있다.<br>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br>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1.'회원의 의무' 조항과 '회<br>원의 권리' 조항의 순서를<br>변경한다.<br>2.회원의 종류에 따라 권<br>리를 구분한다.                                                                                         | ① 정회원<br>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br>할 수 있다.<br>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자<br>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br>3.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br>할 수 있다.<br>② 후원회원                                                                                                                                                  |

| 조항                            | 원안                                                                                                                                         | 개정사유                                                                                                                                      | 개정안                                                                                                                                                                                                                                                    |
|-------------------------------|--------------------------------------------------------------------------------------------------------------------------------------------|-------------------------------------------------------------------------------------------------------------------------------------------|--------------------------------------------------------------------------------------------------------------------------------------------------------------------------------------------------------------------------------------------------------|
|                               |                                                                                                                                            |                                                                                                                                           |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br>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제9조(회원의 탈퇴)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br>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 1. 내용상 변경 없음                                                                                                                              |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br>㉡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
|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의 제명, 징계) |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br>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br>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 1.회원의 정제시 해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다.<br>2.회원의 징계 절차를 정하는 별도규정의 근거를 만든다.                                                                  |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br>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br>2. 특별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br>㉡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수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br>㉢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 제11조 → 제3장 총회                 |                                                                                                                                            | 1.정원의 순서상 최고외결기구인 총회 규정을 임원규정의 앞에 배치하도록 변경하고 조항의 순서도 이에 따라서 정리한다.                                                                         |                                                                                                                                                                                                                                                        |
| 제15조 → 제11조(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1.회원의 종류를 정함에 따라 총회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정리한다.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 제16조 → 제12조(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br>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br>㉠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br>㉡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 1.공동대표가 2인 이상이므로 '본회의 명의로'를 추가하고, 3호는 '총회구성원'이 '회결권자'에게 '정회원'으로 수정하고, '목적사항'의 '사항'을 삭제하고 (이하 동문), '할'을 '하는'으로 지수수정하고, 4호는 '요구가 있을'을 '을 요구 |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br>㉡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br>1.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                                                                                                                        |

| 조항                    | 원안                                                                                                                                                                                                              | 개정사유                                                                                                                                                | 개정안                                                                                                                                                                                                                                                                                                                              |
|-----------------------|-----------------------------------------------------------------------------------------------------------------------------------------------------------------------------------------------------------------|-----------------------------------------------------------------------------------------------------------------------------------------------------|----------------------------------------------------------------------------------------------------------------------------------------------------------------------------------------------------------------------------------------------------------------------------------------------------------------------------------|
|                       | <p>하는 때</p> <p>③ 총회구성원 3분의 1이상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p> <p>④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p>                                                                                                       | <p>하는'으로 자구수정한다.</p> <p>2.총회소집 요구시 소집의 기한과 업무의 권한대행 순서를 정한다.</p>                                                                                    | <p>제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p> <p>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p> <p>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p> <p>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p> <p>⑤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p> |
| 제17조→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 <p>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시일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p>1.전자태일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통지방법에 반영하여 추가하고, 통지대상을 총회구성원인 정회원으로 한다.</p>                                                                                 | <p>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 제18조→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p>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p>1. 임원선출</p> <p>2. 단체(법인)의 재산 및 정관 <u>세밀과 개정</u></p> <p>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위탁, 기증</p> <p>4. 예산 및 결산 승인</p> <p>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p> <p>6. 기타 주요한 사항 <u>의결</u></p> | <p>1.전문을 삭제한다.</p> <p>2.1호에 '물신일'을 추가한다.</p> <p>3.2호에 '재택'을 삭제한다.</p> <p>4.3호를 내용으로 묶어 정리한다.</p> <p>5.5호에 '및 보고' 추가한다.</p> <p>6.6호에 '의결'을 삭제한다.</p> | <p>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p> <p>② 단체(법인)의 재산 및 정관의 변경</p> <p>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p> <p>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p> <p>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p> <p>⑥ 기타 주요한 사항</p>                                                                                                                                                                        |
| 제19조→제15조(총회의 의결)     | <p>1. 총회 구성 및 의결은 총회 <u>참석리</u>로 한다.</p>                                                                                                                                                                        | <p>1.의결 정족수를 명기한다.</p> <p>2.2, 3항을 추가한다.</p>                                                                                                        | <p>① 총회는 총회 참석회원으로 개최하여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정제에 관한 사항은 2/3이상</p>                                                                                                                                                                                                                        |

| 조 항                          | 원 안                                                                                                                                             | 개정사유                                                                                                                                     | 개 정 안                                                                                                                                                   |
|------------------------------|-------------------------------------------------------------------------------------------------------------------------------------------------|------------------------------------------------------------------------------------------------------------------------------------------|---------------------------------------------------------------------------------------------------------------------------------------------------------|
|                              |                                                                                                                                                 |                                                                                                                                          | <p>의 작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p> <p>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
| 제21조→제16조(의결제 의사용)           | <p>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선에 관한 사항</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p> | 1. 변경 없음                                                                                                                                 | <p>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선에 관한 사항</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p>          |
| 제17조(총회 의사록)                 |                                                                                                                                                 | <p>1. 의사록 처리방법과 총회 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하는 의무를 정하는 근거를 신설한다.</p>                                                                                   | <p>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p> <p>②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요약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일로 통지하여야 한다.</p>  |
| 제3장 → 제4장 임원                 |                                                                                                                                                 |                                                                                                                                          |                                                                                                                                                         |
| 제11조→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p>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p>1. 공동대표 3인 내외</p> <p>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p> <p>3. 감사 2인</p> <p>4. 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p>                  | <p>1.호 구분의 이유 없어 함으로 정리한다.</p> <p>2.이사 인원을 변경하고, 사무총장 조항을 삭제한다.</p>                                                                      | <p>① 공동대표 3인 내외</p> <p>② 이사 15인 이내</p> <p>③ 감사 2인</p>                                                                                                   |
| 제12조 1호, 4호, 5호→제19조(임원의 선출) | <p>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신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4.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p>1.1항에 공신위원회를 임선위원회로 변경하고, 임원의 선출은 총회 사안이므로 '인준'을 '선출'로 변경하고 전임 기간 권리근거 규정을 추가한다.</p> <p>2.2항 임선위원회에 이사 2인을 포함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반영하도록 하고</p> | <p>① 임원은 임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전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p> <p>② 임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p> <p>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정</p> |

| 조항                      | 원안                                                                                                                                                                                                                    | 개정사유                                                                                                                                                                                                              | 개정안                                                                                                                                                                                                            |
|-------------------------|-----------------------------------------------------------------------------------------------------------------------------------------------------------------------------------------------------------------------|-------------------------------------------------------------------------------------------------------------------------------------------------------------------------------------------------------------------|----------------------------------------------------------------------------------------------------------------------------------------------------------------------------------------------------------------|
|                         | 5. 지도위원은 전임대표를로 구성하고,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                                                                                                                                                                          | 가다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도록 한다.<br>3.임원의 재한 규정은 별도로 독립한다.<br>4.'지도위원'은 조를 독립하여 '고문'으로 정정한다.                                                                                                                              | 우 약한 별의 고문을 둘 수 있다.<br>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br>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2조 2호 3호→제20조(임원의 재한) | 2.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br>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회 1년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 1.임원의 총괄 조문에서 독립하여 신설한다.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br>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회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
| 제14조→제28조(임원회 직무)       |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회의 재반임무를 관장, 관할한다. 또한, 공동대표중 1인은 부설 한국여성평화위원회의 원장이 된다.<br>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br>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한다. | 1.'또한, 공동대표 중 1인은 부설 한국여성평화위원회의 원장이 된다.'를 삭제하고,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는 규정을 추가한다.<br>2.이사회는 사업의 집행이나 수행이 아닌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임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분명히 한다.<br>3.총회와 이사회 순서를 정문하여 수정한다.<br>4.3호의 "감사결과-진술할 수 있다"를 감사조항으로 정리한다.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총회 의장이 되고 본회의 재반임무를 관장, 관할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하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br>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br>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한다. |
| 제13조→제22조(임원회 임기)       | 1.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br>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임원의 구분에 따라 임기를 정리한다.                                                                                                                                                                                            | ① 공동대표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br>② 이사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br>③ 감사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br>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5장 이사회                 |                                                                                                                                                                                                                       |                                                                                                                                                                                                                   |                                                                                                                                                                                                                |
| 제21조→제                  |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                                                                                                                                                                                                       | 1.이사회는 성격을 명확히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                                                                                                                                                                                                |

| 조 항                                         | 원 안                                                                                                                                                                                                                                                                                          | 개정사유                                                                                                         | 개 정 안                                                                                                                                                                                                                                                                                                                                                                                                                                                |
|---------------------------------------------|----------------------------------------------------------------------------------------------------------------------------------------------------------------------------------------------------------------------------------------------------------------------------------------------|--------------------------------------------------------------------------------------------------------------|------------------------------------------------------------------------------------------------------------------------------------------------------------------------------------------------------------------------------------------------------------------------------------------------------------------------------------------------------------------------------------------------------------------------------------------------------|
| 23조(구설)                                     | 서 공동대표와 이사들로 구성<br>한 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br>출한다.                                                                                                                                                                                                                                                  | 하여 이사회 의 의사를 정<br>리하도록 수정한다.<br>2.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근<br>거규정을 추가한다.                                                | 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br>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br>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br>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br>중에 호선한다.<br>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 의장이<br>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br>을 통리한다.<br>④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br>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br>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
| 제22조 1호,<br>2호, 3호, 6<br>호, 7호→제<br>24조(소설)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br>그 의장이 된다.<br>2. 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 하고<br>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br>수 있다.<br>3.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br>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br>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br>①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br>있을 때<br>②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br>③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br>인정하는 때<br>7.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br>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br>경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br>할 수 있다. | 1. 소집조항만을 독립하여<br>문장을 정리하고<br>2. 이사회 의 소집 업무 항<br>을 추가하고<br>3. 사업 집행에 관한 운영<br>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br>정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br>사장이 소집한다.<br>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br>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br>소집한다.<br>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br>요구가 있는 때<br>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br>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br>인정하는 때<br>③ 임시 이사회 의 소집 요구<br>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br>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br>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br>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br>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br>우에는 이사회 연장과 순으로<br>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br>를 대행할 수 있다.<br>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br>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br>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br>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br>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br>별도규정에 따른다. |
| 제22조 4호<br>→ 제 25 조<br>(재회 및<br>통제)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br>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br>임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이<br>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br>다.                                                                                                                                                                                                           | 1. 전자메일이 일반화되어<br>있는 현실을 통지방법에<br>반영하여 추가하고, 단서<br>조항을 추가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br>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br>임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br>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br>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br>사 관련이 결피하고 결원이<br>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

| 조항                               | 원안                                                                                                                                                                                                                   | 개정사유                                                                                                                                                                                                                                     | 개정안                                                                                                                                                                                                                                                                                                                              |
|----------------------------------|----------------------------------------------------------------------------------------------------------------------------------------------------------------------------------------------------------------------|------------------------------------------------------------------------------------------------------------------------------------------------------------------------------------------------------------------------------------------|----------------------------------------------------------------------------------------------------------------------------------------------------------------------------------------------------------------------------------------------------------------------------------------------------------------------------------|
| 제22조 5호<br>→ 제 26 조<br>(의결)      | 이사회는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1. '의결은'을 삭제하고, '가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을 추가하고, '가결'단어를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문장을 정리하고, 조 독립한다.                                                                                                                                                      | 할 수 있다.<br>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가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27 조 (의결 제 의사율)                |                                                                                                                                                                                                                      | 1. 산설한다.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br>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br>2. 급전 및 재산의 수수를 등변하는 사항 등 자신과 밀접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
| 제 23 조 (기능)<br>→ 제 28 조 (의결 사항)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br>1. 업무의 집행<br>2. 사업계획의 운영<br>3. 예산결산서의 작성<br>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br>5. 정관의 변경 발의<br>6. 재산관리<br>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br>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br>9. 회원의 제명<br>10. 결원이 된 임원의 선임<br>11. 기타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 1. 이사회가 '집행'기구라기보다는 '심치, 의결'기구라면,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활동'을 '심치, 의결'로 수정하고<br>2. 1호를 삭제하고, 2호의 '운영'을 '심치'로 변경하고, 3호 '작성'을 '심치'로 변경하고, 11호를 삭제하고,<br>3. 임원선선의 인준, 결원이 된 임원의 선임, 회원의 등 부속기구와 부설기구 장의 선출,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호를 추가하고<br>4. 나머지 각호를 정리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치, 의결한다.<br>1. 임원선선의 인준에 관한 사항<br>2. 사업계획<br>3. 예산 및 결산<br>4.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br>5. 결원이 된 임원의 선임과 위원회 또는 센터의 장, 부설기구 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br>6.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br>7.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br>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br>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br>10.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br>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br>12.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 제14호 3호<br>일부, 제22조 6호→제 29조(감사)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불일부 정관에게 보고하여야                                                                                                                                                    | 1. 조항별로 흠여져 있는 감사의 권한과 의무규정을 정리하는 감사 규정을 신설한다.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br>② 감사는 필요할 경우 총회                                                                                                                                                                                                                                                                         |

| 조 항               | 원 안                                                                                                                                   | 개정사유                                                     | 개 정 안                                                                                                                                         |
|-------------------|---------------------------------------------------------------------------------------------------------------------------------------|----------------------------------------------------------|-----------------------------------------------------------------------------------------------------------------------------------------------|
|                   | <p>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14조 3항 일부)</p> <p>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22조 6항)</p> | <p>2.본회가 통일부 등록단체이므로, '주무부'로 정정한다.</p>                   | <p>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 제6장 부설기구          |                                                                                                                                       | 1.본장은 부설기구인 한국 여성평화연구원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신설한다.                  |                                                                                                                                               |
| 제30조(부설기구)        |                                                                                                                                       | 1.신설한다.                                                  |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부설기구로 둔다.                                                                                                         |
| 제31조(부설기구직장)      |                                                                                                                                       | 1.신설한다.                                                  | <p>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p> |
| 제32조(부설기구구성 및 운영) |                                                                                                                                       | 1.신설한다.                                                  |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 제6장→제7장 재산 및 회계   |                                                                                                                                       |                                                          |                                                                                                                                               |
| 제24조→제33조(재산의 구분) | <p>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p> <p>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p>               | 1.'법인'을 '본회'로 변경한다.                                      | <p>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p> <p>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p>                          |
| 제25조→제34조(재산의 관리) | <p>1. 기본재산을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p>                                        | <p>1.'을'을 '은'으로 자구수정한다.</p> <p>2.'통일부'를 '주무부'로 변경한다.</p> | <p>① 기본재산을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p>                                                 |



| 조항                         | 원안                                                                                                                                                     | 개정사유                                                                    | 개정안                                                                                                                                    |
|----------------------------|--------------------------------------------------------------------------------------------------------------------------------------------------------|-------------------------------------------------------------------------|----------------------------------------------------------------------------------------------------------------------------------------|
|                            | 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회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회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26조→제35조(재정수입)            | 1.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br>2.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1. 재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사무처 의회' 기부금 모금액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리한다.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br>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br>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 제27조→제36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1. '연'을 '년'으로 자구수정한다.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 제28조(세입·세출예산)→제37조(예산의 수립) |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회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1. 조항 명칭을 변경하고, '연'을 '년'으로 자구수정한다.                                      |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회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 제29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도록 한다.                                                                                                                               | 1. 삭제한다.                                                                |                                                                                                                                        |
| 제30조→제38조(임원보수)            |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상임이사, 즉 공동대표 활동비에 대한 세출 방식의 변경                                       |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7장→제8장 사무부처               |                                                                                                                                                        |                                                                         |                                                                                                                                        |
| 제31조→제39조(사무처)             |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 제32조→제40조(구성원)             | 1.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고, 사무처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사회 회결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br>2.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br>3.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1.18조(원안11조)와 연동하여 총장을 처장으로, '대표단'을 '공동대표'로, 임기규정을 '중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한다.  | ①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br>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br>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 조 항                  | 원 안                                                                                                                                      | 개정사유                                                 | 개 정 안                                                                                                                                                 |
|----------------------|------------------------------------------------------------------------------------------------------------------------------------------|------------------------------------------------------|-------------------------------------------------------------------------------------------------------------------------------------------------------|
|                      |                                                                                                                                          |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 제33조→제41조(경관제정 및 개정) | 1. 경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br>2. 경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br>3. 발의된 경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1.변경없음                                               | 1. 경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br>2. 경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br>3. 발의된 경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34조→제42조(법인해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2.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 1.관련법규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1항 '사'목에 따라 변경한다.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 제35조→제43조(결산)        | 공통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변경없음                                               | 공통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6조(운영규정)           |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 1.중복조항이므로 삭제한다.                                      |                                                                                                                                                       |
| 제37조→제44조(기타)        | 본회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1.변경없음                                               |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사유 : 민법 42조 2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에 근거하여 수정함)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1. 1. 28 4차 개정(기재오류)

2002. 1. 25 5차 개정→4차

2003. 1. 28 6차 개정→5차

2004. 1. 9 7차 개정→6차

【 임원 및 기구장 인선(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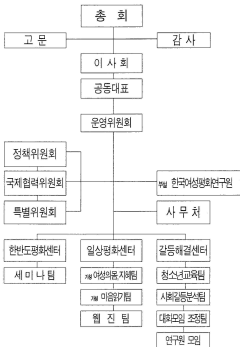
| 구분          | 안  | 구성(총정생략 가나다순)         | 비고                      |
|-------------|----|-----------------------|-------------------------|
| 이사회         | 현재 | 정현택(이사장)              | 2007년 선출, 2009년까지 임기 3년 |
|             |    | 김열리                   | 2008년 선출, 2008년 말 사직    |
|             |    | 김숙임                   | 2006년 선출, 임기 만료         |
|             |    | 김지영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    | 박유희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    | 심영희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    | 윤수경                   | 2008년 선출, 2010년까지 임기 3년 |
|             |    | 전운주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    | 조영희                   | 2008년 선출, 2010년까지 임기 3년 |
|             |    | 한정숙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 신규 | 정경심(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    | 김성운(서울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공동대표        | 현재 | 김열리                   | 2008년 선출, 2010년까지 임기 3년 |
|             |    | 윤수경                   | 2008년 선출, 2010년까지 임기 3년 |
|             |    | 조영희                   | 2008년 선출, 2010년까지 임기 3년 |
| 감 사         | 현재 | 회계감사 : 한국영            | 2007년 선출, 2009년까지 임기 2년 |
|             | 추가 | 사업감사 : 진선미 변호사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한반도평화센터     | 현재 | 소장(대행) : 홍승희          | 2008년 8월 1일부터 소장 대행     |
|             | 신규 | 소장 홍승희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갈등해결센터      | 현재 | 소장 박수선                | 2007년 선출, 임기 2년 만료      |
|             | 연임 | 소장 박수선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일상평화센터      | 현재 | 공석                    | -                       |
|             | 신규 | 소장 이권명희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정책위원회       | 현재 | 공석                    | -                       |
|             | 신규 | 논의중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국제협력위원회     | 현재 | 공석                    | -                       |
|             | 신규 | 논의중                   | 2009년 선출, 2011년까지 임기 3년 |
| 부설한국여성평화연구원 | 현재 | 김열리 원장                | 2008년 선출, 2008년 말 사직    |

【 2009년 이사,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및 사무처 】

| 구분          | 구성(존칭생략 가나다순)                                                                                                                                                                                                                                |
|-------------|----------------------------------------------------------------------------------------------------------------------------------------------------------------------------------------------------------------------------------------------|
| 이 사 회 (10인) | 정현백(이사장) 이사, 김성은 이사, 김지영 이사, 박윤희 이사, 심영희 이사, 윤수경 이사, 권은주 이사, 정경심 이사, 조영희 이사, 한정숙 이사                                                                                                                                                          |
| 공동대표 ( 2인)  | 조영희(상임), 윤수경                                                                                                                                                                                                                                 |
| 감 사 ( 2인)   | 전선미(사업감사), 한국엽(회계감사)                                                                                                                                                                                                                         |
| 운영위원 (16인)  | (2인) 조영희 상임대표, 윤수경 공동대표<br>(3인) 한반도 평화센터 홍승희 소장, 최안전경 팀장, 1인 논의중<br>(3인) 갈등해결센터 박수신 소장, 김신혜 팀장, 여혜숙 팀장<br>(3인) 알상평화센터 이권영희 소장, 장정화 팀장, 1인 논의중<br>(1인) 정책위원회 위원장(논의중)<br>(1인)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논의중)<br>(3인)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논의중), 조영주 운영위원, 1인 논의중 |
| 사 무 처 ( 5인) | (1인) 법인실무, 행정실무 담당(상근 활동가)<br>(4인) 영역별 실무 담당(비상근 활동가)                                                                                                                                                                                        |

※ 현재 논의 중인 이사와 원장, 위원장, 팀장 :

## 평화여성회 조직도



# 【 웹진기사 목록 】

| 월  | 목차                           | 소재목                             | 필자   |
|----|------------------------------|---------------------------------|------|
| 1월 | 평화여성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 정기총회 개최안내                       | 오영주  |
|    |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맞이하여              | 최윤정  |
|    | 2007송년의밤                     | 유쾌,상쾌,발랄한 평화여성회 만세!!            | 김선미  |
|    | 사진으로 보는 2007송년의밤             |                                 |      |
|    |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국제활동             |                                 | 정경란  |
|    | 평화운동의 인식차                    | 평화운동의 인식차, 편들힘을 다내어서            | 이학영  |
|    | 평화포토갤러리                      | 시선                              | 이승현  |
|    | 지난활동일지/사업계획                  | 12월 소식/1월 일정                    |      |
|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12월희비를 남부해 주신 회원들               |      |
| 2월 | 안양천변에서                       | 봄을 짧은 겨울 이야기                    | 홍승희  |
|    | 평화여성회 정기총회 대표인사              | 평화여성회 정기총회 대표인사                 | 조영희  |
|    | 평화여성회 2008년 사업방향             | 여성평화운동 역량 강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자!   |      |
|    | 신임 윤수경 공동대표 소개               | 대외명분보다 나 자신을 선포시키는 평화운동 하고 싶어   | 강정화  |
|    | 평화여성회 총회                     |                                 | 오영주  |
|    |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총회             |                                 | 오영주  |
|    | 또다른 세상을 꿈꾸는 멕시코 사람들          | 2008 멕시코 사회포럼을 소개하다             | 김영리  |
|    | 평화문화의 씨앗 뿌리기(1)              |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 공동체컨설팅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2 | 박수선  |
|    | 평화포토갤러리                      | 당신만은                            | 이승현  |
|    | 지난활동/사업계획                    | 1월 소식/2월 일정                     |      |
|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1월희비를 남부해 주신 회원들                |      |
| 3월 | 안양천변에서                       | 여성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소멸(?)            | 홍승희  |
|    | 치병에 저항하는 새로운 시작              |                                 | 강유인화 |
|    | 3.8여성대회 참관기                  | 새해 여성의날 100년, 3.8 여성축제          | 김선영  |
|    | '희복적 사법' 화합 조정자 과정을 워크숍을 마치고 | '희복적 사법' 화합 조정자 과정을 워크숍을 마치고    | 김지선  |
|    | 신입활동가 소개                     |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유복님  |
|    | 이나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 이나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 김선영  |
|    | 평화포토갤러리                      | 봄이 왔다                           | 이승현  |
|    | 사무국 리포트                      | 2월 소식/3월 일정                     |      |

| 월  | 목차                       | 소재목                                           | 필자  |
|----|--------------------------|-----------------------------------------------|-----|
| 4월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2월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들                              |     |
|    | 평화사진                     | 키 리졸브(Key-Resolve)후원                          | 김현희 |
|    | 안암천변에서                   | 다시 기본을 생각하자                                   | 홍승희 |
|    | 대통령 관심 밖에 놓인 복역          | 늦기 전에 협상무대로 돌아가야                              | 김연철 |
|    | 평화여성회 10주년 및 제4회 이우정 평화상 | 평화여성회 10주년 및 제4회 이우정 평화상 안내                   |     |
|    | 제4회 이우정 평화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 제4회 이우정 평화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 유복년 |
|    |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10주년 1)    |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10주년 1) 평화여성회 창립총회 1997년 3월 28일 | 오영주 |
|    | 평화문화의 씨앗뿌리기 6)           |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 함께 하는 사람들 3                       | 박수선 |
|    | 평화포토갤러리                  | 가다림                                           | 이승현 |
|    | 지난활동/사업계획                | 3월 소식/ 4월 일정                                  |     |
|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3월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들                              |     |
|    | 안암천변에서                   | 조삼모사 선거이야기                                    | 홍승희 |
| 5월 | 평화여성회 10주년 기념 좌담회        | 또 십년을 함께 걷는 평화의 길에서                           | 레나  |
|    |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의 발족식          |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의 발족식에 즈음하여                         | 유복년 |
|    | 여성평화연구원 활동재단             | 지구화, 평 빈 생명, 페미니즘                             | 레나  |
|    | 자라나는 십대들의 꿈(7), 관동대결로    | 폭력예방 프로그램 소개                                  | 박인혜 |
|    | 나와 평화, 여성회 1)            | 평화와 여성주의의 접목을 위하여 고민했던 시기                     | 이은화 |
|    |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10주년 2)    | 미로니아 공원에서 펼쳐진 여성평화 한마당 (1998년 5월 23일)         | 오영주 |
|    | 평화포토갤러리                  | 관심                                            | 이승현 |
|    | 지난활동/사업계획                | 4월 소식/ 5월 일정                                  |     |
|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4월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들                              |     |
|    | 안암천변에서                   | 지구로 도는 풍차                                     | 홍승희 |
| 6월 | 장우병 반대 촛불집회              | 여성이 뿔났다                                       |     |
|    | 평화여성회, 늦봄꽃일상 수상          | 제13회 늦봄꽃일상 수상소감                               | 조영희 |
|    |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평화여성회 10주년과 이우정 평화상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
|    | 평화여성회 10주년 및 이우정 평화상     | 평화여성회 10주년 및 이우정 평화상                          | 오영주 |
|    | 오두희님 이우정 평화상 수상          | 오두희님이 제4회 이우정 평화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 오영주 |
|    |                          |                                               |     |



| 월  | 목차                       | 소재목                           | 필자   |
|----|--------------------------|-------------------------------|------|
|    | 10주년 기념식 및 평화상 이모저모      | 10주년 기념식 및 평화상 이모저모           | 오영주  |
|    | 나와 평화, 여성회 2)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나                | 박애경  |
|    | 여성평화연구원 발의제당             | 2008 발의제당 '여성과 평화, 다시 묻다' 소개지 | 레나   |
|    | 평화포토갤러리                  | 4월 1차                         | 이승현  |
|    | 사무국 리포트                  | 5월 소식/6월 일정                   |      |
|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5월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들              |      |
|    | 인암원전에서                   | 3861 아이를 잘 키워내                | 홍승희  |
| 7월 |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   | 제나다 사례에서 배우다                  | 김진혜  |
|    | 그라운 글장산에 다녀오다            | 615공동선언 발표 8월 기념 민족통일대회       | 안김정애 |
|    | M평정부를어 사라진 '평화재제'        | 북한 핵이 폐기되길 전장으로 원한다면          | 김연철  |
|    | 6월 장마단상                  | 6월 장마단상                       | 최안진경 |
|    | 어머니와 떠나는 첫 여행            | 어머니와 떠나는 첫 여행                 | 이승현  |
|    | 나와 평화여성회 시리즈3)           | 평화여성회 5년이 내게 준 변화             | 심열희  |
|    |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10주년 3)    | 2000년 SOFA 개정집회               | 오영주  |
|    | 함께 일고 싶은 책               | 다운 시프트로 인생을 즐겨라               | 유수경  |
|    | 평화포토갤러리                  |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 이승현  |
|    | 사무국 리포트                  | 6월 소식 /7월 일정                  |      |
| 8월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6월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들              |      |
|    | 인암원전에서                   | 자본독재 본적화의 신호탄                 | 홍승희  |
|    | 특집 : 615 이후 사진으로 보는 8.15 | 웃으며 추억할 우리의 만남들               |      |
|    | 평화 글쓰기                   | 할머니의 밤상                       | 홍승희  |
|    | 여성단체 통일외식과 활동실태 조사보고     | "적극적 활동 필요한데, 여성 배제되고 있다"     | 이문숙  |
|    | 평화 글쓰기                   | 아들의 오모바이                      | 여혜숙  |
|    | 평화포토 갤러리                 | 아버지                           | 이승현  |
|    | 나와 평화여성회 4)              | 평화여성회는 다                      | 김학목  |
|    |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10주년 4)    |                               | 오영주  |
|    | 사무국 리포트                  | 7월 소식/8월 일정                   |      |
| 9월 | 함께 걷는 평화 길을              | 7월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들              |      |
|    | 인암원전에서                   | 전국잖이라고?                       | 홍승희  |
|    | 특집: 동북아 평화에 여성의 소리 일하다   | 동북아 평화, 여성과 함께 말하자            | 홍승희  |
|    |                          | '2008 개살'을 느끼다                | 홍승희  |
|    |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이모저모              | 오영주  |

| 월   | 목차                        | 소재목                        | 필자  |
|-----|---------------------------|----------------------------|-----|
| 10월 | 물러한 것의 평화                 |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 이시우 |
|     | 평문집, 언제나 그곳에는             | 달리는 여성통일학교 체험기             | 정효연 |
|     | 갈등해결센터, 회원의날 행사일지         | 갈등해결센터 회원들 친교의 시간 가져       | 김선훈 |
|     |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10주년 5)     | 2004 회원한마당 둘째날             |     |
|     | 평화 글쓰기                    | 갈등해결과 평화일지                 | 박민혜 |
|     | 나와 평화여성회 5)               | 10대의 발달함과 60대의 안정감의 찬란한 조화 | 여혜숙 |
|     | 사무국 리포트                   | 8월 소식 / 9월 일정              |     |
|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8월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들           |     |
|     | 안암천변에서                    | 희망과 위트가 필요한 사회             | 홍승희 |
|     | 물러한 것의 평화 2)              | 물러한 것의 평화에서의 사색            | 이시우 |
|     | 인간에 대한 '따뜻한 예감'이 필요한 일    | 2008 조정자 훈련과정 종료           | 김선훈 |
|     | 평화 글쓰기                    | 다름을 인정하기 왜 이리 힘들지          | 이덕경 |
|     | 전쟁을 넘어서는 평화 첫걸음에 의미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평가 워크샵           | 오영주 |
|     | 새로운 평화연대의 제안              | 시민평화포럼 발족                  | 오영주 |
|     | 나와 평화여성회 6)               | 평화여성회와 나                   | 황순영 |
|     | 시가 있는 평화의 길               | 꿈을 비는 마을                   | 문익환 |
|     | 평화포토 갤러리                  | 상처                         | 이승현 |
|     | 사무국 리포트                   | 9월 소식 / 10월 일정             |     |
|     | 함께 걷는 평화 길을               | 9월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들           |     |
|     | 인암천변에서                    | 진정한 만남의 평화를 위하여            | 홍승희 |
| 11월 | 노순택의 평화이야기 1)             | 문단의 향기                     | 노순택 |
|     | 한국의 성매매제재                 | 공통, 위안부 그리고 양공주 만들기 1)     | 이나영 |
|     | 평화 글쓰기                    | 아주 의미있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 최선희 |
|     | 제주에서 대전을 지나 광주로 이어지는 평화교육 | 전국에 울려 퍼지는 갈등해결 평화교육       | 김선훈 |
|     |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             | 존놀들의 제국주의                  | 윤수경 |
|     | 시가 있는 평화의 길               | 폴타는 마그다르의 어머니              | 김영환 |
|     |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10년 6)      | 2005년 - 2008년              | 오영주 |
|     | 평화포토 갤러리                  | 운수 없는 날                    | 이승현 |
|     | 사무국 리포트                   | 10월 소식 / 11월 일정            |     |
|     | 함께 걷는 평화 길을               | 10월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들          |     |
|     | 안암천변에서                    | 오려야를 선택한 미국의 힘             | 홍승희 |

## 【 성명서 목록 】

| 제 목                                              | 일자    |
|--------------------------------------------------|-------|
|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반대한다.                             | 1/7   |
|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 1/7   |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성평등을 추진해 온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반대한다 | 1/17  |
|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켜야한다                      | 2/12  |
| 한미정상회담에서 MD 불참을 명확히 하라                           | 4/14  |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809차 수요시위 성명서               | 4/16  |
|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 6/2   |
| 정화직 쫓겨대행진 폭력진압한 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 6/4   |
|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항복해야 한다."                  | 6/26  |
| 광복63주년 기념 8.15민족통일대회<br>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성명  | 8/15  |
|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공동선언문                            | 9/3   |
| 10.4정상선언 1주년을 맞이한 여성들의 목소리                       | 10/4  |
|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키고, 실질적 계대군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 12/2  |
|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                         | 12/18 |

##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반대한다.

새해 벽두부터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 또는 타 부처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을 접하여 우리 여성들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출연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비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친화적도(GEM)가 조사대상 93개국 중 64위에 불과한 국가이고, 한반도는 탈냉전이후 유일하게 분단된 지역이다.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온 여성단체들의 요구는 물론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현재 국회에서 여성비율, 고위관료·고위 경영자·전문가·기술자 등에서 여성비율, 남성에 대응한 여성의 소득비율이 현저히 낮다. 차기 정부는 여성권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제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더구나 대통령당선인은 2007년 11월 30일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약국화의 심화, 가족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평등 가족관련 부처가 필수적이라고 답한 바도 있다.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증가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정부부처의 재편을 고려하여 여성들과 약속한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이 지렛 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이다. 남북한은 긴 세월 속에서 가족, 역사, 문화, 언어라는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과정은 남북 갈등으로 인해 서로 멀어지고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과정이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조정부서의 역할은 중요하다. 188개 국가를 상대하는 외교통상부와 남북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 관련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통일부의 역할은 엄연히 다른 독자적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더구나 2008년은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합의한 남북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하나하나 추진해가야 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 뿐 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오히려 통일부의 위상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남북협상의 주요 통로인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인 한반도문제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처사이다.

양성평등과 평화통일을 일망하는 우리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적극 반대한다.

2008.1.7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행 18개부를 12~15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시안을 보고했으며, 15일 까지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정책을 전달, 조정 하는 부서는 지속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이었던 2007년 11월 토론회를 통해 여성유권자들과 약속한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를 타부처와 통폐합하려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15개 정부부처로 재편된 여성가족부 존치안'에 대해 환영한다.

한국의 성평등정책은 이제 막 절충을 단계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여성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다. 가사·육아 등 과중한 노동과 경제활동 사이에서 이중 삼중 부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에 심각하지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선례에 불과하다. 실제 모든 지표에서 한국 여성의 지위는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을 증명한다. 따라서 성평등정책, 성인지예산제, 성평등교육 등이 실질성 있게 추진되어 정부 모든 정책에서 성인지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일상과 국가정책 속에 내재되어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걷어내고 열악한 여성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실현화 가치를 추구하려는 새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주체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새 정부의 출범 방향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한민국 절반의 여성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을 굳게 믿은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이행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가족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평등·가족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으며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양성평등에 대한 전달부서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여성권한척도(GEM), 성제차지수(GCI) 등의 순위가 높은 대부분의 나라가 여성기구를 독립적인 부처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여성관련 국제지수 상위 50%의 국가 13개 국 중 10개의 국가들에서 여성기구들이 독립적인 부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통합·성평등부, 노르웨이는 아동·평등부, 뉴질랜드는 여성부, 독일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등 성 격차 지수나 여성권한척도 1위에서 4위까지의 국가들은 모두 성평등이란

단어를 부나 담당기구 명칭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과 관련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 성평등교육 등을 진달하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성, 아동, 가족 관련 정책들을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강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며 실무적 정책안을 구성하는 기구인 만큼 ‘여성가족부 존치’라는 이름과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려, 열악하고 불평등한 여성 현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2008.7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강남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록여민회 대구여성회 대관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전주교여성공동체 새올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로만드는여성회 포함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교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올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성평등을 추진해 온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반대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OECD국가에 살고 있지만 여성권한지수(GEM)가 93개국 중 64위에 불과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한국여성들은 최근의 정부 조직개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 16일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고 다문화와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경험이 다르고 이에 따라 여성권한지수가 낮은 현실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성평등정책을 후퇴시키는 처사이다. 여성이 한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 의제를 정하고 그 의제를 실현하는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생산하는 전문부서를 강화하는 조치가 바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실현이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명박 당선자가 두 달도 채 되지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결정한 처사는 이명박 당선자의 여성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용과 여성들을 무시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남북 교류와 협력과정은 남북 갈등으로 인해 서로 멀어지고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헤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과정이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조직부서인 통일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2008년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합의한 남북의 공동언명을 목표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방안을 성실히 추진해가야 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 뿐 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외교통일부'로 통합한다는 인수위원회 안은 188개 국가를 상대하는 외교통상부와 남북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 관련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통일부의 독자적인 영역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를 드러낸 조치이다. 통일부의 폐지는 통일문제가 전권문제이자 국제문제인 한반도문제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남북화해, 협력, 통일, 평화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과 청사진, 이를 실현할 방법론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통일부 폐지 논란 과정은 39년간의 문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속해온 특수 부처 존재 여부를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폐지와 존치를 왔다갔다 하는 존란의

과정이었다.

우리 여성들은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인수위원회의 구호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인수위원회의 모습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통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정치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인수위원회가 주장하는 정부조직개편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중단하고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한반도 분단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가 성평등 실현과 한반도 평화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는 ‘국민’을 섬기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월17일 (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기해하나합창단,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지주여성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녹색여성중앙회,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미래가족문화연합,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민주노총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새세상을여는원주교여성공동체,세계평화여성연합,수원여성회,당산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환경연대,울산여성회,원불교여성회,인천여성회,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진주여성회,천도교여성회,통일문화예술인협회,통일여성회,통일연대여성위원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RNCC)양심평동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여성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주회,한국여성교회연합회,한국여성정치연구소,한국어신학자협의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한민족통일여성교육협의회)



##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켜야한다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가산점 부활안)이 2월 13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우리 여성·장애인·시민사회 단체는 1999년에 이미 위원결정이 난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며 국방위원회에서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1. 군가산점 부활안(고조흥 의원 외 12명 발의)은 명백한 위헌 법안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에 대해 ‘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제대군인에게 보상의 일환인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군가산점 부활안을 발의한 고조흥 의원은 “99년 공무원채용 시험 시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던 것에서, 과목별 만점의 2%로 가산점을 줄이고 가산점 부여로 합리적인 사람의 인원을 채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여 위헌의 요소를 제거했다”고 밝혔으나, 가산점제도와 합리적 비율조정으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산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대군인지원에대한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몇 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재류시키고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는 위헌 결정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 논의를 중단하고 입법 기관으로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 2.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킨다.

국방부가 군가산점 부활안을 2006년 공무원 채용 시험결과에 적용해 본 결과, 7급과 9급의 경우 10% 이상 여성합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조흥 의원의 군가산점 부활안은 여성 및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5년 48.3%에 비하여 2007년 4월 50.7%로 겨우 2.4%에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44만 여 명의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무려 67.6%(435만 5천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을 300으로 했을 때, 겨우 6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노동부, 2006. 10 임금구조실태분석/2006년 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 학교 교직원 시험, 20인 이상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에 군 가산점제를 실시한다면,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유일한 경쟁경쟁 명목인 채용경쟁시험에서까지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는 정부정책에도 위배되는 등, 시대 흐름에 역행

하는 것이다.

### 3. 국가는 다양한 군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군가산점 부활 찬성측은 재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공기업 및 사기업에서는 군 제대 사용자에 한해 호봉을 인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6개월 이상 복무한 군 제대자에 한해 군복무 기간에 비례한 연금크레딧이 시행되는 등 보편적으로 군 제대자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회는 특정 직업군에만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청년들이 19세기 식 내무만 사장에서 2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및 군대내 가족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턴십 시절 등 편의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한되어 극히 일부 계대 군인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군가산점제를 부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대 내 생활환경 및 군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무결사시키고 군인들의 병영생활 개선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 등 군복무자가 제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장애인·시민사회 단체들은 불필요한 상대적 여론을 확산하고 재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도 되지 않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을 반대하여,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유권자의 당당한 한표로 심판할 것이다.

2008년 2월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주회, 평화물민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미정상회담에서 MD 불참을 명확히 하라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땅길 길에 오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평화안보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방문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건설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최근 한미 양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략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5)에 한국이 정식으로 참여하고, 미국을 정점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들이다.

우리는 특히 한국의 MD 참여 문제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노골적인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비실용적' 선택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고위관료와 군 수뇌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MD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가 공동안보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냉전 시대의 절대안보를 기치로 한 군사적 대결로 회귀하느냐는 길목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도 안 된 이명박 정부에게 MD 참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동맹국의 도리가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MD와 같은 소모적이고도 위험한 군사 프로젝트로 '엄격 반군'을 매을 수 없고, MD를 통해 자신의 강력한 후원세력인 군산복합체의 잇속을 챙겨주려는 관성을 버리지 못하면 '전쟁 머신'으로서의 미국의 요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워온 이명박 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참모들은 MD 참여를 호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인수위원회도 이를 검토한 바 있다. 또한 군 일각에서는 PAC2를 PAC3로 업그레이드하고 이지스함에 SM6 미사일을 장착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명박 정부가 MD 참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이유들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남북관계, 그리고 주변국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기로 한 것을 일단 환영한다. 동시에 많은 안보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왜 한국의 MD 참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부가 귀 기울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물론 현명한 선택은 어떠한 형태로든 MD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군 당국이 “미국의 MD와는 무관하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는 것인도 ‘한국형 MD’든, 군사적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막대한 예산 낭비와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의 불안을 가져오기는 타원가지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국형 MD’도 미국의 MD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한 군사적 구조면으로도 통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MD의 낭비성과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운영유지비용 포함할 경우 한국의 MD 비용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15조원이 넘게 소요된다. 반면 패트리어트 최신행이라는 PAC-3는 한도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13차례 가운데 6번만 성공했다. 실험에서 이 정도라면 실전에서의 요격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치스함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는 해상 MD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수도권과 인구밀집지역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에게서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한국의 MD 참여는 남북관계를 대결사태로 몰아넣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한국의 안보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

효과는 없고 안보딜레마만 심화시키는 MD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뿐이나 ‘비실용적 선택’은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불안에 빠뜨리며,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4월 14일

엑스페란토 평화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공간, 평화박물관, 평화비트워크, 평화물만드는여성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809차 수요시위

생명의 향연이 떠나나오는 봄이다. 우리 여성들은 17년 이상 태주 수요일이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국제 여성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눈이오나 비가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외침을 해왔다. 혼자 꾸민 꽃이저만 함께 꾸민 현실이 된다는 믿음으로 정의와 인권회복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한결같이 세워왔다. 정의가 꽃피울 봄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수요일의 외침은 국내 곳곳에 퍼져 많은 국민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역사적 진실을 보게 하여 인권회복과 정의를 실천하는 장이되었다.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지난해에 미 하원에서, 캐나다 연방회의에서, 12월 유럽의회에서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마침내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지방 의회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이 채택되었다. 인권회복과 정의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맑고 눈물이 이워낸 결과이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분쟁지역 모두의 관심사이며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지켜보며 하루속히 정의와 평화 실현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당사자인 한국정부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일련의 흐름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스르고 있다.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회신기자 회견에서 "상속된 한일관계를 위해 '사과하라', '한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후 31절 기념식에서도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어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위협한 역사인식을 드러내어 그동안 우리여성들의 정의의 외침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좌절될까 심히 우려된다. '과거는 묻지 않음'으로 식의 외교는 한국국민과 국제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열원을 외면한 불평등한 외교이지 실용외교가 아니다. 오는 4월23일부터 시작되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한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것을 우리 여성들은 촉구 한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파괴적인 자원낭비에 대한 비극적 경향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5월 45일 일본에서 한일 9조 세계대회를 통해 전쟁포기를 명문화한 평화헌법9조 개악 추진이 멈추어질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일본 다카라즈카에서 불붙은 정의의 횃불이 이제 오кина와, 도쿄, 오사카 등지를 넘어 일본국화와 정부에 옮겨 붙게 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올바르게 후세에 교육하라
- 한국정부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한일외교정책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 일본정부는 군국주의 부활을모 중단하라

2008년 4월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809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일동

##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08년 6월, 한국사회 의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정치행태와 미숙한 국정운영,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선적 권력 행사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 도는, 지난 20년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민 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선출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표출하며 시면불복 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아 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이토록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 야 한다. 지난 100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독선과 아집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석 달 열흘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의 기준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 렸다. 국민들이 느낄 절망감이나 위화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인물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시킨 것은 다른 아닌 대통령이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마 지막 보루는 교육 병등권이다. 하지만 이조차 4.15 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권 력에 순응하고 통제 가능한 언론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들을 지나라하게 드러내 고 있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어찌한가. 효율화라는 화을 줄은 명분아래 공공서비스를 민간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지는 모르나,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의 이익을 극도로 축소시키는 결 과를 맺을 것이다. 의료보험을 시장화(민영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기업의 장사원천으로 내주겠다는 것이 나, 유가가 태평양 200달러를 내다보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전력과 가스사업을 사유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 황폐화하는 한이 있어도 기업의 이익만을 기필코 보장하겠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을 우롱하며 골래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 사업도 다를 바 없다. 80%에 육박하는 반대여론 속에 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물문에서 관공으로, 다시 치수와 하천정비로 변신을 하듯 명분을 바꿔가며 대 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는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주의 의 원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과 국회연구기권의 연구원들에게 자신 의 양심과 영혼을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어실히 보여준다. 타당성이 없고 실행가능하지 않은 헛공약에 계속 집착한다면 참예한 사회갈등과 국민분열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수 만 명의 시민들이 평우병 위험 최고기 수입을 반대하여 밤마다 촛불을 밝

해야 했던 이유이다.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 결과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건강권 회복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제합상을 요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였다. 도리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출을 '과당'에 현혹되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폄하하고 모욕하였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속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도무지 끝내지지 않은 정부 이자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무시당했고, 지난 20년간 외와 맘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사실을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사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면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단연권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 정실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지난 100일간의 국정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듣지도 듣지도 않는 독단적인 자세와 정책추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충실으로 시켜야 한다. 또한 무능하기 짝이 없고 부도덕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들은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면 사퇴해야 한다.

하나.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없다. 실효성 없는 수습책을 나열하기보다 고시 관보제재를 포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적 제협상에 나서야 한다.

하나. 생명수 박탈을 우려하는 민심과 자연의 보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물류전, 관광이전, 치수이전 그 어떤 명분으로 정당시킨다 해도 운하는 역사 이래 최대의 반생명 기획이다. 하천정비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운하건설을 즉시, 완전히 박지화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경쟁만 강요하는 4.15학교자유화조치, 열렬한 건강보험을 하물고 낙후한 미국식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료보험시장화(민영화)'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떠받치는 공적서비스를 사적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 6. 2.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  
조영희 외 114명



## 평화적 촛불대행진 폭력진압한 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잘못된 헌미 쇄고기 협상으로 시작된 평화적 촛불대행진은 정부의 고시 관보게제 유보, 자율규제요청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0일간 국권을 무시하고 옛나간 정책들을 남달라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만들어 낸 국민주권운동이다. 공교육 모기를 선언한 4.15 교육자율화초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계획,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한 의료와 수돗물 민영화 움직임 등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절체 만들었다. 이에 건강주권,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촛불을 든 청소년들, 유모차를 끌고나온 가족, 노동자, 농민, 여성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경찰은 손에 든 것이라고 촛불과 피켓밖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의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촛불행진을 폭력행위로 매도하며 폭력진압하고 있다.

인도에서 전경의 폭력에 항의하던 시민을 방패로 하고, 차가운 새벽에 자체 규칙도 어겨가며 물대포를 각각 살포해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쓰러진 여학생을 군홃발로 밟고, 옷을 벗기고 성체를 침범하여 수치심을 자극하는 점, 선명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기를 느낀다. 이러한 폭력진압의 증거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온 국민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청수 경찰청장은 폭력진압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폭력시민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었다고 변변하게 항변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분출되는 국민들의 목소리 앞에서 경찰이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인가? 촛불대행진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평화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 친구,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평화행진에 물대포와 군홃발을 들이대는 경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비폭력을 외친 촛불행진 참여자들을 폭력시민으로 매도하며 강경진압을 출지위한 경찰청장은 국민들이 그동안 쌓아 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후회시키고 있다.

이에 그동안 우리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정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촛불대행진 참여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한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청수 경찰청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평화적 촛불대행진을 폭력시위대로 취급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강경진압에 가슴앓이 분노를 느끼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대행진 폭력진압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청수 청장은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들의 평화행진을 폭력으로 진압한 장본인이다. 뿐만 아니라 이청수 청장은 2006년 대추리 등 이미 수차례 강경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부산 상대태일소에 투자인 동생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호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청수 청장은 이제 더 이상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

청수 경찰은 즉각 사과해야한다.

하나, 경찰은 평화행진을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지휘관을 즉각 구속하라.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경찰은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은 부당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부상을 입힌 현장책임자를 밝혀내고 즉각 구속해야한다. 그래야 경찰은 '민중의 불꽃'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정부는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정부당국은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과하고, 평화적 쏫불대행진에 대한 강경진압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평화시위를 보장해야한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평화적인 쏫불행진이 보장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가 자유롭게 소통되기를 희망하며, 여성수 경찰청장의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8년 6월 4일

21세기여성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여성회 기록여성회 남태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의 만미여성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사천여성회 새세상을여는원주여성공동체 새롬터 서울여성지친화 서울여성회 성남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인강여성회 양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부녀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진주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여성회(광) 충북여성민우회 통일여성회 평화여성회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포함여성회 화남여성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교연합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참여하는주부모임 함안여성회 함천여성회 화성여성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전심으로’ 할복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했다면, 국민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대한민국 사과를 한지 6일 만인 어제, 정부는 ‘미국산 최고가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였다. 이런 고시 강행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양국 협상 대표가 합의문에 공식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상’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절대 수입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간업자 간의 자율협정에 의존하여 파도기적으로 시행될 뿐이며, 이를 보증하던 QSA는 민간자율프로그램에 불과하여 국민들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둘째, 30개월령 미만 소의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과 관련하여 소의 뇌, 눈, 대리뼈 또는 척수 등을 수입 금지하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언제라도 수입업자가 주문을 한다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정작 위험한 분쇄나 내장 등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셋째, 검역주권 문제 역시 기본적인 검역주권이 확보되지 못한 기존 협상내용에 비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전히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고시의 내용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여 고집하고 관철시키려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전심으로 반성하였는가?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지도 모르는 식품을 수입하려 하면서 ‘안 사먹으면 되지’ 라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고는 고시를 강행하는 이중적 태도로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상실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는가?

많은 국민들은 정부 스스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가지고 좀 더 따져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한데도 정부의 일방적 설명 회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생략한 채 고시를 강행하는 정당한 이유를 단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사과와 반성을 한 것이라면, 국민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오늘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른 채 고시를 폐기하지 않고 집행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대통령 사이에 될까 하나지 신뢰도 없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 상대로 작전을 펼치듯 한편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책을 강행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향후 5년간 자신이 뜻한 바를 펼치려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국민들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요구를 소수의 백후세력의 선동이나 피답에 의한 것이라는 여치구니없는 생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나 작전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에게 항복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거기에는 어떤 후회로도 지름길도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진심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강행된 고시를 폐기하고 즉각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1. 강제 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평화로운 집회마저 폭력적 진압을 서슴지 않은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1. 끝내 고시를 강행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6월26일

시민사회 인사 159명 (조영희 외)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성명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 통치가 끝났던 지도 6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 천인공노할 죄악의 역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들의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강탈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책동에 더욱 혈안이 되어 나가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일제는 40여 년간에 걸친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기간 100여 만에 달하는 무고한 우리 거재를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840여 만 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연행, 납치하여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으며 20여 만의 우리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삼는 건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하였다.

또한 우리 민족성원들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고 귀중한 문화유적과 자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약탈하는 강도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과 개인들에 대한 사회와 배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와는 상반되게 피해 보상받지 못한 자들의 과거 침략 역사와 피해에 대해 미화분식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어 제침의 기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감히 자들의 영토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일고의 논의할 여지도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대동여지도> 등과 1667년에 일본에서 발행한 <온주서정합기>, 1896년에 일본 외무성이 발행한 도서들에도 독도가 우리 민족의 영토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일본도 1693년과 1696년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독도에 대한 우리 민족의 법적 속권에 대해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이 적만하장 계으로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 야망이 예나 지금이나 추호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과 긴장 격화의 화근은 다름아닌 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선명해주고 있다.

일본이 종전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약탈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민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낸 참을 수 없는 불법 무법의 범죄 행위이다.

재일동포들은 과거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로서 일본은 마땅히 그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법적, 도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마구 짓밟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 인권유린국가로서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300여 년간에 걸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제대로 잊을 수도 없고 지워질 수도 없다.

일본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에게 끼친 해아릴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해야 하며 역사 죄과와 독도 강탈 기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국 광복 63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과 도발을 단호히 분쇄하고, 일본 당국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역사적 죄과를 온 거래와 전 세계 인류 앞에 사죄, 청산하는 그날까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8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공동선언문

우리 여성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의 비폭력 문화에 기여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6자회담 당사국의 여성들이 모일 예정이었으나 북측 참가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모임에는 북측이 참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비군사적 외교노력을 통해 6자회담이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환영합니다. 반면, 2007년 2월15일 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다양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각국에서 모인 우리 여성들은, 최근 동북아에서 군사주의가 확대되고 군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6자회담의 지속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회담의 협상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주목합니다. 2000년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은 이미 "갈등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건설 과정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와 안보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의 공동한 참여와 온전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력을 초월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이해, 가치, 요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여성주의적 관점은 평화실현의 과정에 인간안보를 통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성이 6자회담에 시민으로서, 민간단체로서 그리고 정부기구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항구적인 발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6자회담 당사국 정부가 한반도의 화해와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그들만의 결의를 실천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1)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을 즉각 이행하라.
- 2) 6자회담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라.
- 3)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
- 4)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선 역사적인 오늘,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여성네트워킹의 구축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2008년 9월3일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참가자 일동

남북의 경제선인 도라산 역에서

## 10.4정상선언 1주년을 맞이한 여성들의 목소리

작년 10월4일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정상선언)을 이루어낸 그 때의 감격을 우리 여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서로가 적이 되어 우리 민족의 가슴에 흉부리를 겨눈 채 갈등과 반목의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 냈으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여 평화와 화해라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틀을 만들며 국제사회에 존경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노력들이 일궈낸 우리 민족의 성과이며 재해이기도 하다란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10.4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6.15와 10.4선언의 정신을 부정하고 통일문제,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 당국 사이의 대화가 중단된 채로 남아 있어 상호불신의 벽 앞에 우리의 근심도 깊어만 갑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를 향한 역사의 시계추를 반목과 불신이라는 역사의 어둠으로 다시 되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남쪽 민간인 관공과 총격사망 사건 이후 남과 북의 소중한 민간 소통구조의 하나인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올해에는 단 한차례의 이산가족의 만남조차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에 가로놓인 이토록 답답한 상황에 대하여 돌파구를 열고자 하는 정부 수준의 노력은커녕 북한과 대결, 배제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많은 염려가 듭니다.

우리 여성들은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북은 대량학살의 위기에 놓여있고 FAO(세계식량 농업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곡물부족량은 2000년도 이래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한 동포인 한국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북지원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급기야 WFP(세계식량계획)가 북한의 식량안보가 절박하다며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 긴급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여성들은 민간통일운동단체들과 함께 분단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꾸준히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남과 북의 여성들은 분단의 장벽을 넘어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만남을 꾸준히 확대해 가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나눌 때 상호 신뢰관계는 회복되고 화해와 협력의 의지를 키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정책으로는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깨달음과 성찰로 일궈낸 거래의 소중한 성과들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유실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 여성들은 정부 당국에 대립정적에서 벗어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부정과 폄하행은 남과 북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의 기초를 위흔드는 것이며 남북 거래의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손상된 남북의 신뢰를 복원하여 화해, 협력의 시대를 본격화하고 10.4장상선언의 실천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이끌어 내는 일에 주저 없이 나서도록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8년 10월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키고,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2월 1일(월) 군가산점 부활안의 가결 비율을 25%로 조절해 통과시켰다.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장애·여성 시민사회단체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가산점 부활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군가산점 부활안을 반드시 부결 시키기를 촉구한다.

10% 이상의 여성합격자 감소시키는 군가산점 부활 위험이다!

군가산점은 1999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다. 위헌 판결의 이유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군가산점은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가결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될 수는 없다. 군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안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국방부가 고조홍 의원의 군가산점 부활안(자기 특성의 2% 가점)을 2006년 공무원 채용 시험결과에 적용해 본 결과, 7급과 9급의 경우 10% 이상 여성합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5년 48.3%에 비하여 2007년 현재 50.2%(통계청 2008 여성통계)로 겨우 1.9%에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44만 여명의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무려 67.6%(405만 5천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겨우 6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노동부, 2006. 10 임금구조실태분석/2005년 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 학교 고지원 시험, 20인 이상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에 군가산점제를 실시한다면,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유일한 공경쟁명 명적인 채용경쟁시험에서까지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제협약 위반하는 군가산점 부활 반대한다!

존편 정부에서 역시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과 10월 병역법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군가산점제도는 정복수단으로서의 격합성, 합리성이나 법적 균형성을 현재의 상설한 위헌적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군가산점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및 UN 사회권 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여성 대 남성', '신체 건강한 남성 대 그렇지 않은 남성'과 같이 국민의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빚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대지원금 지급, 학자금 무이자 용자 확대 등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 마련하라

국회 정부위원회 또한 관련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한나라당 김금태 의원이 제대지원금 지급을 주요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같은 법안에 제대군인의 학자금 무이자 용자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현재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여정에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단지 제대군인의 2~5%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제대군인 대다수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인 군가산점을 부활할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폐기시키고, 발의 중인 법안을 통합 논의하여, 제대지원금 지급, 학자금 무이자 용자 등과 같은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2006년 12월 2일

국회의원 폭정숙,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윤석용, 이정희, 최영희  
한국장애훈대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

남북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념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관광도 중단되었으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유지해온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도 중단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장부가 출범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구식이고 상황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달이 아닌 행동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진정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펼쳐 국민회합과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번영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살려야 합니다.

현재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은 그 협력업체만 200여 개에 달합니다. 개성에는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88개의 기업이 있고, 공장을 지어서 곧 입주할 기업이 50여개, 그리고 이를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3000여개에 달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이 지닌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생각할 때, 이를 망해도 상관없다고 손소지치는 것은 참으로 단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당장에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도 큰 문제입니다. 이미 주문이 취소되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막히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을 자라도록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경쟁력을 잃고 이제 개성에서 희망을 찾아보려는 중소기업의 절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단순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관련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이 막히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미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반도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기관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등, 한국의 국가신인도 평가에서 지적형제 리스크를 주요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다면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하락할 것이고, 이는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대결노선이 아닌 대화노선, 이념노선이 아닌 국민회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흡수통일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정부가 급변사태를 논의하며, 일부 당국자가 선제공격론마저 주장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대화에 나오라고 다그치기보다,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고 정부 내에서 혼란을 짓고 있는 대북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난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대화의지를 보인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시기와 정부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끌어내고,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전지에서 국민회합을 추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전두환 정부가 이종산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담을 했으며 노태우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높이 평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역대 보수정부는 대부

분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토록 이념편향적인 대북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정신입니다. 이런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념논쟁이 아닌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북정책, 대결노선이 아닌 대화노선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남북관계의 갈등을 악화시킬 독한언론 관련 법률들을 없애볼 일 때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남북관계 정상화 이후 논의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상대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외정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호기라고 할 만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철회와 미국의 새 정부 등장으로 북미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관계만 개선된다면 미국 세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결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앞대 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강령책으로는 미국과 협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미아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기를 위해서는 외교관계 정상화, 에너지 및 경제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지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상호 시너지효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위기를 방치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대북무시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남북의 경제를 함께 도약시킬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은 국내정세로 보나 국제적 상황으로 보나 국민화합과 함께 남북협력을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들을 존중하되, 하나의 조화된 견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며 이념대결을 무추하고, 권 가르기로 지지층을 다지는 구식 정치에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 미집는 식의 일시적인 면피는 결국 상황악화를 초래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나서야 합니다. 대결과 무시, 책임회피식 임기응변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진정한 상생공영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2008년 12월 18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조영희 외 649명)

## 언론보도리스트

| 기사제목                                          | 매체     | 날짜    |
|-----------------------------------------------|--------|-------|
| 한미정상회담에서 MD 불참을 명확히 하라                        | 연합뉴스   | 3/1   |
| 정대협, 권철원 주일대사 '당연' 규탄                         | 브레이크뉴스 | 4/24  |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준비작 발족                            | 연합뉴스   | 4/29  |
|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국' 될 자격있나                         | 오마이뉴스  | 5/1   |
| 창립 10주년 맞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영희 상임대표                 | 여성신문   | 5/23  |
| 제4회 '이우정 평화상'에 오뚜기씨                           | 연합뉴스   | 5/26  |
| '이우정 평화상'에 오뚜기씨                               | 경향신문   | 5/26  |
| 시민사회인사 114명 '정부내각 총사퇴' 시국선언                   | 머니투데이  | 6/2   |
| 사회 원로 100인 시국선언 "李獨선 비난!"                     | 브레이크뉴스 | 6/3   |
| 여성제, 경찰청장 사퇴 요구                               | 연합뉴스   | 6/4   |
| 여성단체, 경찰청장 사퇴 촉구                              | 태일경제TV | 6/4   |
| '강경전압' 경찰청장 문책론 확산종교·여성단체 사회요구 잇따라            | 세계일보   | 6/4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3회 늦봄 통일상 받아                    | 여광메이안  | 6/12  |
| 경찰도 '촛불'에 치안서비스 제공할 때                         | 오마이뉴스  | 6/13  |
| 민심 반하는 정책·인사 정권퇴진 비제 못해<br>평화를만드는여성회 윤수경 공동대표 | 브레이크뉴스 | 6/24  |
| "고시 강행하면 전면적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                    | 프레시안   | 6/26  |
| 황우병 대책회의, "가장 크고 가장 평화로운 촛불문화제가 열릴 것"         | 노컷뉴스   | 7/5   |
| '국민승리선언 촛불문화제'...정치권, 종교계, 시민 등 대규모 참여        | 네이션코리아 | 7/5   |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대달 초 개최                           | 연합뉴스   | 8/8   |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서울·개성 개최                           | 여성신문   | 8/14  |
|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의 개최.. 개성 방문                        | 통일뉴스   | 8/25  |
| 여성단체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개최                           | 연합뉴스   | 8/25  |
| 여성의 힘으로 동북아 평화로...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폐막            | 세계일보   | 9/3   |
| 서울·개성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한겨레    | 9/4   |
|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자살중개 - 여성신문                  | 여성신문   | 9/5   |
| 北급변사태 논란 속에서 곱씹어 보는 남북연합 구상                   | 프레시안   | 9/16  |
| 평화+통일' 운동으로 분단체제 대안 찾자                        | 한겨레    | 9/17  |
| 여성주의·시민참여 시각에서 본 통일운동                         | 연합신문   | 9/19  |
| 국회 앞, 3일째 '비상대기체제' 유지한 채 해산                   | 통일뉴스   | 12/30 |

#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평화여성회 웹사이트 <http://www.peacewomen.or.kr>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회원들끼리 생각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 ☞ 회 원 가 입 서 ☞

|                    |                                                                                                                                                                                                                                                                                                                     |                                                                                                                              |  |          |                                                           |
|--------------------|---------------------------------------------------------------------------------------------------------------------------------------------------------------------------------------------------------------------------------------------------------------------------------------------------------------------|------------------------------------------------------------------------------------------------------------------------------|--|----------|-----------------------------------------------------------|
| 기본사항               | 이름                                                                                                                                                                                                                                                                                                                  | (단체명)                                                                                                                        |  | 성별       |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                    | 주민번호                                                                                                                                                                                                                                                                                                                | <input type="text"/>                                                                                                         |  | 이동전화     |                                                           |
| 연락처                | 집 주소                                                                                                                                                                                                                                                                                                                | (우편번호)                                                                                                                       |  |          |                                                           |
|                    | 집 전화                                                                                                                                                                                                                                                                                                                | (지역번호)                                                                                                                       |  | 우편물 받을 곳 |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
|                    | 직장주소                                                                                                                                                                                                                                                                                                                | (우편번호)                                                                                                                       |  |          |                                                           |
|                    | 직 장 명                                                                                                                                                                                                                                                                                                               |                                                                                                                              |  | 소 속      |                                                           |
|                    | 전자메일                                                                                                                                                                                                                                                                                                                |                                                                                                                              |  | 직장전화     |                                                           |
| 회비 납부<br>(CMS자동이체) | 거래은행                                                                                                                                                                                                                                                                                                                |                                                                                                                              |  | 예금주명     |                                                           |
|                    | 계좌번호                                                                                                                                                                                                                                                                                                                |                                                                                                                              |  | 이체일      |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 회비                 | 일반회원                                                                                                                                                                                                                                                                                                                |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금 원) |  |          |                                                           |
|                    | 학생회원                                                                                                                                                                                                                                                                                                                | <input type="checkbox"/> 월1천원 <input type="checkbox"/> 월2천원 <input type="checkbox"/> 월3천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금 원) |  |          |                                                           |
|                    | (초·중·고생)                                                                                                                                                                                                                                                                                                            | <input type="checkbox"/> 연1만원 <input type="checkbox"/> 연2만원 <input type="checkbox"/> 연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금 원) |  |          |                                                           |
| 관심분야               | <input type="checkbox"/> 경제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소식지발행<br><input type="checkbox"/> 평화실성 <input type="checkbox"/> 평화촉제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문화 <input type="checkbox"/> 스터디모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가입종기               |                                                                                                                                                                                                                                                                                                                     |                                                                                                                              |  |          |                                                           |
| 가입일자               | 200    년    월    일                                                                                                                                                                                                                                                                                                  |                                                                                                                              |  |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35-035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54번지, 2층  
 전화 02-929-4846 전송 02-929-4843  
 이메일 [wmp@peacewomen.or.kr](mailto: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http://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3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평화로만드는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136-036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10번지 2층

전화 02-929-4846/7 전승 02-929-4843

이메일 [wmp@peacewomen.or.kr](mailto: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http://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3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